

연구총서 16-AA-11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최영신 | 장현석

The study on violent crimes by foreigners

발간사

최근 수행된 외국인범죄에 대한 연구에서는 외국인범죄의 급속한 증가를 우려하는 관점이 눈에 띕니다. 1990년을 전후하여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를 가져왔고,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외국인범죄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을 전후하여 공식 범죄통계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한 연구들에서는 외국인범죄의 증가율이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들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이 체류외국인의 인구수에 비하여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서 내국인의 범죄발생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외국인범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거나 폭력범죄의 몇몇 유형에서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외국인 이주자는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에 의한 범죄는 내국인의 범죄에 비하여 더 많은 시선이 주목되곤 합니다. 그로 인해 외국인은 낮은 범죄율을 보이면서도 토착민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오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이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선은 이주자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외국인의 폭력성,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실체적 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증적 자료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식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거주인구대비 내·외국인의 범죄율, 국적별 외국인의 범죄율 등을 비교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내·외국인의 폭력 가해·피해 경험,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폭력에 대한 태도, 법의식 등의 차이를 분석하고, 실증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 폭력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외국인 폭력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책임지고 성심을 다해 수행한 최영신 선임연구위원과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경기대학교 장현석 교수, 김윤지 인턴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더불어 연구자료의 수집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외국인 지원 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심층면담과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내국인과 외국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2016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환**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최영신)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1
1. 문헌연구	21
2.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22
3. 심층면담조사	23
4. 설문조사	24
 제2장 이론적 배경 (장현석)	31
제1절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에 대한 인식	33
제2절 이민자와 범죄의 관계에 관한 이론들	35
1.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38
2.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40
3.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42
제3절 외국인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43
1. 미국의 이민과 범죄에 대한 연구	44
2. 유럽의 이민과 범죄에 대한 연구	47
3.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49
제4절 폭력범죄의 용어 정의	54

**| 제3장 |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최영신) 57**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59

-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59
-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62
-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65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70

-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70
- 2.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75

제3절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발생률 79

- 1.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79
- 2. 내·외국인의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 비교 80
- 3.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83
- 4. 외국인 폭력범죄 하위 범죄유형의 국적별 발생 동향 85

제4절 소결 87

-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87
- 2.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88
- 3.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과 그 특성 90

**| 제4장 |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및 피해 양상과 특성
(장현석) 93**

제1절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95

- 1. 설문조사 대상 내·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95
- 2.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 체류기간, 체류신분상 특징 100

제2절 내·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양상과 특성 비교 104

- 1. 내·외국인 폭력범죄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04
- 2. 내·외국인 폭력범죄가해 양상 및 특성 108

제3절 내·외국인 폭력범죄 피해 양상과 특성 비교 116

1. 외국인 폭력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내·외국인 비교) 116
2. 외국인 폭력피해 양상과 특성(내·외국인 비교) 119

제4절 소결 129

1.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양상과 특성 129
2. 외국인 폭력범죄 피해 양상과 특성 131

| 제5장 | 외국인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장현석) 133

제1절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유발요인 135

1. 내·외국인 폭력범죄 유발요인 평균 비교 137
2. 폭력유발요인이 폭력가해에 미친 영향(내·외국인 평균 비교) 143

제2절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억제요인 146

1. 내·외국인 폭력범죄 억제요인 평균 비교 147
2. 폭력억제요인이 폭력가해에 미친 영향(내·외국인 평균 비교) 149

제3절 내·외국인 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50

제4절 소결 156

1. 외국인 폭력범죄 유발 요인에 대한 시사점 156
2. 외국인 폭력 억제 요인에 대한 시사점 157

| 제6장 | 외국인의 폭력 및 법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최영신) 159

제1절 폭력에 대한 태도의 집단별 차이 161

1.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 분석 161
2. 폭력에 대한 태도의 집단별 차이 170

제2절 내·외국인의 법의식 비교	177
1. 법의식의 하위영역	177
2. 법의식의 집단별 비교	181
제3절 외국인의 경찰 및 폭력 관련 법에 대한 인식	187
1. 경찰에 대한 신뢰도 및 경찰 관련 인식	187
2. 외국인의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	196
제4절 외국인 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200
1. 내국인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인식	200
2. 내·외국인의 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	202
제5절 소결	203
1.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203
2.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관련 시사점	204
3.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 관련 시사점	205

| 제7장 | 외국인 폭력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제언 (최영신·장현석)

제1절 공식 범죄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의 시사점	211
1. 외국인범죄의 증가와 심각성에 대한 오해와 이해	211
2. 외국인 폭력범죄의 특성과 치안부재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	212
제2절 외국인 폭력의 양상과 폭력 유발과 억제 관련 시사점	214
1. 외국인 폭력가해의 원인으로서는 상징적 폭력(편견, 차별, 그리고 무시)과 정책적 대응	214
2. 외국인 폭력 억제요인으로서 본국사람 유대와 정책적 시사점	216
3.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및 피해에서 음주 및 무기사용 관련 시사점	217
제3절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법의식 관련 제언	218
1. 경찰에 대한 신뢰도 및 경찰 관련 인식의 시사점	218
2. 외국인의 폭력범죄 관련 법지식 개선을 위한 노력	222
3. 한국인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해소 필요성	222
4. 외국인 지원 정책의 적극적 활용	223

참고문헌	225
Abstract	235
부록	239
[부록 1] 심층면담자료 분류체계	239
[부록 2]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국적별 분포 (2011-2014)	241
[부록 3]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245
[부록 4] 내·외국인의 법의식 및 폭력 경험에 관한 설문지 (외국인용 한글설문지)	246
[부록 5] 내·외국인의 법의식 및 폭력 경험에 관한 설문지(내국인용)	260

표 차례

〈표 1-1〉 심층면담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주요 특징 23

〈표 1-2〉 국적별 설문조사인원과 최종 분석대상 25

〈표 1-3〉 설문조사대상자의 국적별 조사기관 및 조사장소 26

〈표 1-4〉 설문조사의 주요 영역별 세부 내용 28

〈표 3-1〉 외국인범죄의 검거인원 비율 추이 59

〈표 3-2〉 외국인범죄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의 증가 추이(2004-2014) 60

〈표 3-3〉 내·외국인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2011~2014합산) 63

〈표 3-4〉 내·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2011-2014) 64

〈표 3-5〉 외국인범죄 국적별 검거인원 분포(2011~2014) 66

〈표 3-6〉 외국인범죄 국적별 범죄유형별 분포(2011~2014합산) 68

〈표 3-7〉 내·외국인 인구의 성별 분포(2011-2014) 71

〈표 3-8〉 내·외국인 인구의 연령별 분포(2011-2014) 72

〈표 3-9〉 한국인 ‘15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분포 73

〈표 3-10〉 체류외국인의 연령구성을 고려한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2011-2014) 74

〈표 3-11〉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기준) 76

〈표 3-12〉 내·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78

〈표 3-13〉 내·외국인 폭력범죄 검거인원(2011-2014) 80

〈표 3-14〉 내·외국인의 국적별 인구10만명당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 비교 81

〈표 3-15〉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별 검거인원 83

〈표 3-16〉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유형별 검거인원(2011-2014년 합산) 84

〈표 3-17〉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별 분포(2011~2014 합산) 85

〈표 4-1〉 설문조사 대상 내·외국인의 특성: 성별, 나이, 학력, 결혼상태 96

〈표 4-2〉 설문조사 대상 내·외국인의 특성: 자녀유무, 자녀 수, 동거구분 98

〈표 4-3〉 설문조사 대상 내·외국인의 특성: 직장생활여부, 월간소득, 종교 99

〈표 4-4〉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 체류기간 101

〈표 4-5〉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별 체류기간 102

〈표 4-6〉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체류상태, 미등록 체류기간 103

〈표 4-7〉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별 미등록자수 및 미등록 체류기간 104

〈표 4-8〉 내·외국인 폭력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별, 나이, 학력,
배우자 유무 105

<표 4-9> 내·외국인 폭력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자녀, 종교, 동거, 직장생활, 월간소득 107

<표 4-10> 내·외국인 폭력가해 여부 및 빈도 비교(χ^2 -test) 109

<표 4-11> 외국인 국적별 폭력가해경험 여부 비교 110

<표 4-12> 내·외국인 폭력가해자와 피해자와의관계 및 가해 장소·시간 111

<표 4-13> 내·외국인 폭력가해 양상: 가해가담자수, 쌍방폭행여부, 가해방법 (다중응답), 무기종류 112

<표 4-14> 내·외국인 폭력가해 양상: 피해정도, 가해자 주취여부, 가해의 원인 (다중응답) 114

<표 4-15> 외국인 폭력가해 시 체류신분 및 피해자 국적 116

<표 4-16> 내·외국인 폭력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별, 나이, 학력, 배우자 유무 117

<표 4-17> 내·외국인 폭력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자녀유무, 종교유무, 동거여부, 직장생활 여부, 월간소득 118

<표 4-18> 내·외국인 폭력피해 여부 및 빈도 비교(χ^2 -test) 120

<표 4-19> 외국인 국적별 폭력피해 여부 비교 120

<표 4-20> 외국인 폭력피해 시 체류신분 및 가해자의 국적 121

<표 4-21> 내·외국인 폭력피해자와 가해자와의관계 및 피해 장소·시간 122

<표 4-22> 내·외국인 폭력피해 양상: 가해자수, 쌍방폭행여부, 피해방법(다중응답), 무기종류 123

<표 4-23> 내·외국인 폭력피해 양상: 피해정도, 피해자·가해자 주취여부, 피해이유 (다중응답) 126

<표 4-24> 내·외국인 폭력피해 대응방법(다중응답), 미신고 이유(다중응답), 경찰조치 만족도 128

<표 5-1> 내·외국인 폭력범죄 유발요인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136

<표 5-2> 내·외국인의 상징적 폭력요인(일상생활 차별) 평균 비교 138

<표 5-3> 내·외국인의 상징적 폭력요인(직장생활 차별) 평균 비교 139

<표 5-4> 내·외국인의 일반긴장요인 평균 비교 140

<표 5-5> 내·외국인의 자기통제력 평균 비교 142

<표 5-6> 내·외국인 무기허용도 평균 비교 143

<표 5-7> 폭력가해여부에 따른 폭력유발요인 평균 비교 144

<표 5-8> 내·외국인 폭력범죄 억제요인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147

<표 5-9> 내·외국인의 사회유대 평균 비교 148

<표 5-10> 내·외국인의 본국사람유대 평균 149

〈표 5-11〉 내·외국인의 가족애착 평균 비교	149
〈표 5-12〉 폭력가해여부에 따른 폭력억제요인 평균 비교	150
〈표 5-13〉 내·외국인 폭력가해행위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N=1,573)	152
〈표 5-14〉 내국인 폭력가해행위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N=500)	153
〈표 5-15〉 외국인 폭력가해행위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N=1,073)	154
〈표 6-1〉 폭력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	162
〈표 6-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N=500)	163
〈표 6-3〉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N=1,209)	165
〈표 6-4〉 중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N=370)	167
〈표 6-5〉 몽골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N=110)	168
〈표 6-6〉 국적별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값	171
〈표 6-7〉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요인별 평균 비교	173
〈표 6-8〉 한국인과 중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 비교	174
〈표 6-9〉 조선족과 한족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 비교	175
〈표 6-10〉 한국인과 몽골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 비교	176
〈표 6-11〉 한국인과 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 비교	177
〈표 6-12〉 법의식의 세부 영역과 문항 구성	180
〈표 6-13〉 국적별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값	182
〈표 6-14〉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184
〈표 6-15〉 한국인과 중국인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185
〈표 6-16〉 조선족과 한족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185
〈표 6-17〉 한국인과 몽골인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186
〈표 6-18〉 한국인과 미국인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187
〈표 6-19〉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 비교	188
〈표 6-20〉 한국인과 중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 비교	189
〈표 6-21〉 조선족과 한족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 비교	190
〈표 6-22〉 한국인과 몽골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 비교	191
〈표 6-23〉 한국인과 미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평균 비교	191
〈표 6-24〉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발생 관련 인식의 평균 비교	192
〈표 6-25〉 한국인과 중국인의 폭력 발생 관련 인식의 평균 비교	193
〈표 6-26〉 한국인과 몽골인의 경찰 관련 인식의 평균 비교	194
〈표 6-27〉 한국인과 미국인의 경찰 관련 인식의 평균 비교	195
〈표 6-28〉 외국인의 집단별 경찰의 주취폭력 대응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195
〈표 6-29〉 국적별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 문항별 평균값	197

<표 6-30>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199

<표 6-31> 조선족과 한족의 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200

<표 6-32> 내국인의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 201

<표 6-33>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202

<부록 표 1> 체류외국인(불법체류 포함) 국적별 분포(2014) 241

<부록 표 2> 체류외국인(불법체류 포함) 국적별 분포(2013) 242

<부록 표 3> 체류외국인(불법체류 포함) 국적별 분포(2012) 243

<부록 표 4> 체류외국인(불법체류 포함) 국적별 분포(2011) 244

그림 차례

[그림 3-1] 외국인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 전년 대비 증가율 비교(2004~2014) 61

국문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외국인의 폭력성,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실체적 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저지르는 여러 범죄유형 중에서 특히 외국인의 폭력범죄에 집중하여 그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폭력범죄는 경찰청의 범죄유형 구분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력범죄와 구분되는 폭력범죄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 거시적 수준에서 공식 범죄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발생동향을 파악하고, 체류외국인의 인구구성을 고려한 거주 인구를 추정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범죄의 발생률을 비교하고,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동향에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범죄 및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내국인과 비교하여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폭력범죄 중에서 어떠한 범죄유형이 증가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로 외국인 폭력범죄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적 수준에서 폭력범죄의 가해·피해 양상은 어떠한지, 이와 관련된 특성은 무엇이며, 기존의 범죄학 이론에 근거한 폭력범죄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은 내국인과 외국인 폭력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법의식 수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폭력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대하여 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외국인의 국적별로 폭력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2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법의식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범규범 준수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공식 범죄통계자료와 설문조사자료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 폭력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라서 문헌연구,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외국인 폭력범죄 관련 심층면담조사, 내국인과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 관련 인식,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폭력범죄, 폭력에 대한 태도, 법의식 등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범죄분류 항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발생 현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공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조사는 외국인의 폭력범죄 발생과 관련한 여러 문제의식에 대한 내부자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인 8명과 외국인 지원단체 한국인 활동가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 인구집단을 전집으로 하여 500명을 표집하였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 중에서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를 기준으로 먼저 국적을 표집하고 각 국적별로 조사대상자를 할당하였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에서 1.5% 이상을 차지하는 국적은 모두 11개인데, 이중에서 일본과 타이완 국적을 제외하고 9개 국적을 선정하여 각 국적별로 조사대상자를 할당하였다. 조사대상자에 포함된 외국인 국적은 중국, 베트남, 미국,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리랑카로서 모두 9개국이다. 설문조사 인원은 내국인이 500명, 외국인이 1,292명으로 모두 1,792명이며,

최종적으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자료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1,709부이다.

2. 이론적 배경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는 전통적 범죄학 이론 중에서 이민자들의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론들로서 사회해체이론, 차별기회이론, 일반긴장이론 세 가지를 소개하였으며, 외국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이주민들의 특징에 따라서 특정 국가의 외국인 범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미국과 유럽에서의 이민과 범죄에 대한 연구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국내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는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연구들 중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이나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가.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외국인 검거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에 비하여 그 변동폭이 큰 편이다. 외국인범죄의 증가율은 2011년까지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을 앞질렀으나 2012년 이후로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율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 범죄는 폭력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31.6%)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도의 비율(0.5%)은 낮아지고, 성범죄(1.6%)와 교통범죄(21.9%)의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을 내국인과 비교해보면 지능범죄, 교통범죄의 발생 비율은 낮으며, 상대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

외국인의 국적별 검거인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으로서 전체 외국인 검거인원의 59%(60,808명) 정도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이 7.4%(7,663명), 미국이 6.7%(6,997명), 몽골이 5.0%(5,210명), 우즈베키스탄이 3.4%(3,483명), 태국이 3.2%(3,354명), 대만이 1.9%(2,017명), 필리핀이 1.5%(1,605명),

4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스리랑카가 1.5%(1,529명), 캐나다가 1.1%(1,192명), 러시아가 1.1%(1,149명)이다. 이외의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전체 외국인 검거인원의 1.0% 미만이다.

나.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체류외국인은 내국인의 인구 구성과 비교하여,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5% 정도 높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인구는 낮으면서 20세 이상 59세까지의 인구 비율은 20% 정도 높다. 즉, 상대적으로 범죄발생률이 높은 남성 인구의 비율은 높고, 범죄발생률이 낮은 청소년층과 노인층의 연령비율은 낮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서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을 비교해보면,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매해 외국인보다 현저하게 높다. 지난 4년 동안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11년인데, 내국인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은 3,524명이고, 외국인은 1,420명으로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외국인보다 2.5배 정도 높다.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2012년과 2013년에 2.9배 정도, 2014년에는 2.8배 정도 외국인에 비하여 높다.

외국인의 국적별 전체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살펴보면, 몽골의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높으며,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북방에 위치한 국적 외국인들의 검거인원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검거인원지수가 현저하게 낮다. 외국인의 국적별 비교에서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낮은 외국인 국적은 일본이고, 그 다음으로 검거인원지수가 낮은 국적은 인도네시아이다. 인도네시아의 인구 대비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은 검거인원지수를 나타낸 몽골의 경우에도 그 수치는 내국인에 비하여 낮은 상태이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의 경우에도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 국적의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범죄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가 1,000보다 낮아서 범죄발생률

이 내국인의 1/3 수준보다 낮은 상태이다.

다.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과 그 특성

내국인과 외국인 폭력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외국인에 비하여 매우 높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외국인의 인구 10만명당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53%~55%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적별로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몽골의 경우에만 내국인보다 높고, 나머지 모든 국적의 외국인은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내국인보다 낮다. 키르기스스탄,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은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외국인 전체의 평균값보다 높으므로 외국인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폭력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동남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적(스리랑카,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과 선진국(캐나다,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현저하게 낮으므로 폭력범죄 발생률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특히 태국인, 일본인, 인도네시아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 발생률이 내국인의 1/10 수준이다.

또한 외국인 폭력범죄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선진국 외국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에서 ‘폭력행위 등’의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외에 이주노동자가 많은 대부분의 외국인 국적에서는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하는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외국인 폭력범죄의 이러한 특성은 외국인이라는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및 피해 양상과 특성

가.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양상과 특성

1) 내·외국인 집단간 폭력가해 정도에 차이가 없음

설문자료 분석결과,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폭력가해에 가담한 정도는 통계적으로

6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외국인이 더 폭력적일 것이라고 하는 가설은 경찰의 공식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자료에서도 잘못된 가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외국인 폭력가해의 피해자는 주로 본국 출신의 지인

외국인 폭력가해 피해자의 상당수는 직장 동료(33.3%)나 친구 또는 후배(19.0%)로서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전체 폭력가해의 66.7%이다. 외국인 폭력가해의 피해자의 절반 정도는 본국 출신 또는 제3국 출신의 외국인이다. 외국인 폭력가해의 피해자가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주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낯선 한국 사람에 대한 폭력은 한국인 피해자 8명 중 1명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폭력 가해의 피해자는 주로 외국인이며, 드물게 내국인이 피해를 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내국인이 외국인 폭력가해의 주요 피해자일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임을 알 수 있다.

3) 2인 이상의 공동 폭행 비율이 높음

공식 범죄통계 분석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폭력범죄 발생 비율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다중의 공격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실은 설문조사자료의 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내국인의 경우 폭력 가해 시에 자신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가담한 비율이 25%인 데 비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폭력에 가담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6%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폭력가해가 이루어질 때 피해자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61.9%로 나타났고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14.3%로 대부분의 경우 쌍방폭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폭력 가해 시 무기사용 거의 없음

외국인이 폭력가해 시에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폭력가해 시에 무기를 사용한 경우는 4.8%에 불과하였고 내국인이 16.7%를 나타내서 오히려 내국인보다 비율이 낮았다. 외국인이 폭력을 행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손으로 때린 경우와 붙잡고 흔든 경우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무기를 사용하

여 폭력을 가한 경우에도 칼이나 기타 소지한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다가 손에 잡힌 술병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외국인이 특별히 위험한 무기를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생각은 추측에 근거한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5) 외국인 폭력 가해의 주요 원인은 차별과 무시

외국인 폭력 가해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미리 계획을 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기분이 나쁘거나 욕을 듣고서 또는 평상시 차별과 무시를 당해서 화집에 폭력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누구나 차별과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나고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의 경우 드물게 폭력을 행사하지만, 대부분 차별과 무시를 당했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외국인 폭력범죄 피해 양상과 특성

1) 외국인 폭력 피해의 가해자는 주로 직장의 한국인

외국인들은 주로 한국인에 의해서 폭력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의 폭력피해에서 가해자의 국적을 보면 한국인이 63.2%로 가장 많았다. 피해빈도가 가장 높았던 베트남의 경우 70.8%의 폭력피해가 한국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외국인 폭력 피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직장동료(36.8%)와 직장상사(23.0%)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외국인들이 주로 직장 내에서 동료나 상사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폭력피해의 장소가 직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5.2%로서 외국인에 대한 직장 내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한국인 직장 상사나 동료가 비자와 체류 신분 때문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폭력의 피해자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2) 상징적 폭력으로 인한 폭력피해

외국인 폭력피해의 이유로는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한 경우가 5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을 싫어해서(39.1%)’, ‘말이 서툴러서(35.6%)’, ‘시키는 일을 잘 하지 못해서(32.2%)’, ‘불법체류 때문에 신고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20.7%)’의 순이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직장 상황 내에서

8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갈등상황을 가져올 수 있고, 신분상의 취약성이 폭력피해에 쉽게 노출되게 하며, 이외에도 한국인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단순히 외국인이 싫어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3) 낮은 폭력 피해 신고율

외국인이 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는 25.3%였다. 내국인 피해자의 경찰 신고율이 42.9%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신고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29.2%),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로 일이 복잡해 질까봐(16.9%)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5. 외국인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가. 외국인 폭력범죄 유발 요인에 대한 시사점

1)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상징적 폭력은 외국인 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침

외국인들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모두 내국인에 비하여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외국인들이 상징적 폭력의 피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 차별과 직장생활 차별이 외국인 폭력 가해 여부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나아가 폭력 가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징적 폭력이 폭력 가해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본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도 일상생활 차별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서 일반긴장이론이 지지를 받고 있다.

2) 무기허용도와 외국인 폭력 가해

외국인들의 경우 무기허용도가 낮고 실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폭력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무기허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외국인의 무기허용도가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내국인보다 무기허용도 평균점수가 낮은 것을 보면, 외국인 폭력 가해자들의 무기허용도가 내국인에 비하여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나. 외국인 폭력 억제 요인에 대한 시사점

외국인은 한국사회에 대한 일반적 유대보다 본국 사람에 대한 유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외국인의 경우 사회유대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본국사람 유대는 폭력가해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본국사람에 대한 유대가 강한 사람이 폭력가해를 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본국 사람과의 유대는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한국 사회 전체를 보았을 때 외국인의 한국사회에 대한 유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한 유대는 약화되고, 본국 사람에 대한 유대만 강화되면 자칫 외국인 커뮤니티가 분리 고립되어 외국인 밀집지역이 지역적으로 낙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외국인에 대한 상징적 폭력과 같은 편견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신동준, 2012; 김정규, 2015).

따라서 외국인들 간에 본국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국 지역사회와 서로 교류하는 방안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유대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외국인의 폭력 및 법에 대한 태도 및 인식

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번 연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이 '폭력의 효율성·필요성', '폭력에 대한 거부', '훈육적 폭력'의 3개 요인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과 외국인은 모두 '폭력의 효율성'과 '폭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경계가 강하지 않아 폭력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폭력에 대한 거부'와 '훈육적 폭력'에 대한 인식구조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전체 집단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폭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고 폭력을 거부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난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허용적이지 않고, 폭력에 대한 거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다. 다만 외국인은 훈육적 폭력에 대해서 내국인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나.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관련 시사점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결과에서 몽골만 폭력범죄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폭력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 차이 검증에서 몽골은 한국인과 폭력에 대한 태도가 가장 비슷한 집단으로 드러났다. 반면, 미국, 중국, 외국인 전체는 모두 한국인보다 폭력 관련 태도에 소극적이고 폭력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폭력범죄의 검거인원지수가 한국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폭력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대하여 보다 허용적인 태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김준호·김선애, 1992)의 가설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해당 가설에 부합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내국인에 비하여 폭력에 대해 수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구체적인 폭력범죄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허용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 관련 시사점

이 연구에서 법의식은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는 법의식의 인지적 측면에 해당되고,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는 법의식의 정서적 측면에 해당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 집단 간에는 법의식의 4개 하위영역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는 낮지만,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는 높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법에 대해 친근하게 생각하고, 법에 대하여 신뢰하고, 준법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다만 법인식에서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전근대적 법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법이 계약적인 관계로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법을 신적인,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드리고 징벌적 수단으로 받아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법의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체류외국인의 법의식수준은 공식 범죄통계의 분석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이 내국인보다 낮은 이유를 일부 설명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7. 외국인 폭력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제언

가. 외국인의 취약성으로 인한 치안부재상황에 대한 대응

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에서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내국인에 비하여 높은 것은 언어적 제약, 정보의 부족, 법지식의 제한, 불법체류의 문제 등과 같은 외국인으로서의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취약성은 외국인이 문제 상황에서 한국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하는 취약점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 간의 치안부재 상황이 초래되고, 외국인은 폭력피해의 자구책으로서 스스로 힘을 모아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외국인으로서의 취약성은 외국인이 치안부재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치안부재 상황을 최소화함으로써 외국인 폭력범죄의 집단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외국인에 대한 상징적 폭력(편견, 차별, 그리고 무시)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드물게 폭력을 행사하지만, 대부분 차별과 무시를 당했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에게 가해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상징적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직장 생활에서의 상징적 폭력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결과 외국인에 대한 일상생활과 직장생

활에서의 차별이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가해지는 상징적 차별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외국인에 대한 조직적 차별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외국인에 대한 불법적 차별을 막아야 한다. 관계 당국은 상징적 차별이 주로 발생하는 외국인의 근무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낙인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한국사회로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외국인 폭력 억제요인으로서 본국사람 유대와 정책적 시사점

설문조사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의 본국사람에 대한 유대는 폭력을 유의미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국사람과 강한 유대가 있는 외국인은 본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외국인들의 본국공동체에 대한 강한 유대가 폭력을 비롯한 범죄억제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은 강한 이론적, 경험적 지지를 보여준다. 외국인이 본국사람들과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은 한국사회 적응과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

라. 외국인의 공동폭행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공식 범죄통계자료 분석과 설문조사자료 분석 결과 모두에서 폭력가해 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력을 가할 경우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알려 다중이 폭력에 가담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모이는 지역 센터 같은 곳에 홍보물을 비치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내용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 주취폭력에 대한 경찰의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의 필요성

폭력가해에서 음주상태에서 폭력이 발생한 비율은 외국인이 65%로서 내국인의 5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의 주취폭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취폭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음주상태에서의 폭력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경찰이 주취폭력에 대하여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이 주취상태의 폭력에 대하여 엄정한 기준을 갖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주취폭력 관련 법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될 것이다.

바. 외국인의 폭력범죄 관련 법지식 개선을 위한 노력

외국인의 '폭력 관련 법지식'에서 특히 필리핀, 타이, 몽골, 한족(중국)의 법지식 수준이 매우 낮았다. 조선족(중국)의 경우에는 폭력 관련 법지식 수준이 한국인보다 높아 한족과 대조를 보인다. 법지식은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을 차지하므로 폭력 관련 법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법교육이 제공된다면 폭력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법교육은 법의식의 고양을 통해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 내국인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해소 필요성

내국인은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에 근거한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외국인의 범죄발생비율은 내국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가 바로 범죄율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식에서도 내국인의 인식은 현실과 간극이 크다.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이들을 거의 범죄자와

14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동일시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잘못된 편견과 오해는 외국인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양산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한국사회적응을 방해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편견의 해소는 외국인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이다.

제1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론

최영신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010년을 전후하여 수행된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내연구에서는 외국인범죄의 급속한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눈에 띈다(김정규·신동준, 2010; 신동준, 2010; 이훈동, 2011; 홍세영·이현, 2011; 차훈진·조용철, 2012; 최영신·강석진, 2012). 1990년을 전후하여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를 가져왔고,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외국인범죄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0년을 전후하여 공식 범죄통계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한 연구들에서는 외국인범죄의 증가율이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범죄 발생률이 체류외국인의 인구 비중에 비하여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서 내국인의 범죄발생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2005년 이후 외국인범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김정규·신동준, 2010; 이훈동, 2011; 차훈진·조용철, 2012;), 외국인의 범죄유형별 범죄발생률에서 내국인보다 강도와 살인범죄의 발생률이 높으며(김정규·신동준, 2010; 최영신·강석진, 2012), 외국인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발생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홍세영·이현, 2011; 최영신·강석진, 2012),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최영신·강석진, 2012)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 동안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몇몇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뚜렷

한 근거 없이 불특정다수의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확산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¹⁾. 어느 사회에서나 외국인 이주자는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에 의한 범죄는 내국인의 범죄에 비하여 더 많은 시선이 주목되곤 한다. 그로 인해 외국인은 낮은 범죄율을 보이면서도 토착민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오는 대상이 된다. 공포의 대상이 외국인일 경우 단순히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심적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하여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을 유발하게 된다(Bourdieu, 1989; 신동준, 2012; 김정규, 2015).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의 편견과 차별로 나타나는 데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이다(김정규, 2015: 306). 외국인 이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선은 이주자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외국인에 대한 공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제노포비아(Xenophobia) 수준에 이르게 되고 이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범죄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Teitelbaum & Weiner, 1995).

과연 외국인 이주자는 위험한 존재인가?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의 1990년대 이후 이민자와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동향을 정리한 연구(김정규·신동준, 2010)에서는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의 관계가 각 국가별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특성, 이민자들이 자격 검증의 강화 정도, 이민자 유입의 통제와 조절 능력, 노동유연성을 바탕으로 둔 경제구조의 차이, 민족적 공동체의 활성화 여부,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의 정도, 그리고 각 국가의 범죄수준의 차이 등에 따라”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정규·신동준, 2010: 414). 미국의 경우, Sampson(2006)은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미국사회에서 범죄율이 감소한 원인의 하나로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을 꼽는다(Wadsworth, 2010: 533 재인용). 이민자들이 특히 많이 유입된 뉴욕시는 다른 도시들보다 범죄율이 많이 감소하였고 멕시코 국경에 있는 텍사스주 엘파소시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 또한 다른 도시에 비하여 범죄율이 낮았다. 이

1)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조선족에 의한 살인사건(2012년 오원춘사건, 2014년 박춘봉사건)은 매우 극단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계 중국인의 폭력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유포되거나 이들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특정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이 조장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민 1세대들은 새로운 곳에 와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더 조심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낮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그는 범죄율을 더 낮추고 싶으면 이민 문호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Sampson, 2006). 그러나 유럽의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이민이 증가했는데 전반적인 범죄율은 안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이민자들이 범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정규·신동준, 2010: 413 재인용).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외국인 이주자의 범죄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었지만 폭력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이 보고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²⁾. 특히 외국인의 폭력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폭력범죄와 관련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외국인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외국인들은 폭력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범죄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와 두려움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상징적 폭력을 양산하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에 근거한 외국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제기되는 2005년 이후의 외국인범죄의 급속한 증가,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증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폭력범죄의 증가 현상은 과연 우리사회에서 외국인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가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또한 몇몇 외국인 강력범죄는 외국인의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을 양산하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폭력적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외국인의 폭력성, 외국인

2) 국내 체류 외국인의 폭력범죄에 대한 연구로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검증한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국인의 차별로 인한 긴장과 음주가 외국인의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최봉영, 2014). 또한 외국인의 범죄 실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공식 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외국인범죄의 동향을 파악하거나(김정규·신동준, 2010; 신동준, 2010; 이훈동, 2011; 홍세영·이현, 2011; 차훈진·조용철, 2012; 최영신·강석진, 2012), 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 사례를 분석하거나(김종오, 2009),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실태를 분석하거나(최영신·강석진, 2012), 출입국관리상 형사정책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의 범죄피해에 관심을 두었다(김대근 외, 2014).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실체적 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증적 자료를 통해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이 저지르는 여러 범죄유형 중에서 특히 외국인의 폭력범죄에 집중하여 그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 체류하는 불특정다수의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거나 이들이 더 폭력적이고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차별적 인식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폭력범죄는 경찰청의 범죄유형 구분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력범죄와 구분되는 폭력범죄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³⁾. 외국인범죄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이 심각한 폭력성을 수반한 강력범죄는 발생빈도가 낮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인 이주자의 폭력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범죄발생률이 높은 폭력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 거시적 수준에서 공식 범죄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발생동향을 파악하고, 체류외국인의 인구구성을 고려한 거주 인구를 추정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범죄의 발생률을 비교하고, 외국인 폭력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범죄 및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내국인과 비교하여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폭력범죄 중에서 어떠한 범죄유형이 증가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로 외국인 폭력범죄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적 수준에서 폭력범죄의 가해·피해 양상은 어떠하며, 이와 관련된 특성은 무엇이며, 기존의 범죄학 이론에 근거한 폭력범죄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은 내국인과 외국인 폭력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법의식 수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폭력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대하여 보다 허용적인 태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외국인의 국적별로 폭력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법규범 준수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3) 제2장 제4절 '폭력범죄의 용어 정의' 참조

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공식 범죄통계자료와 설문조사자료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 폭력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라서 문헌연구,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외국인 폭력범죄 관련 심층면담조사, 내국인과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 관련 인식,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폭력범죄, 폭력에 대한 태도, 법의식 등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주로 검토하였다.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는 전통적 범죄학 이론 중에서 이민자들의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론들로서 사회해체이론, 차별기회이론, 일반긴장이론 세 가지를 소개하였으며, 외국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이주민들의 특징에 따라서 특정 국가의 외국인 범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미국과 유럽에서의 이민과 범죄에 대한 연구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국내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는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연구들 중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이나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외에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폭력범죄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설문조사에 포함된 개념으로서 폭력에 대한 태도, 법의식 등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2.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에는 검찰에서 직접 인지한 일부 사건이 제외되어 있지만⁴⁾ 전체 공식 범죄통계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⁵⁾, 특히 외국인 범죄의 국적 분류가 대검찰청 통계보다 상세하게 보고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인 [범죄통계]의 외국인 국적 분류에는 16개국⁶⁾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 대검찰청 범죄통계자료인 [범죄분석]에는 10개국만 포함되어 있다⁶⁾.

경찰청 범죄통계자료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범죄분류 항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범죄분류 항목이 변경되기 이전인 2010년까지 발행된 『범죄통계』와 자료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발생 현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찰청 범죄통계의 범죄분류 항목이 개선된 2011년도 이후 공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내·외국인의 검거인원, 범죄유형별 검거인원, 외국인의 국적별 검거인원, 폭력범죄의 하위유형별 검거인원, 검거인원지수 비교 등 주요 분석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내·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를 계산하는 데에는 경찰청의 범죄통계자료 이외에 출입국 공식통계자료인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체류외국인, 불법체류자, 체류외국인의 성별·연령별 분포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외국인의 전체 검거인원의 추이에 대한 2004년 이후 자료는 외사과에서 작성한 [경찰통계연보] 인터넷자료⁷⁾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범죄통계』와 비교하여 2011년 이전과 이후에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결과는 '제3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에 제시하였다.

-
- 4) 검찰이 직접 인지하거나 접수한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이 인지한 사건이 해당됨.
 - 5)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의 자료를 경찰청 자료와 비교해보면, 2014년도 대검찰청 자료의 외국인 전체범죄 검거인원은 30,930명이고, 경찰청 자료는 28,456명으로 나타난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는 대검찰청자료의 92% 정도를 포함한다.
 - 6) 경찰청의 [범죄통계] 자료에는 외국인 국적이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대만, 필리핀, 스리랑카, 일본, 러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기타로 16개국이 분류되어 있는 반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는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대만, 필리핀, 스리랑카, 일본, 기타로 구분되어 10개 국적만 분류되어 있다.
 - 7) 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 경찰통계 연보 해당연도, "외국인범죄"

3. 심층면담조사

심층면담조사는 외국인의 폭력범죄 발생과 관련한 여러 문제의식에 대한 내부자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심층면담참여자는 외국인과 한국인을 모두 포함하였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체류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으로서 본국 문화와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양쪽 문화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상담가로서 3년 이상 근무한 활동가를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참여자의 인적 사항과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이 연구의 심층면담참여자는 모두 10명이며, 이중에서 외국인은 8명이고, 외국인 지원단체 한국인 활동가는 2명이다. 심층면담은 필리핀인과 방글라데시인의 경우 그룹별 집단면담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의 경우에는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지원단체 한국인 활동가의 경우에도 2명과 공동으로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2016년 6월-7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집단면담과 개별면담 모두 1회 2시간 내외로 진행되었다.

<표 1-1> 심층면담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주요 특징

면담 번호	성명	성별	연령	국적	비자 종류	기타 특징
1	최○○	남	60대	대한민국 (조선족 출신 귀화)	-	외국인주민복지센터 상담·통역업무 지원 중국에서 공안으로 활동
	벤○○	남	50대	필리핀	미등록	체류기간 20년 침대공장 노동자
	루○○	여	50대	대한민국 (필리핀 출신 귀화)	-	체류기간 20년 주부
2	마○○	남	30대	필리핀	미등록	체류기간 16년 가구공장 노동자
	테○○	여	30대	필리핀	E-9	체류기간 10년 플라스틱 공장 노동자
	쥬○○	여	40대	필리핀	미등록	체류기간 9년, 침대공장 노동자
3	마○○	남	30대	방글라데시	E-9	체류기간 4년, 용접노동자
	모○○	여	20대	방글라데시	미등록	체류기간 15년, 프리랜서, 외국인주민복지 센터 시간제 근무
4	신○○	남	30대	대한민국	-	외국인지원단체 근무
	김○○	남	50대	대한민국	-	외국인지원단체(팀장)

심층면담의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폭력 관련 문화적 특성(무기소지에 대한 인식, 주취폭력 등), 폭행 피해 및 가해 경험, 집단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한국 경찰에 대한 인식과 신뢰, 한국사회에서의 차별 경험(직장, 일상생활) 등에 대한 것이며, 포괄적이고 비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하여 심층면담참여자의 관점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심층면담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이를 녹취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심층면담자료의 주요 주제영역을 분류하고 주제영역별로 코딩한 후 심층면담자료의 분석 및 해석에 이용하였다⁸⁾. 심층면담자료는 공식 범죄통계자료나 설문조사자료의 해석과정에서 외국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관련 자료의 해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인용하였다.

4. 설문조사

이 연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폭력 가해·피해 경험,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폭력에 대한 태도, 법의식 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 인구집단을 전집으로 하여 500명을 표집하였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 중에서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를 기준으로 먼저 국적을 표집하고 각 국적별로 조사대상자를 할당하였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에서 1.5% 이상을 차지하는 국적은 모두 11개인데, 이중에서 일본과 타이완 국적을 제외하고⁹⁾ 9개 국적을 선정하여 각 국적별로 조사대상자를 할당하였다. 조사대상자에 포함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미국,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리랑카로서 모두 9개국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국적에서 제외

8) <부록1> 심층면담자료 분류체계 참조

9) 일본 국적 외국인은 2014년 기준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이 50,145명이고, 타이완은 32,036명으로서 각각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의 2.5%, 1.6% 정도를 차지하지만(<부록2> 참조),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조사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범죄율이 현저히 낮아 외국인 하위 집단 중에서 특이성을 보이고, 타이완 국적 외국인 역시 국내 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집단과 그 특성이 매우 다르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을 대표하여 포함시켰다. 이번 설문조사에 포함된 국적은 한국을 포함하여 모두 10개국이다.

설문조사대상자의 인원 할당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집단 비교, 외국인 하위 집단 중에서 조선족과 한족, 그리고 주요 각 국적 외국인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인원수를 할당하였다. 내국인은 500명을 할당하였고, 중국인의 경우에는 조선족이 250명, 한족이 150명 정도 포함되도록 할당하였다. 중국인은 전체 체류외국인의 60% 정도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조선족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조선족의 비중을 높게 잡았다. 이외에 나머지 8개 국적 외국인은 각 국적별로 수집된 설문지가 100부 이상 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를 110명씩 할당하였다.

다음의 <표 1-2>는 설문조사에서 각 국적별로 계획한 조사대상자 인원과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포함된 조사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표 1-2> 국적별 설문조사인원과 최종 분석대상

국적	설문조사 계획 인원	설문조사 실시 인원	최종 분석 인원	
한국	500(28.1)	500(27.9)	500(29.3)	
중국	조선족	250(14.0)	242(13.5)	216(12.6)
	한족	150(8.4)	164(9.2)	154(9.0)
베트남	110(6.2)	111(6.2)	105(6.1)	
필리핀	110(6.2)	111(6.2)	99(5.8)	
인도네시아	110(6.2)	111(6.2)	108(6.3)	
우즈베키스탄	110(6.2)	105(5.9)	100(5.9)	
타이	110(6.2)	113(6.3)	113(6.6)	
스리랑카	110(6.2)	113(6.3)	94(5.5)	
몽골	110(6.2)	112(6.3)	110(6.4)	
미국	110(6.2)	110(6.1)	110(6.4)	
전체	1,780(100.0)	1,792(100.0)	1,709(100.0)	

<표 1-2>와 같이 설문조사에서 계획한 설문조사대상 인원은 내국인이 500명, 외국인 1,280명으로 전체가 1,780명이었으나, 실제로 조사된 설문조사 인원은 내국인이 500명, 외국인이 1,292명으로 모두 1,792명이다. 최종적으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자료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1,709부이다.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내국인에 비하여 무응답한 설문문항이 많았으며, 무응답 등으로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말부터 8월말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각 국적별로 설문조사대상자의 조사기관 및 조사장소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외국인의 국적별로 가능한 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외국인을 접촉하여 대상자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에는 각 국적별로 해당 언어에 능통한 외국인 지원 단체 통역 지원 활동가들이 조사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해당 국적의 외국인이거나 귀화자로서 외국인 지원 단체 뿐만아니라 각 국적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 많이 모이는 장소, 각 국적 음식점,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 등을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외국인 지원 단체를 방문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특정 문제 상황에 노출된 외국인이 많이 표집되어 외국인의 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 1-3> 설문조사대상자의 국적별 조사기관 및 조사장소

국적(조사인원)		조사기관 및 조사장소
중국	조선족 (2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지원센터(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다문화센터, 강남여성능력개발센터, 성남시외국인복지지원센터,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한족 (15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로구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밀집지역(봉천동, 사당동, 구로동, 동작구 보라매공원, 보라매아카데미) 공장 및 회사(제일전산공장, 양주 마래텍스피아, 공사현장) 대림동선후배모임 중국식당(수정구 먹자골목)
베트남(10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지원센터(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구로구근로자지원센터, 관악구이주다문화센터,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영등포구 베트남 근로자 공동체
필리핀(9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지원센터(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안산 미션 필리핀 교회 공장 및 회사(주) 선우정공) 마석가구공단 내 개인숙소
인도네시아(10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지원센터(부천 다문화센터,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안산시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안산주민센터 광장 및 행사장) 안산 인도네시아 공동체(ICC, CIBER) 인도네시아 식당

국적(조사인원)	조사기관 및 조사장소
우즈베키스탄(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지원센터(안산시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고려인 한글야학 너머,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 우즈베키스탄 식당(안산, 동대문) • 공장 및 회사
타이(1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지원센터(안산시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 공장 및 회사(농조이마트검단) • 태국식당(푸켓-타이타이스타일, 타이스타일, 푸켓)
스리랑카(9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지원센터(mntv, 화성고용센터, 안산시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 공장 및 회사(㈜아이폼)
몽골(1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지원센터(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 밀집지역(동대문) • 몽골식당(동대문) • 무학교회
미국(1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인 출현 가능성 높은 지역(이태원, 명동, 강남, 영어학원, 외국인 교회 등)
한국(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7월말 기준 서울·경기도·인천 지역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표본수를 할당하고, 다시 각 지역별 주민등록인구의 성별, 연령별 분포에 따라서 표본수를 할당함. 할당된 표본수에 따라 Panel list 추출 후 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다만 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업체인 ‘트랜드리서치’를 통해 조사하였다. 미국인은 다른 국적 외국인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외국인 지원 단체 활동가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설문조사 전문업체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미국인 조사는 국내 체류 미국인의 연령 구성 비율에 따라 조사인원을 표집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내국인 조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성인 집단을 전집으로 하여 전자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내국인 조사는 주민등록인구 비율에 따라 1차로 지역별 할당을 한 후 지역별로 성별, 연령별 분포를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회수된 내국인 설문조사자료는 수도권 한국인 성인 집단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내국인을 위한 한국어설문지 이외에 외국인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10개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 포함된 외국인 국적은 모두 9개인데, 우즈베키스탄인의 경우에 고려인은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다른 민족의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추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번역한

설문지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이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어, 몽골어, 스리랑카어(신할리어)로서 모두 10개 언어이다.

설문조사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설문조사의 주요 영역별 세부 내용

주요 영역	세부 내용(내·외국인 공통)
①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자녀여부, 종교, 국적, 동거인 여부, 평균 월 소득
② 폭력범죄 가해 양상과 특성	폭행가해 비율·빈도, 폭행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수, 방법, 무기종류, 피해정도, 폭행가해의 원인
③ 폭력범죄 피해 양상과 특성	폭행피해 비율·빈도, 폭행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수, 방법, 무기종류, 피해정도, 대응방법, 폭행피해의 원인
④ 폭력범죄 유발요인	일상생활 차별, 직장생활 차별, 일반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무기허용도
⑤ 폭력범죄 억제요인	사회유대, 가족애착
⑥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의 필요성, 훈육적 폭력, 폭력에 대한 거부, 폭력의 효율성
⑦ 법의식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⑧ 경찰에 대한 인식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경찰 관련 인식
⑨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법교육·폭력예방교육, 외국인에 대한 고충상담기능 강화, 통역서비스의 확대, 거주지역 취약환경 개선, 경찰에 대한 신뢰 강화 등에 대한 인식
⑩ 체류 관련 특성	체류상태, 체류기간, 폭력피해·가해시 체류신분, 한국어능력 등(외국인만)
⑪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범죄 관련 인식	외국인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외국인범죄에 대한 인식,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내국인만)

설문조사에 포함된 주요 내용에는 내·외국인의 개인적 특성, 폭력범죄 가해·피해 양상과 특성, 폭력범죄 유발요인, 폭력범죄 억제요인, 폭력에 대한 태도, 법의식, 경찰에 대한 인식,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 체류 관련 특성,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범죄 관련 인식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 관련 특성에 대한 질문을 추가시켰으며, 내국인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범죄 관련 인식에 대한 질문을 추가시켰다.

설문조사자료의 분석에서는 주요 변인의 특성과 문제의식에 따라서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교차분석,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 요인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주로 활용하였다. 주요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교차분석 등을 이용하였고, 차별 경험, 사회유대, 폭력에 대한 태도와 법의식 등 내·외국인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요인분석과 평균값 차이 검증을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 검증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는 '제4장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및 피해 양상과 특성', '제5장 외국인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제6장 외국인의 폭력 및 법에 대한 태도 및 인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2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이론적 배경

장 현 석

이론적 배경

제1절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에 대한 인식

이민자들의 유입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미국 시카고학파의 연구는 현대 범죄학의 이론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민자들의 유입은 범죄뿐만 아니라 빈곤과 복지문제,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보였고 이민정책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선주자들 중 한명은 멕시코정부가 범죄자들을 미국에 보낸다고 주장하여 마치 멕시코출신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많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연합뉴스, 2015). 이처럼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Bobo와 Hutchings(1996: 953-955)는 이민자나 피부색이 다른 인종집단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경계심을 갖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네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첫째는 단순 자기이익 모형(Simple Self-Interest Model)인데, 인종집단간의 갈등의 원인은 물질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충돌 때문이고,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상대 집단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민 온 노동자들에 밀려 일자리를 빼앗긴다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적개심과 갈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전적 편견 모형(Classical Prejudice Model)인데 자기이익 모형과 다르게 물질적·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 또는 문화적으로 형성된 인종 혐오를 정서적 또는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인종갈등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Allport, 1954). 즉, 이미 형성된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을 받아들여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계층화 신념 모형(Stratification Beliefs Model)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민자나 다른 인종을 바라볼 때 사회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재화나 기회에 있어서 계층(인종, 성별 등)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Kluegel & Smith, 1986). 사회가 구조적으로 계층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인종이나 민족 집단에 대하여 경쟁심을 갖게 되고 또한 위협적인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집단 위치 모형(Group Position Model)인데, Blumer(1958)는 다른 인종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경쟁심이나 적개심은 사회에서 내가 속한 집단(In-group)이 다른 집단(Out-group)에 대비하여 정당하게 차지해야 할 위치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형성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백인들이 상대적으로 흑인들에 비하여 사회에서 정당하게 차지해야 하는 위치가 있다고 집단적으로 믿음을 형성한 경우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Blumer(1958)의 모형은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믿음뿐만 아니라 물질적·경제적 관점도 포괄하는 것이어서 위의 세 가지 모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obo & Hutchings, 1996: 95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흉악범죄 소식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더 확대 재생산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종간의 갈등이 증오범죄나 여타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범죄학자들도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민자들에게 경계심을 갖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설 중의 하나가 인종위협가설(racial threat hypothesis)이다(Blalock, 1967; Liska & Chamlin, 1984; Jacobs & Wood, 1999; Eitle, D'Alessio & Stolzenberg, 2002). 미국의 경우 어느 지역사회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인종이 많아지면 주류구성원을 이루고 있던 백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런 위협이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양산하게 된다는 가설이다. 소수인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정책을 양산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오랫동안 같은 피부색, 같은 말을 사용해 온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졌던 사회에서 낯선 외국인의 비율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일자리를 놓고 내국인과 외국인은 경쟁하게 되었다.

또한 간간히 뉴스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잔혹한 범죄기사가 보도됨에 따라

외국인은 더 이상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또한 범죄를 통하여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인종위협가설은 갈등론적 시각의 이론으로서 주류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내국인들이 새로운 소수계층으로 떠오른 외국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정책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월드벨류서베이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성인의 31.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동일한 질문에 대해 미국의 경우 13.7%, 스웨덴은 3.5%, 오스트레일리아는 10.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한겨레, 2016).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범죄문제는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비교적 쉽게 드러나는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문제는 내국인 범죄에 비하여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외국인 전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 현상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부분은 외국인 이주자와 그들에 대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 관련 인식을 논한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로 인한 근거 없는 범죄 관련 두려움의 양산은 인종위협가설에서처럼 외국인을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그 집단 구성원들 간에 긴장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 범죄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정규·신동준, 2010).

제2절 이민자와 범죄의 관계에 관한 이론들

본 연구는 외국인의 폭력범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데, 기존연구에서 이민자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원인을 설명할 때 '폭력범죄'만 설명하는 이론으로 별도로 소개하지 않고 폭력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범죄학이론들을 이론적 배경으로

소개하였다(Lee et al., 2001). 예를 들어,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하여 살인률이 증가했는지 조사한 Lee et al.(2001)의 연구는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설명하는 기회구조이론과 사회해체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폭력'만 별도로 설명하는 이론은 주로 개인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춘 심리적 또는 생물학적 이론이 주를 이룬다. 이민자나 외국인이 특정 '사회'에 이주하여 폭력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사회학적 범죄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이민자범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폭력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론들을 외국인 범죄의 이론적 배경으로 소개할 것이다. 기존의 이민자 범죄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특별히 알아보고자한 외국인 폭력범죄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에 대한 이론적 설명(낮은자기통제력, 사회유대, 애착)은 본 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하지 않고 제5장에서 외국인 폭력의 유발과 억제요인을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에는 별도로 소개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보다 이민의 역사가 긴 서구에서는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이론적 논의도 이루어졌다. Yeager(1997)는 이민자들 자녀의 범죄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자료를 모아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들 자녀의 범죄를 예측하는 요인들은 전통적인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요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즉, 빈곤, 인종차별, 학업실패, 실직, 가족해체, 마약중독 등과 같은 요인들이 이민자 자녀들 범죄의 주요 위험요인이었다(Yeager, 1997: 143).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민자와 범죄의 연계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Mears(2001: 1)에 의하면 어떠한 요인들이 외국인 이민자들의 범죄를 설명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 범죄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연구마다 보고하는 결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사용한 이론적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수준의 분석에 주로 사용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이론적 요인들은 나이, 성별, 비행친구, 가족, 교육, 직업, 충기 근접성, 범죄기회, 범죄피해 등이 있고, 집합적 수준의 분석에서는 빈곤, 사회·경제적 불평등, 인종·민족적 구성 비율, 마약과 충기 시장 상황, 집합적 효율성 등이 이민자들의 범죄율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Sampson & Lauritsen, 1997; Tonry,

1997; Yeager, 1997; Butcher & Piehl, 1998; Waters, 1999; Martinez, 2000; Mears, 2001; 10 재인용).

서구의 연구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 이외에 이민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 요인이나 사건들이 범죄에 연관이 있는지 관심을 두었다. Tonry(1997)는 이민자들이 자국을 떠나서 이주하게 된 이유가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연관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다. Rattner(1997)는 범죄를 특히 많이 저지르는 이민자 집단의 경우 그러한 범죄 문화를 본국에서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이민온 나라의 범죄 문화에 동화되어 그런 것인지 조사하였다. Butcher와 Piehl(1998)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적응하는 과정이 이민자 집단들에게 차별적 영향을 주어 특정 집단이 보다 쉽게 범죄와 범죄피해를 당하는지 조사하였다. Hagan과 Palloni(1999)는 이민자 집단의 상이한 출산률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Martinez(2000)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히스페닉 이민 1세대들과 이민 2세대들 간에 범죄율이 차이가 나는지 조사하였다.

Mears(2001: 10)는 이민자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로서 학계에서 관심을 보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미국의 시민권 제도의 변화, 이민자들의 동화수준, 국경단속 법률의 변화, 이민자들의 본국과 이민온 나라 사이의 문화적 차이, 체류기간, 동화 과정, 국수주의·제노포비아, 국제 시장동향, 이민 네트워크, 국내 경제 상황, 본국과 이민온 나라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이 이민자들의 범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Beane & Fix, 1992; Teitelbaum & Weiner, 1995; Alba & Nee, 1997; Tonry, 1997; Yeager, 1997; Martinez, 2000). 하지만, 이러한 이민과 관련된 원인들이 직접적으로 범죄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는 없다(Mears, 2001). 위에서 제시한 관련성도 추측이거나 새로운 연구를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내국인들과는 다르게 외국인들의 경우 자기들이 살던 곳을 떠나 언어와 문화, 때로는 피부색이 다른 사회에 이주해 와서 살기 때문에 특수한 환경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민자들의 범죄에 관하여 서구에서 주목받았던 이론적 요소들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였다. 이민자들의 범죄와 전통적 범죄 사이에 발생 원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ars, 2001; Yeager, 1997). 즉, 이민자들의

범죄만을 설명하는 독창적인 이론은 없고, 기존의 이론들이 이민자들의 범죄 또한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 범죄학 이론 중에서 이민자들의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론들을 소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들의 범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으로 선행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사회해체이론, 차별기회이론, 긴장이론을 소개한다.

1.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사회해체이론은 공동체성이 붕괴된 사회에서 범죄율이 높다고 설명한다(Shaw & McKay, 1942). 공동체가 잘 형성된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제가 잘 작동하여 범죄가 비교적 잘 통제되지만, 사회해체 현상이 발생하는 공동체는 이러한 비공식적 통제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범죄가 보다 쉽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사회해체이론은 1920년대 시카고지역의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지역을 분석단위로 조사한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이론이다. 시카고 도심지역에서 비행률이 높게 나타났고,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비행률이 떨어졌다. 비행률이 높게 나타난 도심지역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였다. 조사결과 도심지역에 살던 기존의 이민자는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하면 주거환경이 더 나은 외곽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도심지역에는 다시 새로운 이민자들이 유입된다. 이때 기존 이민자들이 옮겨간 외곽지역은 범죄율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떠나고 새로운 이민자들이 들어온 도심지역은 여전히 높은 범죄율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Shaw와 McKay(1942)는 높은 범죄율과 비행률을 보이는 도심지역의 생태학적 특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결손가정, 다양한 인종·민족 구성, 낮은 교육수준, 낮은 임금수준 등을 들었다. 이들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전통적인 사회질서와 가치의 통제기제가 약화되어 사회해체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Kornhauser(1978)는 Shaw와 McKay(1942)의 연구를 다시 분석하면서 시카고 도심에서 나타난 높은 비행률은 사회해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하위문화적 요인도 같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두 가지 요인 중에서 비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해체적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종·민족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지

역, 또는 인구 이동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에 공동 목표설정이 어렵고, 주민들 간에 정상적인 사회관계의 형성도 쉽지 않아 전통적 제도를 이용한 사회통제 역량이 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회해체가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범죄율 또는 비행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기존 공동체에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유입될 경우 인구구성의 이질성이 증가한다.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이 기존공동체에 유입되면 구성원간의 유대가 약화되고 이는 주민들 간의 통제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화되어 범죄율이 높아진다(Shaw & Mckay, 1942).

사회해체이론은 분석단위가 지역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할 뿐, 이민자들이 실제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새롭게 이주해 온 외국인이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회해체로 인하여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게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Mears, 2001).

하지만,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다. 미국의 히스패닉 이민자들과 범죄에 대하여 연구해온 연구들에 따르면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폭력범죄율이 유의미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Lee, Martinez, & Rosenfeld, 2001; Martinez, 2002; Lee & Martinez, 2002). Sampson, Morenoff와 Raudenbush(2005)의 시카고 지역 연구에서도 개인 및 지역 수준의 분석단위를 적용하여 이민자들의 유입이 범죄율 상승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결과, 이민자들의 유입은 오히려 범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의 유입이 사회해체를 가져오거나 이것이 높은 범죄율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들 연구는 이민 1세대들은 주로 본국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같이 살고 본국사람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김정규·신동준, 2010: 402 재구성). 즉, 이민자들의 공동체가 나름대로 사회통제 역할을 잘 수행하여 낮은 범죄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Sampson et al., 2005). Shaw와 McKay(1942)는 기존지역사회와 이민자들 공동체 전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에서의 범죄를 볼 때 기존지역사회 주민들과 이민자들 사이에 사회유대와 신뢰형성이 어려워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본 반면에, Sampson et al.(2005)과 Lee et al.(2001)의 연구는 분석단위를 좀 더 세분하여 기존지역사회를 제외한 이민자들 공동체만 놓고 분석하여 사회해체양상이 이민사회에서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낮다고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Shaw와 McKay(1942)의 사회해체이론이 틀렸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Shaw와 McKay(1942)가 연구를 수행한 당시의 미국 시카고의 상황과 현재의 미국 시카고의 상황은 많이 다를 것이다. 또한 그 당시에 유럽으로부터 이주해온 이민자들의 생활환경, 근무 조건 등이 현재 미국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의 상황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전사회적인 인권운동으로 인종차별 철폐를 이루어내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도록 교육받은 미국 사회는 외국인 또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즉, 미국 사회의 제반 시스템이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상대적으로 잘 막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지역사회가 이주민공동체에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을 행사할 경우 차별과 편견을 경험한 외국 이주민들 사이에 긴장이 형성되고, 이는 기존 지역사회와 더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높은 범죄율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기존의 지역사회가 외국인들에 대하여 차별과 편견을 행사할 경우 이것이 원인이 되어 기존 지역사회와 외국인공동체 간의 긴장, 그리고 개인적 수준에서 외국인들이 긴장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정규·신동준, 2010; 김정규, 2015). 결국 이러한 사회는 해체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이민자들은 주로 도심의 집값이 저렴한 지역,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처음으로 정착해 살기 시작한다. 또한 이들이 정착하여 사는 곳은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이미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Shaw & McKay, 1942). Cloward와 Ohlin(1960)은 이민자들이 사는 곳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조적 환경과 더불어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범죄기회들이 이들로 하여금 범죄를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 성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은 Robert K. Merton(1938)의 구조적 긴장이론과 유사한 설명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긴장과 차별적 기회들이 고착화될 경우 범죄하위문화 생성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Cloward & Ohlin, 1960). 따라서 Cohen(1955)의 하위문화이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다(Cullen & Agnew, 2003: 191). 특히 폭력적 하위문화를 형성한 이민자 집단의 경우 갱과 같은 조직범죄 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마약과 무기거래 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Cloward & Ohlin, 1960). 이민자 청소년들은 주류사회에서의 성공을 포기하고 갱을 통하여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갱 멤버가 되는 것은 다른 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서 구성원들 간에 끈끈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라틴계 갱들은 이러한 폭력적 하위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Sullivan, 1989).

하지만, 최근 이민과 범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Cloward와 Ohlin(1960)의 차별 기회이론에서 전제된 이민자 공동체의 상황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민자들이 주로 범죄가 많은 빈민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합법적 경제기회가 적고 범죄기회가 많다는 부분과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정규·신동준, 2010: 403). Lee와 Martinez(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 공동체가 범죄기회를 제공하기보다 새로 이주한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미국에 살 때 건설노동자들은 대부분 멕시코나 쿠바에서 이민 온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들이었다. 이민 온 히스패닉 사람들은 건설 노동현장에서 처음에는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다가 점차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부분으로 옮겨간다. 단순노동직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때 숙련된 히스패닉 건설기술자들은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 이민온 사람들은 단순노동직에서 출발하여 점차 숙련된 노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자리잡고 있었다. 필자가 근무하던 대학의 건축공학과 교수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없으면 미국의 건설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즉,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미국사회에서 경제적 역할이 분명히 있고, 이들은 미국사회가 필요로하는 존재가 되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이를 통하여 American Dream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민을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민자들의 증가는 인구증가로 이어지

고 그들의 노동생산이 미국도시들의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Martinez(2002)는 많은 이민자들이 여전히 가난한 지역에 살고 힘든 노동일에 주로 종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법적 수단으로 사회적 성공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에 애착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이민자 공동체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유대, 네트워크,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새로운 이민자들로 하여금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볼 수 있다.

3.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앞서 살펴본 사회해체이론과 차별적 기회이론은 거시적 차원에서 이민과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민과 범죄와의 관계를 좀 더 미시적인 수준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이다. 물론 긴장이론에는 Merton(1938)이 제시한 구조적 긴장이론도 있지만, 구조적 긴장이론은 중산층의 비행과 범죄를 잘 설명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한 것이 Agnew(1992)가 제시한 일반긴장이론이다. 일반긴장이론은 긴장의 원인을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그리고 부정적 자극의 생성으로 규정하였다.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하여 긴장이 생기면 부정적 감정이 축적되고 이것이 비행·범죄 친구, 낮은 자기통제력 등과 매개 되었을 때 범죄나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Paternoster & Mazerolle, 1994).

이민자들은 새로 이주한 곳에서 기존의 사회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본국에서 이주해 오기 전에 품었던 기대와 막상 도착해서 생활했을 때 차이가 있을 경우, 외국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로 인한 목표 달성의 실패, 본국의 가족과 떨어져 지냄으로 인한 긍정적 자극의 소멸,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의 편견과 차별 등이 부정적 자극을 발생시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신동준, 2012: 190). 이러한 긴장은 우울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자기통제력이 약하거나 범죄성향의 친구가 있는 사람일 경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주류 사회의 외국인들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차별이 부정적

자극의 생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심화되면 사회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의 제노포비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또한 외국인에 대한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으로 표출되어 심한 편견과 차별을 가하게 된다(Bourdieu, 1989; 김정규, 2015: 308). 다수인 내국인들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되면, 외국인들은 부정적 자극의 발생으로 인한 긴장(strain)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범죄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Agnew, 1992; 신동준, 2012: 191).

지금까지 살펴본 이민과 범죄 관련 이론적 배경은 미국에서 제시된 이론으로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외국인 폭력범죄의 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외국인 폭력범죄의 원인을 파악하여 외국인 범죄가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심각한 것이지, 우리 사회에서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로 인하여 외국인들에게 긴장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자 한다. 객관적 연구를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다면 불필요한 상징적 폭력을 줄이고 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외국인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외국인이 특정한 국가로 이주하는 것은 복잡한 사회적, 법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들이 작용한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 종교, 문화 등이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을 선택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민자들이 새로운 국가에 가서 생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중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범죄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민족들이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정치적 탄압을 피해 난민으로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다.

이주민들의 특징에 따라서 특정 국가의 외국인범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최근 서구의 범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규·신동준(2010)의 연구는 이민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양상이 사뭇 다르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만 놓고 보았을 때 이민자들의 유입이 특정지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다수인데 반하여(Lee & Martinez, 2002; Martinez, 2002; Sampson et al., 2005; Wadsworth, 2010), 유럽의 경우 각국의 이민자 정책, 법률, 경제적 상황, 노동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김정규·신동준, 2010).

1. 미국의 이민과 범죄에 대한 연구

이민정책에 있어서 범죄가 차지하는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민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보고 이들에 대한 통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논리는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9/11 테러 이후에 테러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이민 온 사람들 중에는 범죄자가 많고 마약을 들여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경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잠시 중단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연합뉴스, 2015). 정치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미국국민들에게 다가갔을 수 있다. 세계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복귀하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고 범죄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Zimring, 2007). 195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범죄율은 1990년대 초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 시기에 정치인들은 범죄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사회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민자들 특히, 불법이민자들이 범죄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많은 시민들이 동조하였고,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강력한 이민 반대정책을 제안하였다(Hagan & Palloni, 1999; Wadsworth, 2010: 531).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의 범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수십 년 동안 범죄율 감소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도 내려가지 않던 범죄율이 감소함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교도소 수감률 때문에 범죄자 무능화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주장(Spellman, 2000),

1990년대부터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15세에서 29세 사이의 남성 인구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주장(Fox, 2000), 미국 마약 시장의 안정화로 마약 카르텔 간의 분쟁이 감소하여 폭력범죄가 줄었다는 주장(Grogger, 2000), 1970년대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낙태를 허용하여서 십대들의 출산, 그리고 여타 준비되지 않은 출산을 막음으로써 미혼모, 또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을 청소년들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율이 줄었다는 주장(Levitt & Donohue, 2001), 경찰의 범죄통제 노력이 범죄율을 낮추었다는 주장(Bratton & Knobler, 2009) 등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언급하였듯이 Sampson et al.(2005)은 시카고 지역의 경우, 이민자들의 유입이 범죄율을 낮추었다는 주장이 더해졌다. 또한 Martinez와 그의 동료들은 일련의 연구에서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의 연구를 통해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이 오히려 범죄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Martinez, 1997; Martinez, 2000; Lee et al., 2001; Lee & Martinez, 2002; Martinez, 2002).

Reid et al.(2005), Stowell et al.(2009), 그리고 Wadsworth(2010)는 기존 연구가 미국의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과는 다르게 미국의 대도시 또는 특정 인구수 이상의 도시들을 포함한 분석을 하였다. 그중 Wadsworth(2010: 538-541)는 미국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458개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1990년과 2000년 미국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별 외국인 이민자수 자료, 여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을 수집하였고, 종속변수들인 도시별 살인율과 강도발생률을 FBI의 Uniform Crime Report(범죄율 자료는 1990년은 1989~1991년 범죄 자료를, 2000년은 1999~2001년 범죄 자료를 사용하였음)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따라서 도시를 분석단위로하여 패널자료를 만들어서 횡단분석뿐만 아니라 종단분석도 실시하였다. 이 자료를 통하여 도시에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하면 폭력범죄율이 증가하는지, Sampson(2006)의 New York Times기사에서의 주장처럼 1990년대 이후 보인 미국 전역의 범죄율 감소가 이민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현상인지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횡단자료 분석에서는 이민이 살인율, 강도발생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1990년과 2000년 자료를 모두 포함한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민자들

이 증가한 도시의 경우 살인과 강도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Wadsworth, 2010: 542-544). 즉, 중단분석 결과 이민자들의 증가가 미국의 범죄율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민자들의 유입이 범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경험적 증거가 여럿 제시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민자들은 여전히 위험한 존재로서 합법적 이민자들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Hickman과 Suttorp(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합법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들 사이에 범죄빈도나 재범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김정규·신동준, 2010: 398).

이민자들의 인종과 민족적 상이함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연구에서도 특정 인종이나 민족이 높은 범죄율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김정규·신동준, 2010: 398). 라티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우 오히려 폭력관련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라티노들의 증가가 라티노 사이의 폭력범죄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흑인, 백인들의 살인범죄율 또한 낮추었다(Feldmeyer, 2009; Feldmeyer & Steffensmeier, 2009).

이러한 일련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이민자들이 미국사회에서 범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범죄가 증가한다면 그것은 이민자들 때문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Wadsworth, 2010: 550). 이민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아니면 기존의 미국 시민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이민1세대와 2, 3세대 간에 범죄율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민 2, 3세대들은 이민자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이다. 미국은 인디언들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민자들의 후손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연구는 외국인 이민자들과 기존 국민들 간에 어느 쪽이 범죄에 더 책임이 큰지 잘 보여 줄 수 있다. Hagan, Levi와 Dinovitzer(2008: 100)는 이민 1세대보다 이민 2세대들의 범죄율이 더 높고, 어릴 때 이민 온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민 온 사람들보다 범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범죄성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가설을 부정한다. 오히려 이민 2, 3세대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정책적 억압, 정치적 탄압과 연결되어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Hagan et al., 2008: 100-101).

이민자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이라는 통념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Wadsworth(2010)는 이민과정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민자들 하면 보통 떠오르는 인식이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며, 교육 수준이 낮고, 숙련된 기술도 없이 미국으로 들어와 사회, 경제적으로 하급계층에 속하는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민학자들은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언급하면서, 이민자들의 성공여부는 이민자들의 교육수준, 기술수준, 현지 고용 네트워크로의 연결, 현지에서 마주치는 편견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Wadsworth, 2010: 536). 분절된 동화(Segmented assimilation)라는 개념은 어떤 이민 1세대들의 자녀들은 미국 상류사회로 동화되지만, 다른 경우는 보다 낮은 사회계층으로 동화되는 현상을 설명한다(Portes & Zhou, 1993: 82). 분절된 동화의 결과를 정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체류자격,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출신국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착하는 지역의 환경이다(Portes & Zhou, 1993: 96).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먼저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즉, 도착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미국사회에 적응하기가 용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이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멕시코 이민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주로 자기들보다 먼저 이민 가서 정착한 사람들과 같이 모여 산다. 먼저 정착해서 살고 있던 본국 사람들로부터 주거, 일자리 등 정착에 필요한 많은 부분의 도움을 받는다. 새로운 나라에서 성공해 보려는 꿈을 가지고 도착한 이민자들은 범죄로 빠지기보다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성공적으로 이민사회에 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미국사회의 경우 이민이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고,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이민자들의 유입이 범죄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2. 유럽의 이민과 범죄에 대한 연구

유럽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와는 다른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은 EU로 통합되면서 EU 회원국 시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EU내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EU내 국가 간에 인구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에 속하지 않은 나라 사람들이 EU 국가들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에는 그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Solivetti, 2010).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럽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 1980년대 이전에는 보통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이민이 아니라 본국의 실직률이 너무 높거나, 정치적, 문화적 박해를 피해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김정규·신동준, 2010: 400). 따라서 유럽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에도 경제 활동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민이 잘 통제 되고 있는 나라로서 국가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허가거나 영주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경제활동을 통하여 미국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이민을 허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산업계에 부족한 단순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류기한을 미리 정하고 입국을 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민에 대한 통제가 약하여 무조건적인 이민자들의 유입이 많은 것이 차이점이다(Solivetti, 2010).

Solivetti(2010)는 이민과 범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1985년과 2005년 사이 유럽 국가들의 외국인 거주자 비율과 범죄율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을 때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살인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외국인이 많을수록 범죄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의 위험성이 있다(김정규·신동준, 2010: 400). 왜냐하면 외국인 비율과 범죄율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은 분석단위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중 어느 집단이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Solivetti(2010)는 각 나라의 전체 범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스위스의 경우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20%에 불과하지만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살인의 60% 정도가 외국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Solivetti, 2010 김정규·신동준, 2010: 401 재인용).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주요 범죄의 30% 정도가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한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전반적인 범죄율도 안정적이면서 또한 외국인 거주자의 범죄도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가마다 외국인 범죄의 양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영국(England와 Wales)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2004년 이후에는 동유럽 8개국이 EU에 편입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일자리를 찾는 노동인구가 대거 유입되었다(Bell & Machin, 2010: 1-2). 따라서 두 시점에서 갑작스런 외국인 인구의 증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이 영국의 범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1990년대 후반에 급작스럽게 증가한 외국인은 난민들이었는데, 난민이 정착한 지역의 재산범죄율과 수감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폭력범죄의 발생률에는 변화가 없었다(Bell & Machin, 2010: 5). 두 번째로 2004년 이후 동유럽 국가 출신의 이민자수 증가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모두에 있어서 별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ll & Machin, 2010: 5-6). 난민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빈곤 때문에 재산범죄의 증가를 보였고, 동유럽 이민자들은 노동을 목적으로 미리 일자리를 찾아서 이민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산·폭력 범죄에서는 모두 영국인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Bell & Machin, 2010).

유럽 국가들은 EU 공동체로 묶여 있지만, 국가마다 사회, 경제, 문화, 종교적 특성이 다르고 또한 이주해오는 외국인들의 국적, 종교, 문화 등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그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민과 범죄와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학계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국내 노동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의 실태, 외국인의 범죄피해와 보호실태, 불법체류 외국인의 실태 등 기초조사 연구가 시작되었다(최인섭·최영신, 1994; 조병인, 1996; 조병인·박철현, 1998). 이후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국내 외국인 범죄 연구를 연구의 주제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법원, 법무부 등에서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 통계와 외국인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외국인 범죄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김정규·신동준, 2010; 신동일, 2010; 신동준, 2010; 임준태, 2010; 이훈동, 2011; 홍세영·이현, 2011; 차훈진·조용철, 2012; 최영신·강석진, 2012). 최영신·강석진(2012: 235)의 연구에 의하면 2001년 외국인 범죄자 검거인원은 국내 전체 범죄자 검거인원의 0.22% 정도 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전체 검거인원의 1.43%를 차지하여 약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2007년부터 2011년 기간 사이에 내국인 인구 10만 명당 검거인원지수와 외국인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항상 높다고 보고하였다. 2011년도의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하면 내국인은 인구 10만 명당 3,692명이 검거되었고, 외국인은 10만 명당 2,42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신·강석진, 2012: 236). 증가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 수와 더불어 외국인의 범죄 검거인원지수가 증가하였으나, 2011년 기준 여전히 내국인 수준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영신·강석진(2012)은 외국인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률은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2007년도 대비 2011년 5대 범죄 검거인원지수가 44% 증가하여서 2011년 외국인 5대 범죄 검거인원지수가 10만 명당 918명에 이르렀다고 한다(최영신·강석진, 2012: 237). 특히 살인, 강도, 마약, 폭처법 위반 범죄는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내국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고 폭력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 폭력범죄의 증가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외국인 범죄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자료가 국가 수준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외국인 개인적 차원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을 상대로 개인적 수준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범죄 가해·피해 조사와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진행되었다(김종오, 2009; 김종열·김창호·하정훈, 2013). 국내 외국인 범죄 통계가 외국인 노동

자를 별도의 항목으로 정하여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에 대한 분석도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 자료를 준용한 한계가 있다. 김종오(2009)는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 중에서 살인, 성폭행, 마약, 조직 폭력 범죄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건위주의 소개여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은 우리민족이면서 언어도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여수경, 2005). 또한 체류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외국인 범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외국인이 저지른 잔인한 살인사건이 대부분 중국 국적인 것을 감안하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국내 체류 조선족의 정착과정에서의 정체성 혼란, 그로 인한 갈등과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연구도 진행되었다(여수경, 2005; 박우, 2011; 임광순, 2015). 여수경(2005: 261)은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이 부여하는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한국 사람이 형성하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는 “가난한 중국 노동자” 내지는 ‘불법체류하는 중국 사람’과 같이 차별과 멸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한국 사람들은 조선족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보다 의사소통도 잘 되고 일도 더 잘 할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너네는 조선족이면서 왜 그러냐”는 식으로 오히려 다른 외국인보다 더 심하게 질타하는 것을 경험한다(여수경, 2005: 263). 이러한 차별은 조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모국이기 때문에 친척이 있는 고향이기 때문에 한국을 찾아서 왔는데, 차별과 멸시를 당할 때는 더 큰 배신감을 느낀다. 따라서 어떤 조선족 사람들은 자기를 조선족으로 부르는 것을 싫어하며 자기는 ‘중국인’이라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여수경, 2005: 264). 국적은 중국이면서 민족적으로 한국인인 조선족은 이중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임광순(2015)은 조선족 범죄의 양상을 공식통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조선족 이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문화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근 조선족 남성에 의하여 저질러진 수원과 시흥 여성 토막살인 사건을 조선족 집단의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선족의 국내이주는 한·중 수교 이후 급증하였는데,

초창기에는 친척 초청 방문이 주를 이루었다가 2001년 연수취업제, 2004년 특별고용 허가제, 2007년에는 방문취업제와 같은 정책을 통하여 조선족 이주자의 숫자가 폭증하였다(임광순, 2015: 360). 2001년에 115,159명이던 것이 2015년 현재 598,418명으로 증가한 것은 조선족에 대한 국내 체류 제도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족은 주로 재외동포법에 따라 F-4 비자를 발급받아 재외동포로서 체류자격을 얻어 한국에 체류하거나¹⁰⁾, H-2(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단순노무행위'만 가능한 것으로 체류할 수 있다. 문제는 H-2비자의 경우 3~5년간만 체류를 허용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기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많은 조선족 체류자들이 한국에 머물면서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이다(임광순, 2015: 362). 이에 한국 정부는 불법체류자 구제 정책을 통하여 합법화를 해주었으나, 매년 비자 만기기가 돌아올 때마다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 문제이다(임광순, 2015). 실제로 요식업체나 입주 가사도우미 같은 분야에는 조선족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자 만기로 그들이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 한국 고용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임광순, 2015: 366). 이처럼 조선족은 수적으로 다수를 이루고, 한국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선족으로 특화된 단순노무직을 개척하였고, 서울과 수도권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여 조선족만의 소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임광순(2015)은 다른 외국인 집단에 비하여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이 폭력범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주목하였다. 조선족은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세대의 이민이 많고 자녀를 둔 가정으로서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동시에 한국에서 '임시가족', '현지처'와 같은 형태로 본국에 가족이 있는 성인 남녀가 동거를 하면서 가정문제, 애인문제, 성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한다(임광순, 2015: 376-378). 경제적 문제와 가정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동거인 사이에 폭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다른 외국인 체류자에 비하여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족 박○○, 김○○의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는 모두 조선족 동거인 여성이었다고 한다(임광순, 2015: 378). 임광순(2015)은 이러한 조선족 사회의 경제적, 가부장적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폭력 범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외국인 밀집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가 있다.

10)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따라 단순노무행위가 금지된다

최영신·강석진(2012)의 연구는 외국인 거주율이 평균치 이상을 나타내는 37개 시군구 지역의 범죄통계자료와 사회지표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2동,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시흥시 정왕본동을 선택하여 범죄발생장소, 발생일시, 피의자죄명, 내·외국인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범죄발생 위치 및 빈도분석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 범죄 발생률은 내국인보다 아직 낮은 상태이지만, 5대 범죄의 발생률이 급속히 증가한다고 하였다(최영신·강석진, 2012: 98). 특히, 살인, 강도, 마약,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내국인을 앞지른다고 보고하였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범죄발생률은 낮지만, 오히려 피해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최영신·강석진, 2012: 93). 외국인의 밀집정도가 높을수록 내·외국인의 범죄 발생을 또한 높게 형성된다고 하였다(최영신·강석진, 2012: 124). 외국인의 밀집도가 높은 4개 행정동의 경우, 폭처법 위반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왔으며, 중국인이 많이 사는 구로구, 영등포구의 경우 도박범죄의 비율이 높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모여 사는 안산시 단원구의 경우 마약범죄의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조사대상 4개 행정동의 경우 외국인 5대 범죄 검거인원지수가 전체 외국인의 평균치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최영신·강석진, 2012: 153-156). 김병학 외(2013)의 연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 범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 현재 구로구에는 약 25,000명의 중국 국적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영등포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그 중 90% 정도가 조선족이다. 구로구의 환경적 특성은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고, 주점, 노래방, 여인숙 등의 유흥·숙박시설이 다수 밀집되어 있다(김병학 외, 2013: 351). 구로구의 범죄 특징을 분석한 결과 살인과 폭력범죄에 있어서 중국인 비밀집지역인 전국과 서울의 도시에 비하여 구로구에서 높은 발생율을 보였다(김병학 외, 2013: 365).

마지막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사회학적 맥락을 심도 있게 논한 연구들이 있다(김정규·신동준, 2010; 신동준, 2012; 김정규, 2015). 김정규·신동준(2010)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편견이 Bourdieu(1989)가 주장하는 '상징적 폭력'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상징적 폭력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들로 하여금 긴장을 유발하고 잠재적으로 폭력이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규(2015)는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상징적 폭력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일상생활에서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현재까지 외국인의 범죄가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사회가 외국인들에게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가하는 상징적 폭력이 잠재적으로 외국인들로 하여금 폭력행동으로 표출되도록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만들고, 외국인과 이민자 공동체의 활성화,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하였다.

제4절 폭력범죄의 용어 정의

폭력이란 협의적으로는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폭력을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가해행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폭력이라는 개념 속에는 실로 다양한 현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최인섭 외, 2003: 95).

우리나라 형법에는 ‘폭력’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폭력범죄’ 역시 형법에 규정된 범죄유형은 아니다. 통상 ‘폭력범죄’는 물리적, 심리적 폭력이 수반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박형민 외, 2010:25)¹¹⁾,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과 같이 심각한 폭력성을 나타내는 강력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¹²⁾.

11) 선행연구에서 폭력범죄는 “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및 재산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서 폭력행사를 수단으로 하는 일체의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김기두, 1975:5).

12)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박형민·황정인·탁중연, 2010)에서는 폭력범죄를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의 폭력범죄 중에서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90% 정도이다(표 3-16) 참조.

형사사법기관에서 폭력범죄라는 용어는 실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강력범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경찰청의 공식 범죄통계자료인 [범죄통계]에서는 폭력범죄를 강력범죄와 구분하여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¹³⁾.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강력범죄에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가 포함되고, 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등, 공갈, 손괴가 포함된다(경찰청, 2015).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의 공식 범죄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폭력범죄는 경찰청의 범죄유형 구분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폭력범죄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인들이 폭력범죄에 대하여 합의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 사이에 개념상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력범죄의 대표적인 하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폭행에 대한 가해, 피해 경험을 조사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경험을 비교하였다.

13) 대검찰청의 공식 범죄통계자료인 [범죄분석]에서는 해당 범죄유형을 '강력범죄(폭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경찰청 자료에서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강력범죄(흉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3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최영신

제3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여기에서는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을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본다. 1990년대 이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범죄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 10년 동안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국인범죄의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외국인범죄의 검거인원 비율 추이

연도	구분	전체 범죄	외국인범죄 검거인원	전년 대비 증가율(%)	외국인 검거인원 비율(%)
2004		1,968,183	9,103	100.0	0.5
2005		1,733,122	9,042	99.3	0.5
2006		1,719,075	12,657	140.0	0.7
2007		1,836,496	14,524	114.8	0.8
2008		2,063,737	20,623	142.0	1.0
2009		2,020,209	23,344	113.2	1.2
2010		1,784,953	22,543	96.6	1.3
2011		1,815,233	27,436	121.7	1.5
2012		1,723,815	22,914	83.5	1.3
2013		1,741,302	24,984	109.0	1.4
2014		1,712,435	28,456	113.9	1.7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 경찰통계 연보 해당연도, “외국인범죄” 참조

〈표 3-1〉을 보면, 2004년 경찰에 의해 검거된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은 9,103명으로서 전체 범죄의 0.5% 정도를 차지한다. 이후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은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05년, 2010년, 2012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2008년도에는 외국인 검거인원이 전체범죄의 1.0%를 넘어섰고, 2011년도에는 1.5%를 넘어섰다. 2012년과 2013년에는 2011년에 비하여 외국인 검거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4년에는 외국인이 전체범죄 검거인원의 1.7%(28,456명)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에 나타나는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의 증가는 무엇보다도 국내에 체류하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기인한다. 다음의 〈표 3-2〉에서는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의 증가 추세와 체류외국인 증가추세를 비교한 것인데, 외국인범죄의 증가추세에 특이할만한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표 3-2〉 외국인범죄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의 증가 추이(2004-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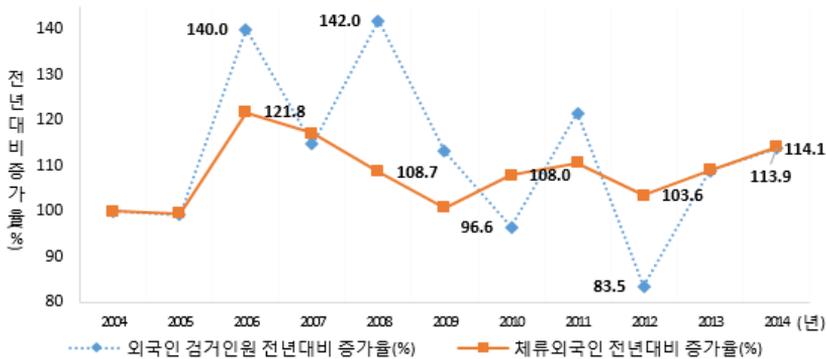
연도	구분	외국인		체류외국인**	
		검거인원*	전년 대비 증가율(%)	인원	전년 대비 증가율(%)
2004		9,103	100.0	750,873	100.0
2005		9,042	99.3	747,467	99.5
2006		12,657	140.0	910,149	121.8
2007		14,524	114.8	1,066,273	117.2
2008		20,623	142.0	1,158,866	108.7
2009		23,344	113.2	1,168,477	100.8
2010		22,543	96.6	1,261,415	108.0
2011		27,436	121.7	1,395,077	110.6
2012		22,914	83.5	1,445,103	103.6
2013		24,984	109.0	1,576,034	109.1
2014		28,456	113.9	1,797,618	114.1

* 검거인원: 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 경찰통계 연보 해당연도, "외국인범죄" 참조

** 체류외국인: 2014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참조

〈표 3-2〉에서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지난 11년 동안 외국인 범죄의 검거인원의 증가 추이와 체류외국인수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외국인범죄의 증가가 우려할만한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1〉은 외국인범죄의 증가추이와 체류외국인의 증가

추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외국인범죄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3-1] 외국인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 전년대비 증가율 비교(2004~2014)

외국인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체류외국인의 경우에는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10년 동안 체류외국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9년이 가장 낮아 100.8%를 나타내었고 가장 높은 증가율은 2006년에 121.8%이다. 최근 2013년과 2014년의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은 각각 109.1%, 114.1%로서 110% 전후에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교하여 외국인 검거인원은 그 변동폭이 높은 편이다. 외국인 검거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해는 2012년으로 83.5%를 나타냈으며, 외국인 검거인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8년으로 142.0%를 나타낸다. 외국인 검거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체류외국인에 비하여 매해 그 차이가 큰 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그림 3-1>에 잘 나타나 있다. 2004년 이후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해 그 차이가 많으면서 특히 2011년까지는 체류외국인수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 이후로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세와 비슷한 추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범죄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그 증가비율이 체류외국인의 증가비율을 앞질렀으나 2012년 이후에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율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수행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최영신·강석진, 2012)에서는 2010년까지의 외국인 범죄의 증가추세에 근거하여 외국인범죄의 증가속도가 체류외국인의 증가속도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범죄의 증가속도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런데 2014년까지의 공식 범죄통계자료를 추적 관찰해보면, 2012년 이후 외국인범죄의 증가속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림 3-1>에서와 같이 체류외국인의 증가속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증가가 지속되는 한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의 증가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의 증가비율이 체류외국인의 증가비율을 넘어서는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범죄의 증가 현상과 관련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영향 이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외국인범죄가 내국인범죄와 비교하여 범죄 발생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유형별 발생비율을 비교하였다. <표 3-3>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유형별 발생비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범죄발생인원을 범죄유형별로 합산하여 비교한 것이고, <표 3-4>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범죄유형별 발생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 3-3>은 2011년 이후 4년 동안 내국인과 외국인 검거인원을 범죄유형별로 합산한 것이다. 매년 범죄유형별 발생비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4년간 검거인원을 합산하여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분포의 전반적인 차이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검거인원은 전체범죄 검거인원의 1.5%(103,790명) 정도를 차지하며, 내국인은 98.5%(6,888,995명) 정도를 차지한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는 폭력범죄로서 31.6%(32,806명)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교통범죄가 21.9%(22,752명), 지능범죄가 10.6%(10,979명), 절도가 6.6%(6,828명), 강간·강제추행이 1.6%(1,659명), 강도가 0.5%(472명), 살인이 0.3%(340명)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외에 나머지 범죄는 26.9%(27,954명)이다.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을 내국인과 비교해보면 지능범죄, 교통범죄의 발생 비율은

낮으며, 상대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 내국인범죄의 경우 지능범죄와 교통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47.5%인데 비하여, 외국인범죄에서는 32.5%로 지능범죄와 교통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 낮고,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범죄에서는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 이들 범죄유형에서 외국인범죄는 40.6%인데 비하여 내국인범죄는 28.9%이다. 외국인범죄의 경우에 5대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12% 정도 높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내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낮은 상태이므로 지능범죄나 교통범죄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범죄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3-3〉 내·외국인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2011~2014합산)

범죄유형 \ 국적	합 계	내국인	외국인
합 계	6,992,785 (100.0)	6,888,995 (98.5)	103,790 (1.5)
살인	4,360 (0.1)	4,020 (0.1)	340 (0.3)
강도	12,883 (0.2)	12,411 (0.2)	472 (0.5)
강간, 강제추행	76,538 (1.1)	74,879 (1.1)	1,659 (1.6)
절도	414,127 (5.9)	407,299 (5.9)	6,828 (6.6)
폭력	1,520,512 (21.7)	1,487,706 (21.6)	32,806 (31.6)
지능범죄	1,199,766 (17.2)	1,188,787 (17.3)	10,979 (10.6)
교통범죄	2,106,308 (30.1)	2,083,556 (30.2)	22,752 (21.9)
기타 범죄	1,658,291 (23.7)	1,630,337 (23.7)	27,954 (26.9)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정보공개>경찰범죄통계 해당연도.

〈표 3-4〉는 2011년 이후 4년 동안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유형분포를 정리한 것으로서 지난 4년 동안 내국인과 외국인범죄 발생에서 범죄유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4년간의 추이이므로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데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4〉를 보면, 외국인범죄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전반적으로 범죄유형의 발생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국인과 비교하여 외국인은 매해 지능범죄와 교통범죄의 발생비율은 낮은 편이고,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범죄의 발생비율은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높은 편이다. 4년 동안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유형별 발생분포에서 특징적인 점은 외국인의 경우에 강도의 발생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강간·강제추행, 교통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강도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외국인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6%(153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0.3%(74명)로 감소하였으며, 강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2011년에 1.1%(312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8%(500명)로 증가하였고,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2011년에 19.6%(5,368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24.4%(6,942명)로 증가하였다.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증가하는 추세인데, 내국인에 비하여 외국인의 교통범죄 증가율이 현저하게 높다.

〈표 3-4〉 내·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2011-2014)

범죄유형	연도 2011		2012		2013		2014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합 계	1,787,797 (100.0)	7,436 (100.0)	1,700,901 (100.0)	22,914 (100.0)	1,716,318 (100.0)	24,984 (100.0)	1,683,979 (100.0)	28,456 (100.0)
살인	1,182 (0.1)	103 (0.4)	972 (0.1)	84 (0.4)	924 (0.1)	73 (0.3)	942 (0.1)	80 (0.3)
강도	4,737 (0.3)	153 (0.6)	3,181 (0.2)	141 (0.6)	2,489 (0.1)	104 (0.4)	2,004 (0.1)	74 (0.3)
강간, 강제추행	17,340 (1.0)	312 (1.1)	17,664 (1.0)	348 (1.5)	19,876 (1.2)	499 (2.0)	19,999 (1.2)	500 (1.8)
절도	109,633 (6.1)	1,757 (6.4)	102,880 (6.0)	1,554 (6.8)	100,915 (5.9)	1,743 (7.0)	93,871 (5.6)	1,774 (6.2)
폭력	384,288 (21.5)	7,754 (28.3)	392,209 (23.1)	8,073 (35.2)	361,575 (21.1)	8,338 (33.4)	349,634 (20.8)	8,641 (30.4)
지능범죄	325,838 (18.2)	3,561 (13.0)	278,012 (16.3)	2,231 (9.7)	301,726 (17.6)	2,299 (9.2)	283,211 (16.8)	2,888 (10.1)
교통범죄	518,982 (29.0)	5,368 (19.6)	507,403 (29.8)	4,673 (20.4)	530,987 (30.9)	5,769 (23.1)	526,184 (31.2)	6,942 (24.4)
기타범죄	425,797 (23.8)	8,428 (30.7)	398,580 (23.4)	5,810 (25.4)	397,826 (23.2)	6,159 (24.7)	408,134 (24.2)	7,557 (26.6)

*살인 :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강간·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폭력범죄 :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공갈, 손괴

*지능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정보공개)경찰범죄통계 해당연도.

이외에 외국인범죄에서 살인은 0.3~0.4% 정도를 차지하며, 절도는 6~7% 수준에서 변동하고, 폭력범죄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로서 30% 전후에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추이는 장기간의 자료가 축적되면 보다 정확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4년간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면, 외국인 범죄는 폭력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도의 비율은 낮아지고, 성범죄와 교통범죄의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경찰의 [범죄통계]에서는 외국인 국적을 16개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대만, 필리핀, 스리랑카, 일본, 러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이 포함된다¹⁴⁾. 경찰 범죄통계의 국적 분류에는 최근 국내 체류외국인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외국인 국적이 제외되어 있는데, 캄보디아, 네팔 국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캄보디아, 네팔 국적의 외국인인 2015년 12월 기준 체류외국인이 3만명이 넘는 상태이지만 국적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상대적으로 체류외국인수가 적은 방글라데시, 러시아,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국적별로 분류되어 있어 범죄발생률을 계산할 수 있다. 공식 범죄통계에서 범죄자의 국적이 분류되어 있지 않은 캄보디아, 네팔 국적의 외국인은 이들의 범죄발생 정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검거인원은 경찰범죄통계에 국적별 분류가 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순위를 정한 것이므로 <표 3-5>에 제시된 외국인 국적별 순위가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의 국적별 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체류외국인수가 많은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 국적별로 검거인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에 포함된 상태이다.

<표 3-5>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의 국적별로 검거인원이 많은 순서로 정리한 것으로서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5>에서 외국인

14) 경찰청(2015). 2014범죄통계. “범죄자 국적”(426-427면). 참조.

국적은 2014년 검거인원이 많은 순서에 따라 배열했는데, 2014년도 검거인원의 비율과 4년 동안의 외국인 검거인원을 합산한 수치의 국적별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 국적별 검거인원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3-5〉 외국인범죄 국적별 검거인원 분포(2011~2014)

국적 \ 연도	2011	2012	2013	2014	합계 (2011~2014)
합 계	27,436 (100.0)	22,914 (100.0)	24,984 (100.0)	28,456 (100.0)	103,790 (100.0)
중 국	16,267 (59.3)	13,152 (57.4)	14,557 (58.3)	16,832 (59.2)	60,808 (58.6)
베트남	2,438 (8.9)	1,819 (7.9)	1,666 (6.7)	1,740 (6.1)	7,663 (7.4)
미 국	1,751 (6.4)	1,668 (7.3)	1,799 (7.2)	1,779 (6.3)	6,997 (6.7)
태 국	932 (3.4)	576 (2.5)	597 (2.4)	1,249 (4.4)	3,354 (3.2)
몽 골	1,470 (5.4)	1,381 (6.0)	1,274 (5.1)	1,085 (3.8)	5,210 (5.0)
우즈베키스탄	710 (2.6)	710 (3.1)	993 (4.0)	1,070 (3.8)	3,483 (3.4)
대 만	515 (1.9)	427 (1.9)	496 (2.0)	579 (2.0)	2,017 (1.9)
필리핀	542 (2.0)	270 (1.2)	364 (1.5)	429 (1.5)	1,605 (1.5)
러시아	245 (0.9)	270 (1.2)	260 (1.0)	374 (1.3)	1,149 (1.1)
스리랑카	459 (1.7)	354 (1.5)	351 (1.4)	365 (1.3)	1,529 (1.5)
캐나다	271 (1.0)	323 (1.4)	292 (1.2)	306 (1.1)	1,192 (1.1)
인도네시아	179 (0.7)	189 (0.8)	186 (0.7)	220 (0.8)	774 (0.7)
파키스탄	244 (0.9)	198 (0.9)	226 (0.9)	219 (0.8)	887 (0.9)
일 본	125 (0.5)	171 (0.7)	169 (0.7)	181 (0.6)	646 (0.6)
방글라데시	123 (0.4)	115 (0.5)	128 (0.5)	106 (0.4)	472 (0.5)
키르기스스탄	98 (0.4)	84 (0.4)	79 (0.3)	78 (0.3)	339 (0.3)
기타 국적	1,067 (3.9)	1,207 (5.3)	1,547 (6.2)	1,844 (6.5)	5,665 (5.5)

지난 4년 동안의 검거인원을 합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검거인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으로 전체 외국인 검거인원의 59%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이 7.4%, 미국이 6.7%, 몽골이 5.0%, 우즈베키스탄이 3.4%, 태국이 3.2%, 대만이 1.9%, 필리핀이 1.5%(1,605명), 스리랑카가 1.5%(1,529명), 캐나다가 1.1%(1,192명), 러시아가 1.1%(1,149명)이고, 나머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은 각각 0.9%, 0.7%, 0.6%, 0.5%, 0.3%로서 전체 외국인 검거인원의 1.0%보다 낮은 수치를 차지한다.

〈표 3-5〉에서 전체 외국인 검거인원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국적은 중국, 베트남, 미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으로 모두 6개국이다. 이들 국적 외국인의 지난 4년 동안 검거인원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몇 가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57~59% 사이에서 큰 변동을 나타내지 않으며, 베트남과 몽골의 경우에는 검거인원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8.9%에서 2014년에는 6.1%로 감소하고 있으며, 몽골의 경우에도 2011년에 5.4%에서 2014년에는 3.8%로 감소하고 있다. 이외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최근으로 오면서 검거인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국적의 체류외국인수의 증가로 인하여 검거인원이 증가한 것인지, 혹은 범죄발생비율이 증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장의 〈표 3-12〉에서 외국인의 국적별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체류외국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검거인원의 절대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거인원지수도 2013년, 2014년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도 장기적 관점에서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국의 경우에도 2014년에 검거인원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일시적인 현상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3-6〉은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적별로 범죄유형의 백분율을 비교해보았다. 외국인 전체 평균에서 보이는 범죄유형의 백분율과 각 국적별 범죄유형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각 국적별로 발생율이 높은 범죄유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표 3-6〉 외국인범죄 국적별 범죄유형별 분포(2011~2014합산)

범죄유형 국적	합 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지능 범죄	교통 범죄	기타
합 계	103,790 (100.0)	340 (0.3)	472 (0.5)	1,659 (1.6)	6,828 (6.6)	32,806 (31.6)	10,979 (10.6)	22,752 (21.9)	27,954 (26.9)
중국	60,808 (100.0)	215 (0.4)	173 (0.3)	560 (0.9)	2,879 (4.7)	21,725 (35.7)	6,585 (10.8)	9,974 (16.4)	18,697 (30.7)
베트남	7,663 (100.0)	51 (0.7)	85 (1.1)	92 (1.2)	745 (9.7)	1,883 (24.6)	1,092 (14.3)	2,201 (28.7)	1,514 (19.8)
미국	6,997 (100.0)	2 (0.0)	40 (0.6)	134 (1.9)	419 (6.0)	1,892 (27.0)	921 (13.2)	2,259 (32.3)	1,330 (19.0)
몽골	5,210 (100.0)	11 (0.2)	42 (0.8)	128 (2.5)	889 (17.1)	1,781 (34.2)	228 (4.4)	1,588 (30.5)	543 (10.4)
우즈베키스탄	3,483 (100.0)	8 (0.2)	39 (1.1)	114 (3.3)	438 (12.6)	847 (24.3)	160 (4.6)	1,429 (41.0)	448 (12.9)
태국	3,354 (100.0)	9 (0.3)	8 (0.2)	16 (0.5)	83 (2.5)	436 (13.0)	131 (3.9)	1,058 (31.5)	1,613 (48.1)
대만	2,017 (100.0)	3 (0.1)	5 (0.2)	33 (1.6)	150 (7.4)	511 (25.3)	458 (22.7)	369 (18.3)	488 (24.2)
필리핀	1,605 (100.0)	8 (0.5)	7 (0.4)	24 (1.5)	106 (6.6)	292 (18.2)	84 (5.2)	419 (26.1)	665 (41.4)
스리랑카	1,529 (100.0)	9 (0.6)	9 (0.6)	74 (4.8)	104 (6.8)	448 (29.3)	105 (6.9)	614 (40.2)	166 (10.9)
캐나다	1,192 (100.0)	2 (0.2)	1 (0.1)	24 (2.0)	65 (5.5)	347 (29.1)	156 (13.1)	332 (27.9)	265 (22.2)
러시아	1,149 (100.0)	3 (0.3)	21 (1.8)	27 (2.3)	218 (19.0)	275 (23.9)	85 (7.4)	213 (18.5)	307 (26.7)
파키스탄	887 (100.0)	- (0.0)	1 (0.1)	83 (9.4)	45 (5.1)	200 (22.5)	130 (14.7)	215 (24.2)	213 (24.0)
인도네시아	774 (100.0)	- (0.0)	8 (1.0)	11 (1.4)	51 (6.6)	96 (12.4)	47 (6.1)	345 (44.6)	216 (27.9)
일본	646 (100.0)	1 (0.2)	- (0.0)	24 (3.7)	38 (5.9)	136 (21.1)	107 (16.6)	143 (22.1)	197 (30.5)
방글라데시	472 (100.0)	3 (0.6)	- (0.0)	52 (11.0)	24 (5.1)	167 (35.4)	48 (10.2)	85 (18.0)	93 (19.7)
키르기스스탄	339 (100.0)	- (0.0)	- (0.0)	6 (1.8)	25 (7.4)	60 (17.7)	20 (5.9)	146 (43.1)	82 (24.2)
기타 국적	5,665 (100.0)	15 (0.3)	33 (0.6)	257 (4.5)	549 (9.7)	1,710 (30.2)	622 (11.0)	1,362 (24.0)	1,117 (19.7)

중국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체 외국인범죄의 6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인 전체 범죄유형의 분포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인은 전체 외국인의 범죄유형분포와 비교하여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교통범죄, 기타 범죄의 비율은 낮으며, 상대적으로 폭력범죄의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비율이 24.6%로서 전체 외국인 평균치인 31.6%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절도(9.7%), 지능범죄(14.3%)와 교통범죄(28.7%)의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교통범죄의 비율이 32.3%로서 전체 외국인 평균치인 21.9%보다 현저하게 높다. 몽골의 경우에는 절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17.1%로서 전체 외국인 평균치인 6.6%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우즈베키스탄은 교통범죄가 41.0%로 높게 나타난다. 태국의 경우에는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0%로서 매우 낮은 비율이며, 상대적으로 교통범죄와 기타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대만의 경우에는 지능범죄의 비율이 22.7%로서 전체 평균치보다 10% 이상 높고, 필리핀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비율이 18.2%로 낮으며, 기타범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외에도 스리랑카와 캐나다는 교통범죄의 비율이 각각 40.2%, 27.9%로 높은 편이고, 러시아는 절도범죄(19.0%)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강간·강제추행이 높은 편이고, 인도네시아는 폭력범죄의 비율(12.4%)이 낮고 교통범죄의 비율(44.6%)이 높고, 키르기스스탄은 폭력범죄의 비율(17.7%)은 낮고 교통범죄의 비율(43.1%)은 높은 편이다.

요컨대, 외국인의 국적별 범죄유형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발하는 범죄유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발생비율이 높고, 베트남, 몽골, 러시아의 경우에는 절도범죄의 비율이 높으며, 대만의 경우에는 지능범죄의 비율이 높으며, 베트남,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비율은 낮으면서 교통범죄의 비율은 높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교통범죄의 발생비율이 높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범죄의 발생비율이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적에 따라서 범죄유형의 발생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국적별로 다발하는 범죄유형이 다르므로 외국인범죄의 억제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국적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및 억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 구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범죄발생률에서 성별 구성과 연령별 구성 정도는 범죄발생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통상 성별 요인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범죄발생률이 높으며, 연령 요인에서는 성인장년층이 청소년이나 노인 연령층에 비하여 범죄발생률이 높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 구성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집단의 성별, 연령별 구성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표 3-7>과 <표 3-8>은 각각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성별 분포와 연령별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내국인은 주민등록인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외국인은 체류외국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3-7>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 동안 내국인과 외국인의 성별 구성을 비교해보면, 내국인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성별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체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남자가 55-56%, 여자가 45~44% 정도로 남자의 비율이 여자에 비하여 5% 정도 높은 편이다. 지난 4년 동안 내국인과 체류외국인 모두 성별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일정한 분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7〉 내·외국인 인구의 성별 분포(2011-2014)

연도		성별	합계	남	여
2014	내국인		51,327,916 (100.0)	25,669,296 (50.0)	25,658,620 (50.0)
	체류외국인		1,797,618 (100.0)	994,214 (55.3)	803,404 (44.7)
2013	내국인		51,141,463 (100.0)	25,588,336 (50.0)	25,553,127 (50.0)
	체류외국인		1,576,034 (100.0)	870,176 (55.2)	705,858 (44.8)
2012	내국인		50,948,272 (100.0)	25,504,060 (50.1)	25,444,212 (49.9)
	체류외국인		1,445,103 (100.0)	797,068 (55.2)	648,035 (44.8)
2011	내국인		50,734,284 (100.0)	25,406,934 (50.1)	25,327,350 (49.9)
	체류외국인		1,395,077 (100.0)	779,746 (55.9)	615,331 (44.1)

출처: 외국인(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해당연도), 내국인(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 참조

〈표 3-8〉에서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연령 구성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비교하여 19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20세 이상 5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체류외국인의 경우에 2011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는 19세 이하와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20세 이상 59세까지의 인구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2014년을 기준으로 내국인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19세 이하가 20.6%, 20-29세가 12.9%, 30-39세가 15.2%, 40-49세가 17.4%, 50-59세가 16.0%, 60세 이상이 17.8%를 차지하는 반면, 체류외국인의 경우에는 19세 이하가 7.5%, 20-29세가 35.49%, 30-39세가 30.1%, 40-49세가 22.0%, 50-59세가 18.6%, 60세 이상은 10.78%이다. 내국인의 경우에 19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38.4%인데 비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는 18.2%에 불과하다. 체류외국인은 20세 이상 59세까지의 인구 비율이 내국인보다 20% 이상이 높다.

〈표 3-8〉 내·외국인 인구의 연령별 분포(2011-2014)

연령		합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도								
2014	내국인	51,327,916 (100.0)	10,580,278 (20.6)	6,642,044 (12.9)	7,811,847 (15.2)	8,930,216 (17.4)	8,216,161 (16.0)	9,147,370 (17.8)
	체류 외국인	1,797,618 (100.0)	108,854 (7.5)	511,924 (35.4)	435,446 (30.1)	318,182 (22.0)	268,421 (18.6)	154,791 (10.7)
2013	내국인	51,141,463 (100.0)	10,853,649 (21.2)	6,589,529 (12.9)	8,015,414 (15.7)	8,919,961 (17.4)	8,025,256 (15.7)	8,737,654 (17.1)
	체류 외국인	1,576,034 (100.0)	91,888 (5.8)	466,629 (29.6)	377,626 (24.0)	287,556 (18.2)	224,379 (14.2)	127,956 (8.1)
2012	내국인	50,948,272 (100.0)	11,115,990 (21.8)	6,626,948 (13.0)	8,168,943 (16.0)	8,836,158 (17.3)	7,791,570 (15.3)	8,408,663 (16.5)
	체류 외국인	1,445,103 (100.0)	83,371 (5.8)	439,423 (30.4)	342,602 (23.7)	273,211 (18.9)	200,826 (13.9)	105,670 (7.3)
2011	내국인	50,734,284 (100.0)	11,356,974 (22.4)	6,727,416 (13.3)	8,254,786 (16.3)	8,846,683 (17.4)	7,528,146 (14.8)	8,020,279 (15.8)
	체류 외국인	1,395,077 (100.0)	82,388 (5.9)	407,400 (29.2)	337,231 (24.2)	281,713 (20.2)	196,064 (14.1)	90,281 (6.5)

출처: 외국인(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해당연도), 내국인(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 참조

요컨대, 〈표 3-7〉과 〈표 3-8〉를 종합해보면, 체류외국인은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5% 정도 높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인구는 낮으면서 20세 이상 59세까지의 인구 비율은 20% 정도 높다. 즉 상대적으로 범죄발생률이 높은 남성 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연령 구성에서도 범죄발생률이 높은 성인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수와 체류외국인수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인구 구성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내 거주 외국인수’를 추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체류외국인’을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의 ‘15세이상인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계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표 3-9〉 한국인 '15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분포

(단위: 천명)

연령 \ 연도	2014	2013	2012	2011
합 계	42,513 (100.0)	42,096 (100.0)	41,582 (100.0)	41,052 (100.0)
15 - 19세	3,187 (7.5)	3,263 (7.8)	3,298 (7.9)	3,348 (8.2)
20 - 29세	6,315 (14.9)	6,285 (14.9)	6,219 (15.0)	6,241 (15.2)
30 - 39세	7,729 (18.2)	7,838 (18.6)	7,912 (19.0)	8,018 (19.5)
40 - 49세	8,453 (19.9)	8,469 (20.1)	8,452 (20.3)	8,432 (20.5)
50 - 59세	7,874 (18.5)	7,666 (18.2)	7,411 (17.8)	7,100 (17.3)
60세 이상	8,954 (21.1)	8,575 (20.4)	8,290 (19.9)	7,913 (19.3)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

〈표 3-9〉는 한국인의 '15세이상인구'의 연령분포를 정리한 것인데, 내국인의 15세 이상 인구에서는 60세 이상의 비율이 19~21%이므로 체류외국인의 연령분포와 비교하여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10% 이상 높다. 즉, 체류외국인의 인구구성을 내국인의 15세 이상 인구의 인구구성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도 체류외국인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10% 정도 낮고 20세-59세의 인구 비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 수치를 기준으로 범죄발생률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범죄발생률이 높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불리하다¹⁵⁾.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계산하는 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 3-10〉는 체류외국인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와 비교할 수 있도록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계산한 것이다. 〈표 3-10〉에서

15) 2014년도 경찰청 [범죄통계에 나타난 전체범죄 검거인원의 성별 분포는 남자는 81.5% (1,396,428명)이고 여자는 18.5%(316,007명)이고, 연령별 분포는 18세 이하가 4.5%(77,280명), 19세-60세가 86.7%(1,482,199명), 61세 이상이 8.8%(150,902명)이다(경찰청(2015). 2014범죄통계. 34-35면). 주민등록인구와 전체범죄 검거인원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남성의 범좌율이 여성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19세-60세 범죄자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체류외국인에는 불법체류자를 포함시켰다. 외국인 관련 공식통계자료인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제시된 체류외국인수에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는 체류외국인수를 파악하고자 하므로 공식자료의 체류외국인에 불법체류자를 합산하여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층과 노인층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체류외국인의 연령 구성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을 내국인의 ‘15세이상인구’와 동일한 인구구성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계산하였다.

〈표 3-10〉 체류외국인의 연령구성을 고려한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2011-2014)

연도 구분	2014		2013		2012		2011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 51,327,916	15세 이상 인구 42,513,000	주민등록 인구 51,141,463	15세 이상 인구 42,096,000	주민등록 인구 50,948,272	15세 이상 인구 41,582,000	주민등록 인구 50,734,284
외국인	거주 외국인 추정치 2,422,415	체류외국인 (불법체류자 포함) 2,006,396	거주 외국인 추정치 2,137,139	체류외국인 (불법체류자 포함) 1,759,140	거주 외국인 추정치 1,988,525	체류외국인 (불법체류자 포함) 1,622,957	거주 외국인 추정치 1,931,463	체류외국인 (불법체류자 포함) 1,562,857

〈표 3-10〉에서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은 장기체류자와 단기체류자, 불법체류자를 합산한 수치이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4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보고된 체류외국인은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를 포함하여 1,797,618명이고, 여기에 2014년도 불법체류자(208,778명)를 합산하면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이 2,006,396명이다¹⁶⁾. 외국인의 경우에 청소년과 노인층의 인구 비율이 낮으므로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2,006,396명을 내국인의 ‘15세 이상 인구’에 해당하는 수치로 가정하고,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와 같은 비례로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는 외국인의 인구구성이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 구성과 비슷하도록 보정한 값이 된다.¹⁷⁾ 즉, 2014년도에 실제

16) 〈부록2〉 체류외국인(불법체류 포함) 국적별 분포(2011-2014) 참조
 17) 물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계산방식에도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의 연령구성은 ‘15세 이상 인구’의 연령 구성과 비교하여 범죄발생률이 낮은 노인층의 비율이 10% 정도 적고 범죄발생률이 높은 장년층의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2,006,396명이지만, 내국인과 비슷한 연령 구성을 고려한다면, 국내에 외국인이 2,422,415명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 구성상의 불균형을 일부 조정하여 범죄발생률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추정치 계산과정에는 외국인의 성별 분포에서 남성의 비율이 내국인에 비하여 5% 정도 높은 점, 그리고 외국인의 연령별 분포에서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10% 정도 낮은 점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의 과정을 거쳐 추정된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기준으로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은 내국인에 비하여 높게 계산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가. 내·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지수 비교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내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하고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 인구 추정치’를 사용하였다¹⁸⁾. 이 수치를 기준으로 인구10만명당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3-11>과 같다.

<표 3-11>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을 각 범죄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체 범죄에서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외국인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18)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율을 비교하고자 시도한 김정규·신동준(2010)은 체류외국인수를 기준으로 외국인의 범죄율을 계산하였고, 최영신·강석진(2012)은 등록외국인수를 기준으로 외국인의 범죄율을 계산하였다. 등록외국인을 기준으로 외국인 범죄율을 계산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체류외국인수를 기준으로 외국인 인구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체류외국인에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인의 인구 구성상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인구를 등록외국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 등록외국인수에는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거소신고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거소신고자는 국적별로 그 숫자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국적별 국내 거주 외국인수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자료로서 등록외국인수는 적절하지 않은 자료이다. 이외에도 등록외국인수를 기준으로 거주 외국인수를 계산할 때에는 불법체류자와 단기체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90일 이하 동안 국내에 체류하지만, 단기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단기체류자수 만큼의 외국인이 항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2011년도에 내국인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은 3,524명이고, 외국인은 1,420명으로 한국인은 외국인보다 2.5배 정도 많다. 2012년에는 내국인의 10만명당 검거인원이 3,338명이고, 외국인은 1,152명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외국인보다 2.9배 정도 높다. 2013년과 2014년에도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외국인보다 각각 2.9배, 2.8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표 3-11〉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기준)

범죄유형	2011		2012		2013		2014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체 범죄	3,524	1,420	3,338	1,152	3,356	1,169	3,281	1,175
살인	2.3	5.3	1.9	4.2	1.8	3.4	1.8	3.3
(기수)	0.8	1.1	0.8	1.2	0.7	0.8	0.8	1.1
(미수)	1.5	4.2	1.1	3.1	1.1	2.6	1.0	2.2
강도	9.3	7.9	6.2	7.1	4.9	4.9	3.9	3.1
강간, 강제추행	34	16	35	18	39	23	39	21
절도	216	91	202	78	197	82	183	73
폭력	757	401	770	406	707	390	681	357
지능범죄	642	184	546	112	590	108	552	119
교통범죄	1,023	278	996	235	1,038	270	1,025	287
기타 범죄	839	436	782	292	778	288	795	312

*살인 :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강간,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폭력범죄 :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공갈, 손괴

*지능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2011년도에 1,42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2012년에는 1,152로 낮아졌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169과 1,175로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앞의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외국인범죄는 2012년 이후 증가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다.

각 범죄유형별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외국인은 살인과 강도를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인원지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외국인의 지능범죄, 교통범죄의 검거인원지수는 매우 낮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능범죄는 내국인의 22% 수준이고, 교통범죄는 28% 수준이다. 나머지 범죄유형에서도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강간·강제추행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54%, 폭력범죄는 내국인의 53%, 절도는 내국인의 40%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살인과 강도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살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검거인원지수가 높으며, 강도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약간 낮은 정도이다. 살인 범죄의 경우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매해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내국인보다 월등히 높았다. 살인 기수와 살인 미수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최근으로 올수록 살인범죄의 외국인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도 살인범죄의 외국인 검거인원지수는 5.3명이었으나 이후 매해 낮아져서 2014년에는 3.3명으로 떨어졌다.

강도범죄의 경우에도 다른 범죄유형에 비하여 외국인의 범죄율은 높은 편이다. 2011년도에 외국인 강도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7.9명으로 내국인의 85% 수준을 나타내었고, 2012년도에는 7.1명으로 내국인보다 검거인원지수가 높았으며, 2013년도에는 내국인과 비슷하였고, 2014년도에는 내국인의 80% 정도를 차지하였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살인범죄와 강도범죄의 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요컨대, 범죄유형별로 내국인과 외국인범죄의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범죄유형에서 내국인의 범죄발생률은 외국인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 특히 지능범죄와 교통범죄의 발생률은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3-4배 이상 높다. 다만 살인범죄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이 내국인을 앞지르고 있으며, 강도범죄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비슷한 정도의 범죄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범죄에서 다른 범죄유형과 다르게 살인범죄와 강도범죄가 다발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나. 내·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표 3-12〉는 내·외국인 국적별로 전체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¹⁹⁾를 2014년의 국적별 수치를 기준으로 높은 순서로 정리한 것이다. 2014년도 검거인원지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전체범죄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1,175로 내국인 3,281의 36% 정도 수준이고,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높은 외국인의 국적은 몽골로 나타난다. 몽골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2,811로서 외국인 평균치에 비하여 2배 이상 높다.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가 1,987, 키르기스스탄이 1,965, 우즈베키스탄이 1,828, 대만이 1,497, 중국이 1,439, 파키스탄이 1,276으로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외에 미국, 캐나다,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일본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검거인원지수를 보이고, 위의 <표 3-12>에 제시되지 않은 국적의 외국인인 기타의 경우에도 검거인원지수는 721로 낮은 편이다.

<표 3-12> 내·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국적	2011		2012		2013		2014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내국인	1,787,797	3,524	1,700,901	3,338	1,716,318	3,356	1,683,979	3,281
외국인 평균	27,436	1,420	22,914	1,152	24,984	1,169	28,456	1,175
몽골	1,470	3,105	1,381	3,207	1,274	3,285	1,085	2,811
러시아	245	1,705	270	1,783	260	1,548	374	1,987
키르기스스탄	98	2,342	84	2,003	79	1,841	78	1,965
우즈베키스탄	710	1,652	710	1,474	993	1,880	1,070	1,828
대만	515	1,531	427	1,114	496	1,428	579	1,497
중국	16,267	1,767	13,152	1,397	14,557	1,414	16,832	1,439
파키스탄	244	1,440	198	1,220	226	1,368	219	1,276
미국	1,751	1,015	1,668	1,017	1,799	1,074	1,779	1,055
캐나다	271	973	323	1,108	292	989	306	1,011
스리랑카	459	1,537	354	1,116	351	1,042	365	998
베트남	2,438	1,460	1,819	1,017	1,666	931	1,740	919
태국	932	1,263	576	740	597	649	1,249	746
필리핀	542	738	270	395	364	495	429	536
방글라데시	123	540	115	515	128	581	106	463
인도네시아	179	340	189	350	186	317	220	337
일본	125	170	171	240	169	244	181	299
기타 국적	1,067	675	1,207	654	1,547	707	1,844	721

* 국적별 외국인 인구는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기준으로 함.

19)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계산에서 내국인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외국인의국적별 인구는 체류외국인의 연령 분포를 고려하여 추정된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부록 3> 참조)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외국인의 국적별 전체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살펴보면, 몽골의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높으며,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북방에 위치한 국적 외국인들의 검거인원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검거인원지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의 국적별 비교에서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본이고, 그 다음으로 검거인원지수가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이다. 인도네시아의 인구 대비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은 검거인원지수를 나타내는 몽골의 경우에도 그 수치는 내국인에 비하여 낮은 상태이며, 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의 경우에도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절반 수준 이하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대부분 국적의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범죄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으며,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검거인원지수가 1,000보다 낮아서 범죄발생률이 내국인의 1/3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낮은 일본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1/10보다 낮은 상태이다²⁰⁾.

제3절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발생률

1.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다음의 <표 3-13>은 외국인의 전체범죄 중에서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폭력범죄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20) 국내 체류 일본인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자가 75%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인구구성의 특성은 국내 체류 일본인의 범죄발생율을 낮게 나타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3-13〉 내·외국인 폭력범죄 검거인원(2011-2014)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합 계	392,042 (100.0)	400,282 (100.0)	369,913 (100.0)	358,275 (100.0)
내국인	384,288 (98.0)	392,209 (98.0)	361,575 (97.7)	349,634 (97.6)
외국인	7,754 (2.0)	8,073 (2.0)	8,338 (2.3)	8,641 (2.4)

〈표 3-13〉을 보면, 외국인이 전체 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0%이고, 2013년에는 2.3%, 2014년에는 2.4%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이 전체 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범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2. 내·외국인의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 비교

외국인의 폭력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폭력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아야 한다. 다음의 〈표 3-14〉는 내·외국인의 국적별로 폭력범죄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계산한 것이다. 국적별 외국인 인구는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사용하였다.

〈표 3-14〉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폭력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외국인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난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2012년도에 폭력범죄의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높았고, 2013년, 2014년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14〉 내·외국인의 국적별 인구10만명당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 비교

국적	2011		2012		2013		2014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내국인	384,288	757	392,209	770	361,575	707	349,634	681
외국인 평균	7,754	401	8,073	406	8,338	390	8,641	357
몽골	452	955	536	1,245	435	1,122	358	927
키르기스스탄	6	143	17	405	16	373	21	529
중국	4,994	542	5,275	560	5,553	539	5,903	505
러시아	49	341	70	462	69	411	87	462
우즈베키스탄	197	458	163	338	243	460	244	417
대만	120	357	137	357	125	360	129	334
스리랑카	142	475	108	340	90	267	108	295
캐나다	74	266	103	353	88	298	82	271
미국	494	286	475	290	470	281	453	269
파키스탄	57	336	66	407	37	224	40	233
베트남	522	313	477	267	449	251	435	230
방글라데시	54	237	37	166	46	209	30	131
필리핀	96	131	69	101	66	90	61	76
태국	127	172	113	145	94	102	102	61
일본	26	35	32	45	41	59	37	61
인도네시아	30	57	25	46	18	31	23	35
기타 국적	314	199	370	201	498	228	528	206

* 국적별 외국인 인구는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기준으로 함.

2011년도 내국인의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757이고, 외국인은 401로 외국인은 내국인의 53% 정도로 폭력범죄가 발생했으며, 2012년도에도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770이고, 외국인은 406으로서 외국인의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53% 정도 수준이다. 2013년과 2014년에도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각각 내국인의 55%, 53%이다. 지난 4년 동안 외국인 폭력범죄의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과 비교하여 53%~55%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4〉에서 외국인의 국적별로 폭력범죄의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몽골 국적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높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몽골의 경우에는 검거인원지수가 927로서 내국인의 681보다 136% 정도 높게 나타난다. 나머지 국적의 외국인에서는 내국인의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에 비하여 모두 낮은 값을 나타낸다.

몽골 다음으로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높은 나라는 키르기스스탄으로 529를 나타냈는데, 해당 국적의 검거인원은 21명에 불과하고 매해 변동폭이 큰 편이라 이후 변화양상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검거인원지수가 505로서 외국인들 중에서 지수가 높은 편에 속하고,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462와 417로서 평균치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이외의 대만, 스리랑카, 캐나다, 미국,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모두 외국인 전체 평균값보다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낮으며, 특히 필리핀,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100이하로서 상당히 낮은 값을 보인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내국인의 11% 정도이고, 태국과 일본은 내국인의 9%, 인도네시아는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외국인의 국적별로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몽골의 경우만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를 앞지르고 있으며, 나머지 모든 국적의 외국인은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낮게 나타난다. 키르기스스탄,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은 외국인 전체의 평균값보다 검거인원지수가 높게 나타나 외국인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폭력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동남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나라(스리랑카,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와 선진국(캐나다, 미국, 일본)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현저하게 낮아서 폭력범죄 발생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폭력범죄 발생률이 내국인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폭력범죄는 전체 외국인의 체류 증가로 인해 국내 전체 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몽골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은 폭력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의 북방에 위치한 나라의 경우에 외국인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폭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편이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속한 외국인 경우에는 폭력범죄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3.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경찰의 공식 범죄통계에 따르면,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에는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 손괴,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이 포함된다. <표 3-15>에서는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 중에서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범죄는 범죄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각각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묶어서 제시하였다.

<표 3-15>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별 검거인원

폭력범죄	연도		2011		2012		2013		2014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합 계	384,288 (100.0)	7,754 (100.0)	392,209 (100.0)	8,073 (100.0)	361,575 (100.0)	8,338 (100.0)	349,634 (100.0)	8,641 (100.0)		
상해	87,781 (22.8)	1,357 (17.5)	83,453 (21.3)	1,397 (17.3)	73,872 (20.4)	1,334 (16.0)	65,629 (18.8)	1,256 (14.5)		
폭행	159,518 (41.5)	2,264 (29.2)	165,400 (42.2)	2,575 (31.9)	163,355 (45.2)	2,982 (35.8)	168,048 (48.1)	3,118 (36.1)		
폭력행위 등*	99,791 (26.0)	3,632 (46.8)	102,799 (26.2)	3,457 (42.8)	86,460 (23.9)	3,398 (40.8)	76,618 (21.9)	3,495 (40.4)		
손괴	28,319 (7.4)	430 (5.5)	29,092 (7.4)	539 (6.7)	28,751 (8.0)	544 (6.5)	29,285 (8.4)	622 (7.2)		
기타 폭력범죄**	8,879 (2.3)	71 (0.9)	11,465 (2.9)	105 (1.3)	9,137 (2.5)	80 (1.0)	10,054 (2.9)	150 (1.7)		

* 폭력행위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폭력범죄 :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등

<표 3-15>에서 내국인의 폭력범죄 하위 범죄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체로 폭행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하 '폭력행위등'이라고 함), 상해, 손괴의 순서로 나타난다. 2014년을 발생분포를 살펴보면, 폭행이 48.1%, '폭력행위등'이 21.9%, 상해가 18.8%, 손괴는 8.4%를 차지한다. 이에 비하여 외국인의 폭력범죄 하위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폭력행위등', 폭행, 상해, 손괴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2014년도 분포에서 외국인은 '폭력행위등'이 40.4%, 폭행이 36.1%, 상해가 14.5%, 손괴가 7.2%를 차지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폭력범죄의 하위유형별 분포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내국인과 비교하여 외국인은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에서

‘폭력행위등’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상대적으로 폭행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에서 ‘폭력행위등’은 ‘폭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력성의 정도가 더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폭력행위등’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유형의 폭력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단순 폭행 사건과 구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3-16>은 지난 4년 동안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별 검거인원을 합산하여 비교한 것이다. 4년 동안의 자료를 합산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범죄 하위유형 분포의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표 3-16>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유형별 검거인원(2011~2014년 합산)

구분 \ 범죄유형	합 계	내국인	외국인
합 계	1,520,512 (100.0)	1,487,706 (100.0)	32,806 (100.0)
상해	316,079 (20.8)	310,735 (20.9)	5,344 (16.3)
폭행	667,260 (43.9)	656,321 (44.1)	10,939 (33.3)
폭력행위등*	379,650 (25.0)	365,668 (24.6)	13,982 (42.6)
손괴	117,582 (7.7)	115,447 (7.8)	2,135 (6.5)
기타 폭력범죄**	39,941 (2.6)	39,535 (2.7)	406 (1.2)

* 폭력행위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폭력범죄 :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등

요컨대,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앞의 폭력범죄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낮지만, 폭력범죄의 세부 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발생률이 높다. 즉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내국인과 비교하여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낮지만, 일단 발생한 폭력범죄 중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하거나 칼이나 술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외국인 폭력범죄의 이러한 특성은 외국인이라는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외국인 폭력범죄 하위 범죄유형의 국적별 발생 동향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 발생 분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3-17>에서는 외국인의 국적별로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의 발생비율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전체의 하위 범죄유형별 분포에서는 ‘폭력행위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외국인의 국적별로 하위 범죄유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국적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폭력범죄 하위 유형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국적에 따라서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과 같은 선진 외국인과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엇비슷한 대만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 분포가 내국인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네 개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 중에서 ‘폭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높은 상태로서 내국인의 폭력범죄 하위 범죄유형의 비율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3-17>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별 분포(2011~2014 합산)

(단위: 명(%))

국적 \ 폭력범죄	합 계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손괴	기타 폭력 범죄*
내국인	1,487,706 (100.0)	310,735 (20.9)	656,321 (44.1)	365,668 (24.6)	115,447 (7.8)	39,535 (2.7)
외국인 평균	32,806 (100.0)	5,344 (16.3)	10,939 (33.3)	13,982 (42.6)	2,135 (6.5)	406 (1.2)
중 국	21,725 (100.0)	3,478 (16.0)	7,394 (34.0)	9,346 (43.0)	1,270 (5.8)	237 (1.1)
미 국	1,892 (100.0)	398 (21.0)	750 (39.6)	459 (24.3)	243 (12.8)	42 (2.2)
베트남	1,883 (100.0)	251 (13.3)	355 (18.9)	1,205 (64.0)	55 (2.9)	17 (0.9)
몽 골	1,781 (100.0)	265 (14.9)	616 (34.6)	709 (39.8)	179 (10.1)	12 (0.7)
우즈베키스탄	847 (100.0)	172 (20.3)	251 (29.6)	325 (38.4)	70 (8.3)	29 (3.4)
대 만	511 (100.0)	94 (18.4)	248 (48.5)	122 (23.9)	42 (8.2)	5 (1.0)

〈연결〉

국적 \ 폭력범죄	합 계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손괴	기타 폭력 범죄*
스리랑카	448 (100.0)	43 (9.6)	83 (18.5)	318 (71.0)	4 (0.9)	-
태 국	436 (100.0)	52 (11.9)	46 (10.6)	328 (75.2)	7 (1.6)	3 (0.7)
캐나다	347 (100.0)	69 (19.9)	129 (37.2)	67 (19.3)	40 (11.5)	12 (3.5)
필리핀	292 (100.0)	52 (17.8)	82 (28.1)	147 (50.3)	7 (2.4)	4 (1.4)
러시아	275 (100.0)	66 (24.0)	87 (31.6)	92 (33.5)	26 (9.5)	4 (1.5)
파키스탄	200 (100.0)	46 (23.0)	68 (34.0)	72 (36.0)	6 (3.0)	8 (4.0)
방글라데시	167 (100.0)	22 (13.2)	45 (26.9)	93 (55.7)	3 (1.8)	4 (2.4)
일 본	136 (100.0)	22 (16.2)	70 (51.5)	29 (21.3)	13 (9.6)	2 (1.5)
인도네시아	96 (100.0)	11 (11.5)	15 (15.6)	68 (70.8)	2 (2.1)	-
키르기스스탄	60 (100.0)	14 (23.3)	26 (43.3)	13 (21.7)	6 (10.0)	1 (1.7)
기 타	1,710 (100.0)	289 (16.9)	644 (37.7)	589 (34.4)	162 (9.5)	26 (1.5)

* 기타 폭력범죄 :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등

반면 일부 외국인 국적에서는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낮지만 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에서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국적이 있다. 여기에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이 속한다. 이들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폭력범죄에 가담하지 않지만, 일단 발생한 폭력범죄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하거나 칼이나 솔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즉 폭력범죄 발생률이 낮은 동남아시아 지역 외국인의 경우에 폭력범죄가 발생하면 2명 이상의 집단 패싸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외국인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폭행의 대상자가 자국민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경우에 자국 내에서의 지역적, 민족적 갈등이 일부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높은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국적의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의 발생률이 동남아 지역 외국인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물론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도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3%, 40%, 38%, 34%로서 내국인의 24.6%에 비하면 그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외국인 폭력범죄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선진국 외국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에서 ‘폭력행위등’의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외에 이주노동자가 많은 대부분의 외국인 국적에서는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에서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특기할만한 점은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내국인의 11% 수준인 필리핀, 내국인의 9% 정도인 태국, 내국인의 5% 수준인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0.3%, 75.2%, 70.8%이다.

제4절 소결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외국인 검거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에 비하여 그 변동폭이 큰 편이다. 외국인범죄의 증가율은 2011년까지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을 앞질렀으나 2012년 이후로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율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증가가 지속되는 한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의 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의 증가율이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을 넘어서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분포(〈표 3-3〉, 〈표 3-4〉 참조)를 살펴보면, 외국인 범죄는 폭력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31.6%)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도의 비율(0.5%)은 낮아지고, 성범죄(1.6%)와 교통범죄(21.9%)의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을 내국인과 비교해보면 지능범죄, 교통범죄의 발생 비율은 낮으며, 상대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

외국인 국적별 검거인원 분포를 살펴보면(〈표 3-5〉 참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으로서 전체 외국인 검거인원의 59% 정도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는 베트남이 7.4%, 미국이 6.7%, 몽골이 5.0%, 우즈베키스탄이 3.4%, 태국이 3.2%, 대만이 1.9%, 필리핀이 1.5%(1,605명), 스리랑카가 1.5%(1,529명), 캐나다가 1.1%(1,192명), 러시아가 1.1%(1,149명)이다. 이외의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전체 외국인 검거인원의 1.0% 미만이다.

외국인의 국적별 범죄유형분포(〈표 3-6〉 참조)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서 다발하는 범죄유형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발생비율이 높고, 베트남, 몽골, 러시아의 경우에는 절도범죄의 비율이 높으며, 대만의 경우에는 지능범죄의 비율이 높으며, 베트남,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비율은 낮으면서 교통범죄의 비율은 높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교통범죄의 발생비율이 높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범죄의 발생비율이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적에 따라서 범죄유형의 발생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국적별로 다발하는 범죄유형이 다르므로 외국인범죄의 억제를 위해서 외국인의 국적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및 억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내·외국인의 범죄발생을 비교

체류외국인은 내국인의 인구 구성과 비교하여,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5% 정도 높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인구는 낮으면서 20세 이상 59세까지의 인구 비율은 20% 정도 높다. 즉, 상대적으로 범죄발생률이 높은 남성 인구의 비율은 높고, 범죄발생률이 낮은 청소년층과 노인층의 연령비율은 낮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인구 구성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을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의 '15세이상인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는 외국인의 인구구성이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 구성과 비슷하도록 보정한 값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을 비교해보면(〈표 3-11〉 참조),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매해 외국인보다 현저하게 높다. 지난 4년 동안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11년인데, 내국인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은 3,524명이고, 외국인은 1,420명으로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외국인보다 2.5배 정도 높다. 2012년에는 내국인의 10만명당 검거인원이 3,338명이고, 외국인은 1,152명으로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의 차이가 더 커져서 내국인은 외국인보다 2.9배 정도 높다. 2013년과 2014년에도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외국인보다 각각 2.9배, 2.8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2013년과 2014년의 외국인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각각 1,169과 1,175로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 내국인과 외국인범죄의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범죄 유형에서 내국인의 범죄발생률은 외국인보다 매우 높다. 특히 지능범죄와 교통범죄의 발생률은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3-4배 이상 높다. 다만 살인범죄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이 내국인을 앞지르고 있으며, 강도범죄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비슷한 정도의 범죄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범죄에서 다른 범죄유형과 다르게 살인범죄와 강도범죄가 다발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 후속연구를 통하여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외국인의 국적별 전체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살펴보면, 몽골의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높으며,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북방에 위치한 국적 외국인들의 검거인원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검거인원지수가 현저하게 낮다. 외국인의 국적별 비교에서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낮은 외국인 국적은 일본이고, 그 다음으로 검거인원지수가 낮은 국적은 인도네시아이다. 인도네시아의 인구 대비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은 검거인원지수를 나타낸 몽골의 경우에도 그 수치는 내국인에 비하여 낮은 상태이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의 경우에도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대부분 국적의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범죄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검거인원지수가 1,000보다 낮아서 범죄발생률이 내국인의 1/3 수준보다 낮은 상태이다.

3.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과 그 특성

내국인과 외국인 폭력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표 3-14〉 참조),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외국인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범죄의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2012년도에 가장 높았고, 2013년, 2014년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1년도 내국인의 10만명당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는 757이고, 외국인은 401로 외국인은 내국인의 53% 수준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 2012년도에도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770이고, 외국인은 406으로서 외국인의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53% 정도이다. 2013년과 2014년도도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각각 내국인의 55%, 53% 수준이다. 지난 4년 동안 외국인의 인구 10만명당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53%~5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적별로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를 살펴보면, 몽골의 경우만 내국인보다 높고, 나머지 모든 국적의 외국인은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내국인보다 낮다. 몽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낮다.

또한 외국인 집단 내에서 키르기스스탄,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은 외국인 전체의 평균값보다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폭력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동남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적(스리랑카,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과 선진국(캐나다,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현저하게 낮으므로 폭력범죄 발생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태국인, 일본인, 인도네시아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 발생률이 내국인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요컨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의 폭력범죄 검거인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몽골을 제외한 다른 국적 외국인은 인구 대비 폭력범죄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특히할만한 점으로는 외국인 집단 내에서 아시아의 북방에 위치한 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폭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편이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속한 외국인 경우에는 폭력범죄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별 기후적 특성, 술문화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날씨가 추운 북방지역일수록 음주를 많이 하고, 음주 상태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¹⁾. 음주와 폭력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음주와 폭력범죄의 관련성이 알콜 자체의 효과로 설명되기도 하며, 개인적 특성, 상황적 요인, 음주와 범죄에 대한 규범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Lang & Sibrel, 1989; Martin, 2001; 전영실, 2004: 309 재인용).

또한 외국인 폭력범죄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서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의 발생율이 달라지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선진국 외국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에서 ‘폭력행위등’의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외에 이주노동자가 많은 국적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에서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즉, 이주노동자가 많은 대부분의 국적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폭력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낮지만, 일단 발생한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의 발생분포를 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하거나 칼이나 슬링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내국인의 1/10 수준 이하인 필리핀인, 태국인, 인도네시아인의 경우에도 전체 폭력범죄에서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50%~75%에 이른다. 외국인 폭력범죄의 이러한 특성은 외국인이라는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1) 1인당 알콜소비와 범죄율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있다. 1960-1973년 사이에 몇몇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알콜소비와 폭력범죄율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Pernannen, 1981: 2-3; 전영실, 2004: 312 재인용).

제4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및 피해 양상과 특성

장 현 석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및 피해 양상과 특성

제1절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 설문조사 대상 내·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가. 성별, 나이, 학력 및 결혼상태

설문조사를 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범죄 가해와 피해 양상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내국인의 경우 총 500명이 분석에 포함되었고, 외국인은 총 1,209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설문 중에 무응답으로 나타난 경우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무응답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표에 제시하였다. 무응답을 모두 제외할 경우 정보의 손실이 많아져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 다만, 추후 이변량 분석이나 로지스틱분석 등에서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내·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포함한 일반적 특징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1〉은 설문조사에 포함된 내·외국인의 성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내국인의 경우 조사에 포함된 남녀의 비율의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남성이 252명(50.4%)으로 여성(248명, 49.6%)보다 조금 많았다. 외국인의 경우 남성이 780명(64.5%)으로 421명(34.8%)인 여성에 비하여 더 많았다. 2014년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179만 여명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5.3%로 외국인 여성보다 많다. 본 연구의 경우 연구에 포함된 외국인 남성의 비율이 실제 거주 외국인 남성의 비율보다 약 10%정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설문조사 대상 내·외국인의 특성: 성별, 나이, 학력, 결혼상태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성 별	여 성	248(49.6)	421(34.8)
	남 성	252(50.4)	780(64.5)
	무응답	-	8(0.7)
	합계	500(100.0)	1,209(100.0)
나 이	20세 ~ 29세	101(20.2)	374(30.9)
	30세 ~ 39세	115(23.0)	433(35.8)
	40세 ~ 49세	129(25.8)	191(15.8)
	50세 이상	155(31.0)	128(10.6)
	무응답	-	83(6.9)
	합계	500(100.0)	1,209(100.0)
학 력	초등 중퇴·졸업	3(0.6)	30(2.5)
	중등 중퇴·졸업	5(1.0)	202(16.7)
	고등중퇴·졸업	222(44.4)	537(44.4)
	대학중퇴·졸업	235(47.0)	319(26.4)
	대학원 이상	35(7.0)	64(5.3)
	무응답	-	57(4.7)
	합계	500(100.0)	1,209(100.0)
결혼상태	미혼	182(36.4)	405(33.5)
	기혼	291(58.2)	701(58.0)
	동거	2(0.4)	37(3.1)
	기타(사별·이혼 등)	25(5.0)	47(3.9)
	무응답	-	19(1.6)
	합계	500(100.0)	1,209(100.0)

설문조사에 포함된 내·외국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20, 30, 40대가 20%대에서 25%대의 비율을 나타냈고, 50세 이상이 3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젊은 연령대의 분포가 더 많았다. 30대가 35.8%(43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가 30.9%(374명)를 차지하였다. 40대와 50세 이상은 모두 10%대의 비율을 나타냈다.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가 많은 것은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힘든 노동현장에 일자리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설문조사에 포함된 외국인도 비슷한 비율을 구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저학력의 비숙련 노동자

들이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고, 소수의 외국인들은 전문적인 직업군에 종사하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내·외국인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내국인의 학력수준이 외국인의 학력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4-1〉 참조). 내국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중퇴)이상의 학력이 전체의 98.4%를 차지하나 외국인의 경우 63.6%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내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외국인들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원 이상의 학력의 경우 외국인도 5.6%를 차지하여 7%인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설문조사대상 내·외국인의 결혼상태는 기혼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약 58%대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혼이 내국인 36.4%, 외국인 34%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녀유무·자녀수·동거구분

자녀유무, 자녀수 그리고 동거구분에 대한 분포를 조사하였다(〈표 4-2〉 참조). 내국인의 경우 응답자 중에서 약 55.6%가 자녀가 있다고 하였고, 외국인의 경우 48.3%가 자녀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한 자녀수 조사에서 내국인의 경우 2명이 있다고 한 경우가 가장 빈도수가 높았고(33%), 외국인의 경우 자녀가 1명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1%로 가장 높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혼자 입국하여 취업을 한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래 〈표 4-2〉에 의하면 내국인의 경우 87.6%가 가족 또는 친척과 동거하고 있다고 한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 35.9%만 가족 또는 친척과 동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외국인의 경우 직장동료와 거주한다는 응답이 28.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들이 직장동료와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방을 구하여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설문조사 대상 내·외국인의 특성: 자녀유무, 자녀 수, 동거구분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자녀유무	자녀 없음	222(44.4)	612(50.6)
	자녀 있음	278(55.6)	584(48.3)
	무응답	-	13(1.1)
	합계	500(100.0)	1,209(100.0)
자녀 수	1명	87(17.4)	303(25.1)
	2명	165(33.0)	208(17.2)
	3명	25(5.0)	56(4.6)
	4명	1(0.2)	10(0.8)
	5명	-	4(0.3)
	무응답(자녀 없음 포함)	222(44.4)	628(52.0)
	합계	500(100.0)	1,209(100.0)
동거구분	동거하지 않음	54(10.8)	250(20.7)
	직장 동료	6(1.2)	342(28.3)
	가족 또는 친척	438(87.6)	434(35.9)
	이성 동거인	1(0.2)	48(4.0)
	친구나 선후배	1(0.2)	97(8.0)
	기타	-	10(0.8)
	무응답	-	28(2.3)
	합계	500(100.0)	1,209(100.0)

다. 직장생활여부, 월간소득, 종교

조사대상자의 직장생활여부의 경우 외국인 응답자의 81.8%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였고, 내국인의 경우 이보다 작은 75.6%의 응답자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였다(〈표 4-3〉 참조).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였기 때문에 단기 실직자인지 아니면 직장생활 의사가 아직 없는 학생이거나 또는 전업주부인지는 알 수 없었다.

〈표 4-3〉 설문조사 대상 내·외국인의 특성: 직장생활여부, 월간소득, 종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직장생활여부	아니오	122(24.4)	216(17.9)
	예	378(75.6)	989(81.8)
	무응답	-	4(0.3)
	합계	500(100.0)	1,209(100.0)
월간 소득	소득 없음	122(24.4)	219(18.1)
	1만원~100만원 이하	41(8.2)	44(3.6)
	101만원 ~200만원 이하	116(23.2)	674(55.7)
	201만원~300만원 이하	104(20.8)	166(13.7)
	301만원~400만원 이하	46(9.2)	25(2.1)
	400만원 초과	71(14.2)	22(1.8)
	무응답	-	59(4.9)
	합계	500(100.0)	1,209(100.0)
종교	종교 없음	272(54.4)	389(32.2)
	개신교	123(24.6)	173(14.3)
	천주교	56(11.2)	101(8.4)
	불교	48(9.6)	296(24.5)
	이슬람교	-	158(13.1)
	힌두교	1(0.2)	1(0.1)
	기타	-	44(3.6)
	무응답	-	47(3.9)
합계	500(100.0)	1,209(100.0)	

조사대상 내·외국인들의 월간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내·외국인의 경우 월간소득이 0원으로서 내국인은 24.4%, 외국인은 18.1%가 소득이 없다고 하였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201만원 이상부터 400만원 초과의 월간 소득을 올린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모두 합하여 44.2%인데 반하여 외국인의 경우 17.6%만이 201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고 응답하였다. 외국인의 월간 소득이 내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고, 가장 많은 55.7%의 외국인들이 101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하의 월간 소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이민정책이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수입해 산업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쪽을 지향하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외국인간의 임금 격차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대적 차별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국인의 경우 종교가 없다고 한 경우가 5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순이었다. 내국인 중 이슬람교도는 없었고, 힌두교도가 한명 있었다. 외국인의 경우 무교의 비중이 32.2%로서 내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 불교가 종교라고 응답한 사람이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개신교 14.3%, 이슬람교 13.1%, 천주교 8.4% 순이었다. 힌두교도가 1명 있었고, 여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도 3.6% 있었다.

2.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 체류기간, 체류신분상 특징

가. 조사대상 외국인의 국적과 체류기간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 4-4>와 같다.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 17.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중국인(한족)이 12.7%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미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몽골인은 8%에서 9%대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를 설계할 때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국적별 분포수를 고려하여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외국인들의 국내 총 체류기간은 2년 초과 4년 이하인 경우가 2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년 이하가 21.7%, 그리고 4년 초과 6년 이하인 경우가 19.9%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내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6년 이하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가 이 기간 이내에 대부분 만료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E-9비자의 경우 비전문취업 비자로서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취업이 연장되어 총 5년의 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²²⁾.

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18조, 제18조의2

〈표 4-4〉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 체류기간

구 분		외국인
국 적	중국(조선족)	216(17.9)
	중국(한족 등)	154(12.7)
	베트남	105(8.7)
	인도네시아	108(8.9)
	필리핀	99(8.2)
	타이(태국)	113(9.3)
	미국	110(9.1)
	스리랑카	94(7.8)
	우즈베키스탄	100(8.3)
	몽골	110(9.1)
	합계	1,209(100.0)
체류기간	2년 이하	262(21.7)
	2년 초과 ~ 4년 이하	350(28.9)
	4년 초과 ~ 6년 이하	240(19.9)
	6년 초과 ~ 8년 이하	108(8.9)
	8년 초과 ~ 10년 이하	92(7.6)
	10년 초과	66(5.5)
	무응답	91(7.5)
	합계	1,209(100.0)

외국인의 국적별로 체류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하는데, 그 기간이 3년이고, 연장 시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²³⁾. 그리고 재외동포로서 모국인 한국을 방문할 때 방문취업비자(H-2 비자)나 재외동포비자(F-4 비자)의 체류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²⁴⁾이므로 체류기간을 3년 이하, 3년 ~ 5년, 그리고 5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표 4-5〉에 의하면 조선족인 중국인의 경우 5년을 초과하는 장기체류자가 55.7%로 나타나서 다른 국적의 외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족의 경우 다른 국적의 외국인에 비하여 5년을 초과하는 장기체류자가 많은 이유는 체류기간을 비교적 쉽게 연장할 수 있는 재외동포비자(F-4)를 통해 장기체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2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국과 체류)

있다. 한족인 중국인의 경우에 3년 이하인 경우가 42.1%로 가장 많았으나, 5년을 초과하는 사람 또한 40%로 많았다. 베트남 출신 외국인은 총 체류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50%를 차지하여 다른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에 비하여 비교적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별 체류기간

국적	3년 이하	3년 ~ 5년	5년 초과	합계 ²⁵⁾
중국(조선족)	60(29.6)	30(14.8)	113(55.7)	203(100.0)
중국(한족 등)	59(42.1)	25(17.9)	59(40.0)	140(100.0)
베트남	18(18.8)	30(31.3)	48(50.0)	96(100.0)
인도네시아	35(38.5)	46(50.5)	10(11.0)	91(100.0)
필리핀	35(43.8)	26(32.5)	19(23.8)	80(100.0)
타이(태국)	42(38.2)	47(42.7)	21(19.1)	110(100.0)
미국	73(66.4)	19(17.3)	18(16.4)	110(100.0)
스리랑카	36(41.4)	43(49.4)	8(9.2)	87(100.0)
우즈베키스탄	57(59.4)	26(27.1)	13(13.5)	87(100.0)
몽골	46(43.8)	37(35.2)	22(21.0)	105(100.0)
합계	461(41.2)	329(29.4)	328(29.3)	1,118(100.0)

필리핀, 미국,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경우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3년에서 5년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나. 조사대상 외국인의 체류상태와 미등록 체류기간

〈표 4-6〉은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신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들 중에서 체류신분이 이민당국에 등록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13.1%였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총 외국인 체류자 1,899,519명 중에서 11.3%인 214,168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²⁶⁾. 본 연구에 포함된 불법체류자도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고 볼 수

25) 체류기간에 무응답을 한 91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이다.

26)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74쪽

있다.

국내체류 신분이 미등록이라고 응답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상태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2년 초과에서 4년 이하가 전체 미등록 체류자 중에서 28.5%로 가장 많았고, 2년 이하가 22.8%로 두 번째를 기록하였다. 5.7%에 해당하는 9명의 외국인은 불법체류기간이 10년을 넘는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표 4-6〉 외국인 설문조사 대장자의 체류상태, 미등록 체류기간

구 분		외국인
체류상태	미등록	158(13.1)
	등록	1010(83.5)
	무응답	41(3.4)
	합계	1,209(100.0)
미등록 체류기간	2년 이하	36(22.8)
	2년 초과 ~ 4년 이하	45(28.5)
	4년 초과 ~ 6년 이하	30(19.0)
	6년 초과 ~ 8년 이하	9(5.7)
	8년 초과 ~ 10년 이하	10(6.3)
	10년 초과	9(5.7)
	무응답	19(12.0)
	합계	158(100.0)

〈표 4-7〉은 국적별로 미등록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미등록 체류기간은 어떠한지 조사한 것이다.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가장 많은 국적은 37명인 필리핀이었다. 전체 설문에 참여한 필리핀 사람의 수가 99명(〈표 4-4〉참조)인 것을 고려하면, 약 37.4%의 필리핀 국적 설문응답자가 미등록 외국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외국인복지지원센터와 외국인 노동자의 집과 같은 외국인 지원시설에서 이루어져서 신분이 취약한 필리핀 사람이 특히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미등록자 수가 많은 국적은 31명인 몽골 그리고 세 번째는 23명의 미등록 체류자가 있는 베트남 순이었다.

http://www.immigration.go.kr/doc_html/attach/imm/f2016//20160615257980_1_1.pdf.files/PDFBook.html

〈표 4-7〉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별 미등록자수 및 미등록 체류기간

국적	3년 이하	3년 ~ 5년	5년 초과	합계 ²⁷⁾
중국(조선족)	6(100.0)	-	-	6(100.0)
중국(한족 등)	9(47.4)	6(31.6)	4(21.1)	19(100.0)
베트남	8(34.8)	14(60.9)	1(4.3)	23(100.0)
인도네시아	2(33.3)	3(50.0)	1(16.7)	6(100.0)
필리핀	6(16.2)	9(24.3)	22(59.5)	37(100.0)
타이(태국)	11(78.6)	2(14.3)	1(7.1)	14(100.0)
우즈베키스탄	3(100.0)	-	-	3(100.0)
몽골	13(41.9)	10(32.3)	8(25.8)	31(100.0)
합계	58(41.7)	44(31.7)	37(26.6)	139(100.0)

조선족은 설문조사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체류자 수가 적었고, 또한 미등록 체류기간도 모두 3년 이하여서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경우 5년을 초과한 미등록 체류자가 전체 미등록체류자의 59.5%를 차지하여 장기 미등록체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내·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양상과 특성 비교

1. 내·외국인 폭력범죄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타인에게 폭행을 가한 경험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는 경우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실제로 일반인들 중에서 폭력에 가담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내국인은 총 500명 중에서 12명이 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외국인의 경우 총 1,209명 중에서 21명이 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먼저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내·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 결혼상태, 종교유형, 동거구분 변수는 각각 배우자유무²⁸⁾, 종교유

27) 전체 미등록 외국인 158명 중에서 체류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19명을 제외하고

28) 변수를 변형하여 기혼 또는 사실혼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미혼, 이혼, 사별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무, 등거유무 변수로 변형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변수를 변형한 이유는 가해경험 빈도가 많지 않아 분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추후 로지스틱회귀분석에 더미변수로 변환한 변수가 독립변수로 모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 장서부터 더미변수로 변형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4-8〉은 폭력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내국인과 외국인들의 성별, 나이, 학력, 그리고 배우자 유무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내국인의 경우 전체 12명의 가해경험자 중 남성이 7명으로 58.3%를 차지하였고 41.7%인 여성에 비하여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외국인의 경우 전체 21명의 가해 경험자 중 남성이 19명(90.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여성은 2명(9.5%)에 불과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보통 남성이 더 폭력 행위에 많이 가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에 부합하였으나, 내국인은 그렇지 않았다.

가해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20대가 4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가 3명으로 25%를 나타냈다. 외국인의 경우 전체 21명의 가해자 중에서 20, 30, 40대가 각각 6명씩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각각 28.6%를 차지하였다. 내·외국인 모두 특정 연령에 집중되기보다 비교적 골고루 퍼져 있는 양상이다.

〈표 4-8〉 내·외국인 폭력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별, 나이, 학력, 배우자 유무

	구 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성 별	여 성	5(41.7)	2(9.5)	7(21.2)
	남 성	7(58.3)	19(90.5)	26(78.8)
	전 체	12(100.0)	21(100.0)	33(100.0)
나 이	20세 ~ 29세	4(33.3)	6(28.6)	10(30.3)
	30세 ~ 39세	3(25.0)	6(28.6)	9(27.3)
	40세 ~ 49세	2(16.7)	6(28.6)	8(24.2)
	50세 이상	3(25.0)	3(14.3)	6(18.2)
	전 체	12(100.0)	21(100.0)	33(100.0)
학 력	초등 중퇴·졸업	-	1(4.8)	1(3.0)
	중등 중퇴·졸업	-	5(23.8)	5(15.2)
	고등중퇴·졸업	5(41.7)	10(47.6)	15(45.5)
	대학중퇴·졸업	6(50.0)	5(23.8)	11(33.3)
	대학원 이상	1(8.3)	-	1(3.0)
	전 체	12(100.0)	21(100.0)	33(100.0)
배우자유무	배우자 없음	7(58.3)	6(28.6)	13(39.4)
	배우자 있음	5(41.7)	15(71.4)	20(60.6)
	합계	12(100.0)	21(100.0)	33(100.0)

폭력가해경험자들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내국인의 경우 대학중퇴 또는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명(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5명(41.7%)이었다. 외국인의 경우 전체 가해경험자 21명 중에서 고등중퇴 또는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10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학력은 중등중퇴 또는 졸업(5명, 23.8%)과 대학중퇴 또는 졸업(5명, 23.8%)이었다. <표 4-1>에서 전체 외국인의 교육수준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63.6%인데 반하여 폭력가해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76.2%여서 상대적으로 폭력가해자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가해자의 배우자 유무를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가해경험자가 7명(58.3%)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5명(41.7%)보다 많았다. 외국인 폭력가해자의 경우 내국인과 다르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15명, 71.4%)가 그렇지 않은 경우(6명, 28.6%)보다 많았다.

<표 4-9>는 내·외국인 폭력가해자의 자녀, 종교, 동거여부, 직장생활여부, 그리고 월간소득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자녀유무에 있어서 내국인 폭력가해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5명(41.7%)으로 없는 경우(7명, 58.3%)보다 약간 더 적었다. 이와 반대로 외국인 폭력가해자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15명, 71.4%)가 자녀가 없는 경우(6명, 28.6%)보다 많았다. 발달범죄학에서는 보통 자녀가 있는 경우 책임감이 강화되어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Sampson & Laub, 1995). 외국인 폭력가해자들의 경우 이러한 설명과 상반된 결과를 보인 것이다. <표 4-8>의 배우자 유무와 <표 4-9>의 자녀유무가 내·외국인에 있어서 동일한 빈도를 보여서 폭력가해자들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모두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내·외국인 폭력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자녀, 종교, 동거, 직장생활, 월간소득

구 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자녀유무	자녀 없음	7(58.3)	6(28.6)	13(39.4)
	자녀 있음	5(41.7)	15(71.4)	20(60.6)
	합계	12(100.0)	21(100.0)	33(100.0)
종교유무	종교 없음	8(66.7)	6(28.6)	14(42.4)
	종교 있음	4(33.3)	15(71.4)	19(57.6)
	합계	12(100.0)	21(100.0)	33(100.0)
동거여부	혼자산다	1(8.3)	5(23.8)	6(18.2)
	동거한다	11(91.7)	16(76.2)	27(81.8)
	합계	12(100.0)	21(100.0)	33(100.0)
직장생활 여부	아니오	-	4(19.0)	4(12.1)
	예	12(100.0)	17(81.0)	29(87.9)
	합계	12(100.0)	21(100.0)	33(100.0)
월간 소득	0원	-	4(19.0)	4(12.1)
	1만원~100만원 이하	1(8.3)	2(9.5)	3(9.1)
	101만원 ~200만원 이하	6(50.0)	9(42.9)	15(45.5)
	201만원~300만원 이하	1(8.3)	2(9.5)	3(9.1)
	301만원~400만원 이하	1(8.3)	-	1(3.0)
	400만원 초과	3(25.0)	1(4.8)	4(12.1)
	무응답	-	3(14.3)	7(21.2)
	합계	12(100.0)	21(100.0)	33(100.0)

폭력가해자의 종교유무를 살펴보면, 내국인 가해자의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8명, 66.7%)가 종교가 있는 경우(4명, 33.3%)보다 많았지만, 외국인 가해자의 경우 반대로 종교가 있는 경우(15명, 71.4%)가 없는 경우(6명, 28.6%)보다 더 많았다.

폭력가해자의 동거여부 분포조사에 따르면 내·외국인 모두 혼자 사는 경우 보다 누군가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생활 여부 분포를 살펴보면, 내·외국인 가해자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경우 가해자 12명(100%) 전원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의 경우 17명(81%)이 직장생활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폭력가해자들의 월간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저소득자들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폭력가해자의 경우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총 7명(58.3%)였고, 외국인의 폭력가해자의 경우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총 15명으로 폭력

가해자의 71.4%를 차지하였다. 전체 외국인의 소득분포에서 200만원 이하가 77.4%인 것과 비교하면 폭력가해자들의 소득 분포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2. 내·외국인 폭력범죄가해 양상 및 특성

폭력 가해를 했다고 응답한 내·외국인들의 가해 양상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폭력가해 빈도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자승 검증 결과를 같이 제시하였다.

가. 내·외국인 폭력가해 여부 및 가해 빈도

〈표 4-10〉에 따르면 내국인의 경우 전체 500명 중에서 12명이 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2.4%가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외국인의 경우 전체 1,209명 중에서 21명이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1.7%가 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순 폭력 가해경험 비율 비교에서는 외국인의 폭력 가해경험이 내국인보다 0.7%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의 폭력 가해경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자승 검증을 한 결과 가해경험 빈도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0.821$ $df = 1$ $p > 0.05$). 제 3장에서 제시한 2014년도 15세이상 내국인 인구나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수와 2014년도 내·외국인 폭력범죄 검거인원을 이용하여 각각 인구대비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범죄 검거율을 계산하면 내국인은 0.82% 그리고 외국인은 0.43%를 나타낸다²⁹⁾. 대부분의 폭력범죄가 경미한 경우에 경찰에 보고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 설문조사에서 실제 검거율 보다 높은 내국인 2.4%와 외국인 1.7%가 가해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것은 이해할 만한 수준의 응답으로 볼 수 있다.

29) 2014년 내국인 폭력범죄 검거율: $(349,634/42,513,000) \times 100 = 0.82\%$
 2014년 외국인 폭력범죄 검거율: $(8,641/2,006,396) \times 100 = 0.43\%$

〈표 4-10〉 내·외국인 폭력가해 여부 및 빈도 비교(χ^2 -test)

구 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χ^2 -test
폭력 가해여부	없다	488(97.6)	1,188(98.3)	1,676(98.1)	$\chi^2 = 0.821$ df = 1 p = 0.365
	있다	12(2.4)	21(1.7)	33(1.9)	
	합계	500(100.0)	1,209(100.0)	1,709(100.0)	
폭력 가해빈도	1번	6(50.0)	6(28.6)	12(36.4)	N/A
	2번	4(33.3)	-	4(12.1)	
	3번	2(16.7)	-	2(6.1)	
	무응답	-	15(71.4)	15(45.5)	
	합계	12(100.0)	21(100.0)	33(100.0)	

* : p<0.05, ** : p<0.01, *** : p<0.001

다음으로 폭력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지난 1년 동안 몇 번의 가해 경험이 있는지 가해빈도를 조사하였다. 내국인의 경우 1번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0%를 차지했고 2번 또는 3번인 경우가 나머지 50%를 차지하였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중 15명이 가해 빈도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아 무응답으로 표시되었다. 1번 폭력 가해 행위를 했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6명으로 전체 21명의 가해 경험자 중 28.6%를 차지하였다. 내·외국인간의 빈도차이 분석을 위한 카이자승 검정은 외국인의 응답에 무응답이 많아서 생략하였다.

나. 외국인 국적별 폭력가해 여부

9개 다른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국적별로 폭력가해 여부가 차이가 나는지 조사하였다(〈표 4-11〉 참조). 전체 21명의 가해 경험이 있는 외국인 중에서 7명이 필리핀 국적의 사람으로, 이 비율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중에서 약 7.1%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국적은 인도네시아로 전체 105명의 응답자 중에서 3명이 폭력가해경험이 있다고 하여 2.8%의 가해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중국 국적 조선족, 중국 국적 한족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한 폭력가해경험 여부와 실제 공식범죄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 사뭇 차이가 난다. 제 3장의 외국인 폭력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에 따르면 2014년 현재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높은 국적은 몽골로서 인구 10만명당

927명이었다.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국적인구 10만명당 76명이 폭력범죄로 검거되었다. 이는 외국인 평균인 10만명당 357명 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설문조사 분석결과만 가지고 외국인의 폭력가해정도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표 4-11〉 외국인 국적별 폭력가해경험 여부 비교

구분		폭력가해 없다	폭력가해 있다	합계
국적	중국(조선족)	211(97.7)	5(2.3)	211(100.0)
	중국(한족 등)	151(98.1)	3(1.9)	151(100.0)
	베트남	104(99.0)	1(1.0)	104(100.0)
	인도네시아	105(97.2)	3(2.8)	105(100.0)
	필리핀	92(92.9)	7(7.1)	92(100.0)
	타이(태국)	113(100.0)	-	113(100.0)
	미국	109(99.1)	1(0.9)	109(100.0)
	스리랑카	94(100.0)	-	94(100.0)
	우즈베키스탄	100(100.0)	-	100(100.0)
	몽골	109(99.1)	1(0.9)	109(100.0)
	합계	1,188(98.3)	21(1.7)	1,188(100.0)

다. 내·외국인 폭력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해 장소·시간

〈표 4-12〉는 폭력 가해 양상 중에서 폭력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가해 장소와 시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교차분석을 할 때 무응답과 해당하지 않는 칸이 있어서 카이자승검증을 하지 않았다. 먼저 내국인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폭력 피해의 대상인 경우가 4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3.3%인 모르는 사람 순이었다. 외국인의 경우 폭력피해 대상으로 직장동료가 33.3%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23.8%인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내국인과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경우 가족들이 대부분 본국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족이나 친척과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동료와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전체를 보았을 때 모르는 사람에 대한 가해가 2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장소의 경우 내국인의 경우 집주변에서 가장 많이 가해를 했고, 음식점·술집이 뒤를 있었다. 외국인의 경우 음식점·술집이 23.85로 가장 많았고 집주변이나 길거리·

공원 같은 실외에서도 각각 19% 가해를 했다고 하였다.

〈표 4-12〉 내·외국인 폭력가해자와 피해자와의관계 및 가해 장소·시간

구 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피해자와의 관계	배우자·애인	-	1(4.8)	1(3.0)
	가족·친척	5(41.7)	1(4.8)	6(18.2)
	사장·직장상사	2(16.7)	1(4.8)	3(9.1)
	직장동료	-	7(33.3)	7(21.2)
	친구·선후배	1(8.3)	4(19.0)	5(15.2)
	모르는 사람	4(33.3)	5(23.8)	9(27.3)
	기타	-	2(9.5)	2(6.1)
	합계	12(100.0)	21(100.0)	33(100.0)
가해장소	집·거주지 주변	6(50.0)	4(19.0)	10(30.3)
	직장	1(8.3)	3(14.3)	4(12.1)
	음식점·술집	4(33.3)	5(23.8)	9(27.3)
	길거리·공원 등 실외	1(8.3)	4(19.0)	5(15.2)
	기타	-	4(19.0)	4(12.1)
	무응답	-	1(4.8)	1(3.0)
	합계	12(100.0)	21(100.0)	33(100.0)
가해시간	주중	4(33.3)	-	4(12.1)
	주말	5(41.7)	-	5(15.2)
	잘 모르겠음	3(25.0)	-	3(9.1)
	무응답	-	21(100.0)	21(63.6)
	합계	12(100.0)	21(100.0)	33(100.0)

가해 시간의 경우 외국인들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아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고, 내국인들은 주중보다 주말에 약간 더 가해 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내·외국인 폭력가해 양상: 가해가담자수, 쌍방폭행 여부, 가해방법, 무기종류

〈표 4-13〉은 폭력가해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가해가담자 수의 경우 다른 가해자 없이 혼자서 폭력가해를 한 경우가 내·외국인 모두 각각 75%, 52.4%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2인 이상)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내국인은 25%인데 반하여 외국인은 47.6%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외국인의 경우 드물게 3인 또는

4인과 함께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는 다중폭력 가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쌍방폭행 여부에 대하여 내·외국인 각각 75%, 61.9%의 경우에서 피해자인 상대방도 가해자를 공격했다고 응답하였다.

폭력행사의 방법은 손으로 때리는 경우가 내·외국인 모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다음으로 붙잡거나 흔든 경우였다. 무기를 사용한 경우는 내국인 외국인이 각각 2건과 1건으로서 매우 적었다. 사용된 무기의 종류는 외국인의 경우 술병이 한번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내·외국인 폭력가해 양상: 가해가담자수, 쌍방폭행여부, 가해방법(다중응답), 무기종류

구 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가해 가담자 수	없다(나 혼자 했다.)	9(75.0)	11(52.4)	20(60.6)
	1명	1(8.3)	4(19.0)	5(15.2)
	2명	2(16.7)	1(4.8)	3(9.1)
	3명	-	2(9.5)	2(6.1)
	4명 이상	-	3(14.3)	3(9.1)
	합계	12(100.0)	21(100.0)	33(100.0)
쌍방폭행 여부	나만 일방적으로 때렸다	3(25.0)	3(14.3)	6(18.2)
	상대도 나를 때렸다	9(75.0)	13(61.9)	22(66.7)
	기타	-	3(14.3)	3(9.1)
	무응답	-	2(9.5)	2(6.1)
	합계	12(100.0)	21(100.0)	33(100.0)
폭력 가해방법 ³⁰⁾ (다중응답)	붙잡거나 흔들었다.	5(41.7)	5(23.8)	10(30.3)
	손으로 때렸다.	10(83.5)	10(47.6)	20(60.6)
	이로 물어뜯었다.	1(8.3)	1(4.8)	2(6.1)
	발로 찼다.	4(33.3)	3(14.3)	7(21.2)
	머리로 들이받았다.	1(8.3)	1(4.8)	2(6.1)
	무기를 사용했다.	2(16.7)	1(4.8)	3(9.1)
	기타	-	2(9.5)	2(6.1)
	사례수	23	23	46
무기종류 ³¹⁾	칼	1(50.0)	-	1(33.3)
	술병	-	1(100.0)	1(33.3)
	기타	1(50.0)	-	1(33.3)
	합계	2(100.0)	1(100.0)	3(100.0)

30) 폭력 가해방법은 가해자가 폭력가해 시 사용했던 방법을 모두 고르라고 질문하여 가해방법 전체 합계가 가해자 수보다 많다. 단, 괄호안의 %는 내·외국인 폭력가해자의(내국인=12; 외국인=21) 수로 계산한 것이다.

31) 폭력가해 방법에서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만 표시한 것이다. 각 항목 괄호 안의 %는 내·외국인 폭력가해자의(내국인=12; 외국인=21) 수로 계산한 것이다.

외국인들은 본국에서의 문화로 인해 칼이나 무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고 이 때문에 싸움을 하면 폭력의 양상이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내국인 사이에 있는 데,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기를 더 많이 소지하고 다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중국인 상담센터에서 상담일을 하고 있는 조선족인 중국동포에게 중국인들의 무기소지와 폭력에 대하여 물었을 때, 중국인 또는 조선족들이 칼이나 여타 무기를 평소 가지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방어용이나 호신용으로 소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싸울 때 주변에 있는 술병이나 도구를 이용하기는 한다고 하였다.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본 국에서는 치안의 부재와 방어 목적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은 일단 입국할 때 보안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총은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고, 한국 내에서 총을 구하기는 쉽지 않기도 하고 또 한국이 안전하기 때문에 총이나 칼과 같은 무기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마. 내·외국인 폭력가해 양상: 피해정도, 가해자 주취여부, 가해의 원인

〈표 4-14〉는 폭력가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준다. 내국인의 경우 58.3%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처가 났다고 하였고 나머지 경우도 병원에 갈 정도로 다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외국인의 경우 가장 많은 경우가 38.1%로서 다친 곳이 없었고, 나머지도 심각하지 않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갈 정도로 많이 다친 경우는 2건(9.5%) 이었다. 따라서 가해정도가 내·외국인 모두 심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내·외국인 폭력가해 양상: 피해정도, 가해자 주취여부, 가해의 원인(다중응답)

구 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피해정도	다친 곳이 없다.	2(16.7)	8(38.1)	10(30.3)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났다.	7(58.3)	5(23.8)	12(36.4)
	간단히 치료받을 정도로 상처가 났다.	3(25.0)	5(23.8)	8(24.4)
	병원에 갈 정도로 많이 다쳤다.	-	2(9.5)	2(6.1)
	무응답	-	1(4.8)	1(3.0)
	합계	12(100.0)	21(100.0)	33(100.0)
가해자 주취	그렇다.	6(50.0)	11(64.7)	17(51.5)
	아니다.	6(50.0)	8(38.1)	14(42.4)
	무응답	-	2(9.5)	2(6.1)
	합계	12(100.0)	21(100.0)	33(100.0)
가해의 원인 ³²⁾ (다중응답)	기분이 나빠서 단지 화풀이 하려고	3(25.0)	7(33.3)	10(30.3)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보아서	3(25.0)	5(23.8)	8(24.2)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해서	8(66.7)	9(42.9)	17(51.5)
	가족(친구)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돕기 위해서	1(8.3)	-	1(3.0)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1(8.3)	-	1(3.0)
	평소에 차별과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4(33.3)	3(14.3)	7(21.2)
	기타	2(16.7)	4(19.0)	6(18.2)
	사례수	22	28	50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주취상태에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의 경우 절반인 6명의 가해자가 주취상태에서 가해를 했다고 하였고, 외국인의 경우 절반이 넘는 11명(64.7%)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폭력이 가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외국인 모두 음주여부가 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가해의 원인에 대한 조사에서 내국인의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욕을 해서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응답한 것이 6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평소에 차별과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이 33.3%였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아서(25.0%)와 기분이 나빠서 화풀이 하려고(25.0%)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다음이었다. 외국인 가해자의 경우 상대방이 욕을 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 가장 많았고 (42.9%), 기분이 나빠서 단지 화풀이 하려고(33.3%) 가해를 한 경우가 다음이었다.

32) 가해의 원인을 한 가지만 고르는 것이 아닌 모두 선택하도록 하여 응답을 합하면 가해자 수보다 많다. 단, 괄호안의 %는 내·외국인 폭력가해자의(내국인=12; 외국인=21) 수로 계산한 것이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23.8%), 그리고 차별과 무시를 당해서(14.3%) 가해를 한 경우도 폭력가해의 원인이었다. 외국인의 경우 돈이나 물건을 뺏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외국인이 폭력 가해를 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상대방이 자신을 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차별을 했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외국인 폭력가해시의 체류신분 및 피해자의 국적

불법체류자들이 폭력이나 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폭력가해자들의 체류신분을 조사한 결과 등록된 합법체류자인 경우는 13명(61.9%), 불법체류자(미등록)인 경우가 전체의 7명(33.3%)로 조사되었다(〈표 4-15 참조〉).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중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과 미등록 외국인의 수가 각각 1010명 그리고 158명인 것(〈표 4-6〉 참조)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합법체류외국인들이 저지르는 폭력가해의 비율은 1.58%인 것에 비하여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르는 폭력가해의 비율은 4.43%로 조사 되었다. 불법체류자들의 가해비율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외국인 폭력가해자 이면서 불법체류자인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7명의 미등록자 중에서 필리핀 국적자가 6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필리핀 미등록자가 설문조사 시에 과다 표집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 설문에 참여한 필리핀 사람의 수가 99명(〈표 4-4〉참조)인데, 그 중 미등록자가 37명으로 약 37.4%의 필리핀 국적 설문응답자가 미등록 외국인인 것을 알 수 있다(〈표 4-7〉 참조). 이는 다른 외국인에 비하여 과대 표집된 것으로 미등록체류 외국인의 폭력가해 해석하는 데 있어 표본의 편향성 때문에 주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행연구에 의하면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분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합법체류자에 비하여 범죄를 덜 저지른다고 알려져 있다(최영신·강석진, 2012).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의 공식 범죄자료를 분석한 최영신·강석진(2012)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통상 “범죄자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체류자 중에서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대체로 4~6% 정도 낮게 나타난다(87 페이지)”라고 보고하였다. 다년간의 공식 범죄자료 분석결과 반복적으로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이 낮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본 연구와 병행한 심층면담에서도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분노출을 꺼려하여 폭력 가해 행위를 최대한 자제한다고 하였다.

외국인 폭력가해의 피해자가 내국인인지 아니면 다른 외국인인지 조사하였다. 가장 많은 경우가 외국인 본인의 국적과 동일한 국적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였다(42.9%). 다음으로 한국 사람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38.1%).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부터 폭력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 외국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 조사한 결과 8명 중에서 직장상사와 동료가 5명, 친구·선후배가 1명이었고, 모르는 사람은 1명뿐이었다. 따라서 외국인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하는 내국인은 대부분 서로 알고 있는 외국인이면서 주로 직장동료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15〉 외국인 폭력가해 시 체류신분 및 피해자 국적

구 분		외국인
체류신분	등록	13(61.9)
	미등록	7(33.3)
	무응답	1(4.8)
	합계	21(100.0)
피해자 국적	한국	8(38.1)
	본국	9(42.9)
	제3국	1(4.8)
	잘 모르겠음	2(9.5)
	무응답	1(4.8)
	합계	21(100.0)

제3절 내·외국인 폭력범죄 피해 양상과 특성 비교

1. 외국인 폭력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내·외국인 비교)

설문조사에 응한 내·외국인 중에서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내국인은 42명(내국인 전체 500명 중 8.4%), 외국인은 87명(외국인 전체 1209명 중 7.2%)이었다. 내·외국인 폭력피해자 129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성별, 나이, 학력, 그리고 배우자 유무별로 조사하였다(〈표 4-16〉 참조).

내국인의 경우 전체 피해자 42명 중에서 남성이 31명(73.8%)으로 여성 11명(26.2%)보다 많았다. 외국인 또한 전체 폭력 피해 경험자 87명 중에서 남성이 64명(73.6%)으로 여성 23명(26.4%)보다 많았다.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폭력의 피해가 많은 것은 남성 생활양식에 있어서 폭력적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폭력 피해자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20대가 12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40대가 모두 11명씩(26.2%)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30대가 38명으로 피해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43.7%)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22명(25.3%)을 기록한 20대, 18명(20.7%)을 기록한 40대 순이었다.

내국인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숫자가 각각 21명(50%)씩 동일하게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7명(65.5%)으로 없는 경우보다 많았다.

〈표 4-16〉 내·외국인 폭력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별, 나이, 학력, 배우자 유무

	구 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성 별	여 성	11(26.2)	23(26.4)	34(26.4)
	남 성	31(73.8)	64(73.6)	95(73.6)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나 이	20세 ~ 29세	12(28.6)	22(25.3)	34(26.4)
	30세 ~ 39세	11(26.2)	38(43.7)	49(38.0)
	40세 ~ 49세	11(26.2)	18(20.7)	29(22.5)
	50세 이상	8(19.0)	5(5.7)	13(10.1)
	무응답	-	4(4.6)	4(3.1)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학 력	초등 중퇴·졸업	-	1(1.1)	1(0.8)
	중등 중퇴·졸업	-	14(16.1)	14(10.9)
	고등중퇴·졸업	14(33.3)	46(52.9)	60(46.5)
	대학중퇴·졸업	23(54.8)	20(23.0)	43(33.3)
	대학원 이상	5(11.9)	2(2.3)	7(5.4)
	무응답	-	4(4.6)	4(3.1)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배우자유무	배우자 없음	21(50.0)	30(34.5)	51(39.5)
	배우자 있음	21(50.0)	57(65.5)	78(60.5)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이어서 <표 4-17>는 폭력피해자들의 자녀유무, 종교유무, 동거구분, 직장생활여부, 월간소득을 보여준다. 자녀유무의 경우 미혼인 자들이 응답을 하지 않아서 약간의 무응답이 있다. 자녀유무에 응답한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내국인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가 18명(42.9%), 자녀가 없는 경우가 24명(57.1%)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역시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47명(54.0%), 자녀가 없는 피해자가 39명(44.8%)으로 조사되었다. 내국인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 폭력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자들의 종교 유무를 보면, 내국인의 경우 종교가 없는 피해자가 22명(52.4%), 종교가 있는 피해자가 20명(47.6%)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외국인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폭력 피해자가 52명(59.8%)으로 없다고 응답한 피해자(40.2%) 보다 약간 더 많았다.

<표 4-17> 내·외국인 폭력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자녀유무, 종교유무, 동거여부, 직장생활 여부, 월간소득

구 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자녀유무	자녀 없음	24(57.1)	39(44.8)	63(48.8)
	자녀 있음	18(42.9)	47(54.0)	65(50.4)
	무응답	-	1(1.1)	1(0.8)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종교유무	종교 없음	22(52.4)	35(40.2)	57(44.2)
	종교 있음	20(47.6)	52(59.8)	72(55.8)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동거여부	혼자산다	6(14.3)	26(29.9)	32(24.8)
	동거한다	36(85.7)	61(70.1)	97(75.2)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직장생활여부	아니오	5(11.9)	14(16.1)	19(14.7)
	예	37(88.1)	73(83.9)	110(85.3)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월간 소득	0원	5(11.9)	14(16.1)	19(14.7)
	1만원~100만원 이하	2(4.8)	3(3.4)	5(3.9)
	101만원 ~200만원 이하	12(28.6)	51(58.6)	63(48.8)
	201만원~300만원 이하	11(26.2)	12(13.8)	23(17.8)
	301만원~400만원 이하	4(9.5)	1(1.1)	5(3.9)
	400만원 초과	8(19.0)	1(1.1)	9(7.0)
	무응답	-	5(5.7)	5(3.9)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폭력 피해자들의 동거여부 분포를 보면, 내·외국인 모두 혼자 사는 경우보다 동거를 한다고 응답한 피해자가 더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75.2%의 내·외국인 폭력 피해자들이 동거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외국인의 경우 전체 87명의 외국인 폭력 피해자 중 61명(70.1%)이 동거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폭력 피해자들이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내·외국인 폭력 피해자 모두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외국인의 경우 73명(83.9%)이 직장생활을 한다고 했다.

폭력 피해자들의 월간소득 분포를 보면, 내국인의 경우 피해자들의 소득 분포가 저소득자들인 경우가 다수이지만, 400만원을 초과한다고 답한 피해자도 8명(19.0%) 있었다. 반면에 외국인 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전체 피해자 87명중에서 68명(78.2%)이 200만원 이하의 월간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서 내국인 피해자에 비하여 소득 수준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외국인 폭력피해 양상과 특성(내·외국인 비교)

가. 내·외국인 폭력피해 비율 및 피해빈도

〈표 4-18〉은 내·외국인의 폭력피해 여부와 피해빈도를 보여준다. 내국인의 경우 설문응답자 500명 중 42명인 8.4%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였고, 외국인의 경우 1209명 중 87명인 7.2%가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내국인이 약 1.2% 높은 피해율을 보였지만, 내·외국인간의 폭력피해 빈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chi^2=0.735$ df=1 p>0.05). 폭력피해의 빈도는 지난 1년 동안 1번 피해를 본 것이 가장 많았고, 3번 이상 피해를 본 경우는 내·외국인 모두 많지 않았다.

〈표 4-18〉 내·외국인 폭력피해 여부 및 빈도 비교(χ^2 -test)

구 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χ^2 -test
폭력 피해여부	없다	458(91.6)	1,122(92.8)	1,580(92.5)	$\chi^2 = 0.735$ df = 1 p = 0.391
	있다	42(8.4)	87(7.2)	129(7.5)	
	합계	500(100.0)	1,209(100.0)	1,709(100.0)	
폭력 피해빈도	1번	29(69.0)	26(29.9)	55(42.6)	N/A
	2번	7(16.7)	9(10.3)	16(12.4)	
	3번	2(4.8)	1(1.1)	3(2.3)	
	4번 이상	4(9.6)	1(1.1)	5(3.9)	
	무응답	-	50(57.5)	50(38.3)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 : p<0.05, ** : p<0.01, *** : p<0.001

나. 외국인 국적별 폭력피해 여부, 폭력피해 시 체류신분 및 가해자의 국적

외국인 폭력피해자들의 국적별로 빈도를 조사하였다(〈표 4-19〉 참조). 전체 87명의 피해경험자들 중에서 베트남인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몽골(17명), 중국(한족 등)(11명), 필리핀(9명), 인도네시아(8명), 중국(조선족)(8명), 타이(4명), 미국(4명), 스리랑카(1명), 우즈베키스탄(1명) 순이었다. 폭력피해자들을 설문에 응한 외국인의 국적별 집단 내에서의 피해율을 조사한 결과 역시 베트남이 22.9%의 피해율을 보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몽골(15.5%), 필리핀(9.1%), 인도네시아(7.4%), 중국한족(7.1%) 순이었다.

〈표 4-19〉 외국인 국적별 폭력피해 여부 비교

구분		폭력피해 없다	폭력피해 있다	합계
국적	중국(조선족)	208(96.3)	8(3.7)	216(100.0)
	중국(한족 등)	143(92.9)	11(7.1)	154(100.0)
	베트남	81(77.1)	24(22.9)	105(100.0)
	인도네시아	100(92.6)	8(7.4)	108(100.0)
	필리핀	90(90.9)	9(9.1)	99(100.0)
	타이(태국)	109(96.5)	4(3.5)	113(100.0)
	미국	106(96.4)	4(3.6)	110(100.0)
	스리랑카	93(98.9)	1(1.1)	94(100.0)
	우즈베키스탄	99(99.0)	1(1.0)	100(100.0)
	몽골	93(84.5)	17(15.5)	110(100.0)
	합계	1,122(92.8)	87(7.2)	1,209(100.0)

외국인 폭력피해 경험자들이 피해 당시에 체류신분을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 87명 중 미등록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1명(24.1%)이었다(〈표 4-20〉 참조). 〈표 4-6〉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사람 중 등록과 미등록인 사람은 각각 1010명 그리고 158명이다. 이들 수치를 이용하여 등록외국인과 미등록외국인 내에서의 피해율을 계산하면 등록외국인은 6.24%, 미등록외국인은 13.29%의 피해율을 나타냈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들이 합법체류자들 보다 훨씬 더 폭력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외국인 폭력피해 시 체류신분 및 가해자의 국적

구 분		외국인
체류신분	등록	63(72.4)
	미등록	21(24.1)
	무응답	3(3.4)
	합계	87(100.0)
가해자 국적	한국	55(63.2)
	본국	23(26.4)
	제3국	3(5.7)
	잘 모르겠음	3(3.4)
	무응답	1(1.1)
	합계	87(100.0)

폭력피해를 당한 외국인들에게 가해자의 국적을 조사한 결과 한국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한 경우가 6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본국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가 26.4%를 차지하였다(〈표 4-20〉 참조). 국적별 외국인 폭력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베트남 피해자들의 경우 24명의 피해자 중에서 한국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가 17건(70.8%)으로 높게 나타났다. 몽골 폭력피해자의 경우에도 17명의 피해에 대한 가해자 중 한국 사람이 10명(58.8%)이었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에게서 폭력피해를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내·외국인 폭력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장소·시간

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가해를 한 사람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내국인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것이 13건(31%)으로 가장 많았으나, 외국인 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직장동료(32명, 36.8%)가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4-21〉 참조). 외국인의 경우 사장이나 직장상사가 가해자인 경우가 23%로 두 번째로 빈도가 높았다. 즉, 외국인 폭력피해의 가해자들의 절반이상이 직장상사나 동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내·외국인 폭력피해자와 가해자와의관계 및 피해 장소·시간

구 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가해자와의 관계	배우자·애인	6(14.3)	8(9.2)	14(10.9)
	가족·친척	3(7.1)	4(4.6)	7(5.4)
	사장·직장상사	6(14.3)	20(23.0)	26(20.2)
	직장동료	6(14.3)	32(36.8)	38(29.5)
	친구·선후배	2(4.8)	7(8.0)	9(7.0)
	얼굴만 아는 사람	5(11.9)	5(5.7)	10(7.8)
	모르는 사람	13(31.0)	10(11.5)	23(17.8)
	기타	1(2.4)	1(1.1)	2(1.6)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피해장소	집·거주지 주변	11(26.2)	15(17.2)	26(20.2)
	직장	13(31.0)	48(55.2)	61(47.3)
	음식점·술집	9(21.4)	10(11.5)	19(14.7)
	길거리·공원 등 실외	5(11.9)	5(5.7)	10(7.8)
	은행·관공서 등	1(2.4)	-	1(0.8)
	지하철·버스 등	1(2.4)	1(1.1)	2(1.6)
	기타	2(4.8)	5(5.7)	7(5.4)
	무응답	-	3(3.4)	3(2.3)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피해시간	주중	26(61.9)	-	26(20.2)
	주말	12(28.6)	-	12(9.3)
	잘 모르겠음	4(9.5)	-	4(3.1)
	무응답	-	87(100.0)	87(67.4)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폭력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내·외국인 모두 직장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장소는 집이나 거주지 주변이었다.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내국인은 21.4%였으나 외국인은 11.5%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외국인의 경우 폭력 가해자가 절반이상이 직장상사나 동료인 것과 더불어 폭력피해 장소 또한 55%가 직장인 것으로 나타나서 유흥업소 소란으로 인한 폭력 피해보다 직장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상사나 동료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폭행은 심층면담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중국동포는 직장 상사가 욕하고 발로차고 손찌검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괜히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잦다고 하였다. 본 조사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직장에서 폭력피해를 많이 당한다는 사실을 설문조사와 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폭력피해가 발생한 시간에 대한 질문에 외국인의 경우 응답이 없었다. 내국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주중에 발생했다고 하여 주말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라. 내·외국인 폭력피해 양상: 가해자수, 쌍방피해 여부, 피해방법, 무기종류

〈표 4-22〉은 폭력피해의 양상에 대한 것이다. 폭력피해를 당할 때 가해자가 몇 명인지 조사한 결과 1명인 경우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공통으로 가장 많았다.

〈표 4-22〉 내·외국인 폭력피해 양상: 가해자수, 쌍방폭행여부, 피해방법(다중응답), 무기종류

구 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가해자수	1명	28(66.7)	58(66.7)	86(66.7)
	2명	9(21.4)	15(17.2)	24(18.6)
	3명	3(7.1)	2(2.3)	5(3.9)
	4명	1(2.4)	3(3.4)	4(3.1)
	5명 이상	1(2.4)	4(4.6)	5(3.9)
	무응답	-	5(5.7)	5(3.9)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쌍방폭행 여부	나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25(59.5)	54(62.1)	79(61.2)
	나도 상대방을 때려서 상대방도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	15(35.7)	19(21.8)	34(26.4)
	기타	2(4.8)	11(12.6)	13(10.1)
	무응답	-	3(3.4)	3(2.3)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피해방법 ³³⁾ (다중응답)	붙잡거나 흔들었다.	22(52.4)	28(32.2)	50(38.8)
	손으로 때렸다.	22(52.4)	37(42.5)	59(45.7)
	이로 물어뜯었다.	1(2.4)	1(1.1)	2(1.6)
	발로 찼다.	12(28.6)	16(18.4)	28(21.7)
	머리로 들이받았다.	2(4.8)	4(4.6)	6(4.7)
	무기를 사용했다.	6(14.3)	13(14.9)	19(14.7)
	기타	7(16.7)	11(12.6)	18(14.0)
	사례수	72	110	182
무기종류 ³⁴⁾	칼	-	4(30.8)	4(21.1)
	몽둥이	3(50.0)	1(7.7)	4(21.1)
	술병	-	4(30.8)	4(21.1)
	기타	3(50.0)	4(30.8)	7(36.8)
	합계	6(100.0)	13(100.0)	19(100.0)

외국인의 경우 폭력피해를 당할 때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27.5%로 가해자가 1명인 경우인 66.7%보다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가해경험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다. <표 4-13>에 의하면 외국인 폭력가해자의 52.4%가 단독으로 가해를 했다고 응답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폭력피해를 당할 때 본인도 가해를 했는지 조사한 결과 내·외국인 모두 일반적으로 피해를 당하기만 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응답은 <표 4-13>에서 폭력 가해자들에게 쌍방폭행 여부를 물었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만 피해를 당했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폭력 가해자들은 상대방도 자기에게 폭력을 사용 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Sykes와 Matza(1957)의 중화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다. 보통 가해자들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화의 기술을 이용하는데, 폭력가해자의 경우 상대방도 나를 때렸다고 중화하기 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폭력 피해자들은 설사 자기가 물리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밀치거나 붙잡고 했더라도 방어라고 간주하고 쌍방 가해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표 4-13>과 <표 4-22>사이의 쌍방폭행 여부에 대한 결과차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일방적인 폭력피해에 대하여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폭력피해자들에게 주로 가해를 한 사람은 한국인 직장 상사나 동료였다(<표 4-20>, <표 4-21> 참조). 직장 동료나 상사가 직장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맞대응하여 쌍방폭행으로 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나 체류 신분 때문에 비록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심하게 저항하게 되면 폭력가해로 변할 수 있고 이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다.

33) 폭력 피해방법은 가해자가 사용했던 방법을 모두 고르라고 질문하여 합계의 수가 피해자 수보다 많다. 단, 괄호안의 %는 내·외국인 폭력피해자의(내국인=42; 외국인=87) 수로 계산한 것이다.

34) 피해방법에서 “무기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 대답한 것이다. 단, 괄호안의 %는 내·외국인 폭력피해자의(내국인=42; 외국인=87) 수로 계산한 것이다.

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조사한 결과 외국인의 경우 손으로 맞은 경우(37명, 42.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붙잡히거나 흔들린 경우(28명, 32.2%)였다. 외국인 피해자 중에서 무기를 사용하여 폭력피해를 당했다고 한 경우는 14.9%로 내국인 피해자가 무기를 이용해 피해를 당했다고 한 14.3%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무기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무기는 외국인의 경우 칼과 술병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체 87명 중에서 4명인 것을 계산 하면 약 4.6%의 피해자들이 칼 또는 술병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내·외국인 폭력피해 양상: 피해정도, 피해자·가해자 주취여부, 피해이유

〈표 4-23〉은 폭력피해 양상 중에서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취 여부, 그리고 피해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것을 보여준다. 먼저 피해의 정도를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간단히 치료 받을 정도로 상처가 난 경우가 28.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8.0%가 간단한 치료를 요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외국인 피해자들은 다친 곳이 없거나(47.1%),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난 경우(28.7%)가 많았다. 따라서 경미한 폭력피해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폭력 피해 시에 피해자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내·외국인 모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한 것이 약 70%대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의 주취 여부에 대한 응답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내국인의 경우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가했다고 한 경우가 59.5%였으나, 외국인의 경우 28.7%만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였다. 58.6%의 가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를 한 것이다.

〈표 4-23〉 내·외국인 폭력피해 양상: 피해정도, 피해자·가해자 주취여부, 피해이유(다중응답)

구 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피해 정도	다친 곳이 없다.	12(28.6)	41(47.1)	53(41.1)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났다.	9(21.4)	25(28.7)	34(26.4)
	간단히 치료받을 정도로 상처가 났다.	12(28.6)	7(8.0)	19(14.7)
	병원에 갈 정도로 많이 다쳤다.	9(21.4)	10(11.5)	19(14.7)
	무응답	-	4(4.6)	4(3.1)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피해자 주취	그렇다.	13(31.0)	18(20.7)	31(24.0)
	아니다.	29(69.0)	61(70.1)	90(69.8)
	무응답	-	8(9.2)	8(6.2)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가해자 주취	그렇다.	25(59.5)	25(28.7)	50(38.8)
	아니다.	14(33.3)	51(58.6)	65(50.4)
	잘 모르겠다.	3(7.1)	8(9.2)	11(8.5)
	무응답	-	3(3.4)	3(2.3)
	합계	42(100.0)	87(100.0)	129(100.0)
피해 이유 ³⁵⁾ (다중 응답)	특별한 이유 없이	32(76.2)	49(56.3)	81(62.8)
	외모가 특이해서	5(11.9)	17(19.5)	22(17.1)
	말이 서툴러서	4(9.5)	31(35.6)	35(27.1)
	시키는 일을 잘 하지 못해서	7(16.7)	28(32.2)	35(27.1)
	힘이 약해 보여서	19(45.2)	25(28.7)	44(34.1)
	내가 먼저 욕을 하거나 때려서	8(19.0)	3(3.4)	11(8.5)
	불법체류 때문에 신고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	18(20.7)	18(14.4)
	외국인을 싫어해서	-	34(39.1)	34(26.4)
사례수	75	205	280	

이러한 차이는 〈표 4-21〉에서 드러났듯이 내국인의 경우 집이나 음식점·술집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나, 외국인의 경우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해이유에 대한 분석결과 내·외국인 피해자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특별히 외국인을 싫어해서(39.1%), 말이 서툴러서(35.6%) 그리고 시키는 일을 잘 하지 못해서(32.2%) 폭력피

35) 피해이유를 모두 선택하도록 하여 각 항목의 합이 전체 피해자 수보다 많다. 단, 괄호안의 %는 내·외국인 폭력피해자의(내국인=42; 외국인=87) 수로 계산한 것이다.

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체류 때문에 신고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18건(20.7%)정도 피해의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체류신분이 불법인 것이 폭력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내·외국인 폭력피해 대응방식, 미신고 이유, 경찰조치 만족도

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표 4-24>에 따르면 내·외국인 피해자 모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표 4-23>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국인의 경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 경우가 42.9%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한 경우와 응답수가 동일했는데, 비교적 신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25.3%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서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내국인의 경우 절반의 경우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였고, 그 다음으로 45.8%의 내국인은 여러 가지로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외국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인 경우(29.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여러 가지로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16.9%)였다.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 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6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이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4.6%에 불과해 경찰을 신뢰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4〉 내·외국인 폭력피해 대응방법(다중응답), 미신고 이유(다중응답), 경찰조치 만족도

구 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피해 대응방법 ³⁶⁾ (다중응답)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18(42.9)	33(37.9)	51(39.5)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다.	7(16.7)	10(11.5)	17(13.2)
	상당기관 등에 도움을 구했다.	9(21.4)	13(14.9)	22(17.1)
	경찰에 신고했다.	18(42.9)	22(25.3)	40(31.0)
	기타	3(7.1)	15(17.2)	18(14.0)
	무응답	-	1(1.1)	1(0.8)
	사례수	55	94	149
신고하지 않은 이유 ³⁷⁾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12(50.0)	19(29.2)	31(34.8)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7(29.2)	10(15.4)	17(19.1)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서	7(29.2)	7(10.8)	14(15.7)
	보복이 두려워서	5(20.8)	5(7.7)	10(11.2)
	경찰이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6(25.0)	3(4.6)	9(10.1)
	여러 가지로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11(45.8)	11(16.9)	22(24.7)
	언어 소통이 안될 것 같아서	-	8(12.3)	8(9.0)
	불법체류 사실이 노출될까봐	-	6(9.2)	6(6.7)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	3(4.6)	3(3.4)
	기타	-	4(6.2)	4(4.5)
	무응답	-	15(23.1)	15(16.9)
합계	24(100.0)	65(100.0)	89(100.0)	
신고한 경우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³⁸⁾	매우 불만	4(22.2)	5(22.7)	9(22.5)
	약간 불만	4(22.2)	4(18.2)	8(20.0)
	조금 만족	5(27.8)	10(45.5)	15(37.5)
	매우 만족	5(27.8)	2(9.1)	7(17.5)
	무응답	-	1(4.5)	1(2.5)
	합계	18(100.0)	22(100.0)	40(100.0)

외국인들에 대한 면담자료를 살펴보면 한국경찰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본국의 치안상황이 열악하고 또한 본국 경찰의 경우 장비도 부족하고 부패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 사회는 안전하고 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36) 피해대응 방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여 복수의 응답 때문에 각 항목의 합이 전체 피해자 수보다 많다. 단, 괄호안의 %는 내·외국인 폭력피해자의(내국인=42; 외국인=87) 수로 계산한 것이다.

37)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내국인=24; 외국인=65)에게만 질문하였다. 미신고 이유로 1, 2 순위로 응답한 것을 모두 표로 만들었다.

38) 경찰에 신고했다고 응답한 사람(내국인=18; 외국인=22)에게만 질문하였다.

대부분 친절하며 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 같다고 묘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라고 경찰관들이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찰이 강력해보이고 엄격해 보이는 점이 약간 거리를 두게 하고 가장 큰 문제는 경찰관들이 외국어(영어나 중국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도움요청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표 4-24>에서 12.3%의 외국인 미신고자들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불법체류사실이 노출될까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9.2%에 해당하여 체류신분 때문에 피해사실을 숨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4.6%)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의 조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 조사한 결과 조금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한 것이 54.6%로 매우 불만과 약간 불만을 합한 40.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이 불만족 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나타났다. 내국인의 경우에도 만족이 55.6%로 불만족 보다 약간 높게 나와서 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제4절 소결

1.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양상과 특성

가. 내국인과 외국인 간 폭력가해 정도 차이 없음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폭력가해 가담한 사람의 빈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외국인이 더 폭력적일 것이라고 하는 가설은 경찰의 공식자료뿐만 아니라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 자료에서도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외국인 폭력가해의 피해자는 주로 본국출신의 지인

외국인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대상의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이 가하는 폭력범죄 피해자의 상당수가 직장동료(33.3%)나 친구·선후배(19.0%)로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전체 폭력가해의 66.7%였고, 폭력가해의 피해자의 절반정도가 본국 출신 또는 제3국 출신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폭력가해의 피해자가 한국 사람인 경우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낯선 한국 사람에 대한 폭력은 한국인 피해자 8명 중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외국인에 의한 폭력 가해 시 피해자는 주로 외국인인 것을 알 수 있고 드물게 내국인이 피해를 당하는데, 이 경우 직장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내국인이 외국인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주로 당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2인 이상의 공동 폭행 비율이 높음

외국인 폭력범죄 양상에 대한 공식 범죄통계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폭력범죄 발생 비율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다중의 공격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에서도 반영이 되었다. 내국인의 경우 폭력 가해 시에 자신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가담한 비율이 25%인 데 비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폭력에 가담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6%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폭력가해가 이루어질 때 피해자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61.9%로 나타났고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14.3%로 대부분의 경우 쌍방폭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폭력 가해 시 무기사용 거의 없음

외국인은 폭력가해 시에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폭력가해 시에 무기를 사용한 경우는 내국인이 16.7%, 외국인이 4.8%로 오히려 내국인보다 비율이 낮았다. 외국인이 폭력을 행사할 때 주로 사용한 방법은 손으로 때린 경우와 붙잡고 흔든 경우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무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가한 경우에도 칼이나 기타 소지한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다가 손에

잡힌 술병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면담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국에서 무기가 허용된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에서 무기소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한국은 총기 소지가 어렵고, 또한 매우 안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무기소지의 필요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곳이라는 점과 무기를 가지고 다닐 경우 오히려 불법 행위로 경찰에 단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외국인이 특별히 위험한 무기를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은 편견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외국인 폭력 가해의 주요 원인은 차별과 무시

외국인 폭력 가해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미리 계획을 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기분이 나쁘거나 욕을 듣고서 또는 평상시 차별과 무시를 당해서 화김에 폭력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외국인의 경우 드물게 폭력을 행사하지만, 대부분 차별과 무시를 당했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유 없이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2. 외국인 폭력범죄 피해 양상과 특성

가. 외국인 폭력 피해의 가해자는 주로 직장 내 한국인

외국인 폭력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 사람이 63.2%로 가장 많았다. 피해빈도가 가장 높았던 베트남의 경우 70.8%의 폭력피해가 한국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 폭력피해자들이 한국 사람에 의하여 폭력피해를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폭력피해자와 이들을 가해한 사람의 관계를 보면 직장동료가 36.8% 그리고 직장상사가 23%로 주로 직장사람들에 의하여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당하는 장소 역시 55.2%가 직장에서 당한다고 응답하여 외국인에 대한 직장 내 폭력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한국인 직장 상사나 동료가 비자와 체류 신분 때문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폭력의 피해자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폭행피해 시 가해자는 주로 1명이었고(66.7%), 맞대응해서 쌍방 폭행

이 된 경우는 21.8%로 적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직장 동료나 상사가 직장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맞대응하여 쌍방폭행으로 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나 체류 신분 때문에 비록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심하게 저항하게 되면 피해가 가해로 변하게 되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다.

나. 상징적 폭력으로 인한 폭력피해

외국인 폭력피해의 이유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한 경우가 5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을 싫어해서(39.1%), 말이 서툴러서(35.6%), 시키는 일을 잘 하지 못해서(32.2%), 불법체류 때문에 신고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20.7%) 순이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직장 상황 내에서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갈등상황을 가져올 수 있고, 신분상의 취약성이 폭력피해에 쉽게 노출되게 하며 더불어 한국인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단순히 외국인이 싫어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낮은 폭력 피해 신고율

외국인이 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는 25.3%였다. 내국인 피해자의 경찰 신고율이 42.9%인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신고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29.2%),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로 일이 복잡해 질까봐(16.9%)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어서, 언어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서, 불법체류 사실이 노출 될까 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소수지만 있었다.

제5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외국인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장 현 석

외국인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제1절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유발요인

본 장에서는 외국인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내국인과 비교하면서 분석하였다. 먼저, 제 4장에서 서술했듯이 내국인은 전체 500명 중 12명이 폭력가해를 했다고 응답하였고, 외국인의 경우 전체 1,209명 중에서 21명이 폭력가해를 했다고 응답하였다. 폭력가해 경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후 진행되는 폭력가해-비가해 집단 간 평균비교나 폭력가해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함을 미리 밝혀 둔다. 범죄 또는 폭력에 대한 가해·피해 경험을 조사하는 많은 설문조사 연구에서 가해 또는 피해 사례수가 적게 보고되어 분석에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연구들이 흔히 경험하는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폭력범죄를 유발하는 4개의 요인을 선정하고 이들 요인에 있어서 내·외국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표 5-1〉 참조). 먼저 상징적 폭력 요인으로서 이는 우리사회에서 표출되는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긴장을 의미한다(Bourdieu, 1989; 김정규, 2015).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에서 제시하는 범죄유발의 한 요인인 '부정적 자극의 생성'으로 볼 수도 있는 요인으로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폭력 유발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징적 폭력의 경우 피부색과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외국인이 특별히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차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1〉 내·외국인 폭력범죄 유발요인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폭력 유발 요인	설문항목	로딩	평균값	신뢰도
일상생활 차별	집 주변 동네	.812	1.94	.878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847	1.97	
	상점·음식점 등	.867	1.98	
	공공기관(주민센터·경찰서·은행 등)	.835	1.80	
	직장·일터	.756	2.15	
직장생활 차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771	2.03	.792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월급은 적었다	.806	2.52	
	사장(상사), 직장동료가 나를 무시하거나 욕을 했다	.839	2.23	
	사장(상사), 직장동료가 나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730	1.55	
일반 긴장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	.606	2.18	.800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803	2.00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807	2.16	
	직장(집안)일 때문에 짜증이 난다	.800	2.18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서 힘들다	.710	1.95	
낮은 자기 통제력	나는 지금 당장 이익이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한다	.488	1.85	.673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499	1.96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긴다	.635	1.71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644	1.4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731	1.35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692	1.65	
무기 허용도	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칼이나 망치 등(무기)을 갖고 다닌다	.739	1.23	.882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칼이나 망치 등(무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846	1.47	
	작은 칼이나 망치 등(무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싸움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898	1.41	
	칼이나 망치 등(무기)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것은 싸움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869	1.43	
	내가 누군가와 싸울 때, 칼이나 망치 등이 있으면 더 안전할 것이다	.792	1.58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상징적 폭력으로서 일상생활 또는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을 측정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두 번째로 고려한 요인은 일반긴장이론에서 도출한 긴장요인이다. 상징적 폭력이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 자극의 생성에 초점을 맞춘데 반하여, 일반적인 긴장

요인은 Agnew(1992)가 이론에서 제시한 주요한 세 가지 긴장발생요인들인 부정적 자극의 생성, 긍정적 자극의 소멸, 목표달성의 실패를 측정한 것이다. 이러한 긴장요인들이 폭력범죄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이 보고되어 있다(Agnew & White, 1992; Warner & Fowler, 2003).

세 번째로 고려한 폭력유발 요인은 낮은 자기통제력이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일반적인 범죄의 원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폭력범죄 또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이 여타 상황적 요인이 충족되었을 때 폭력을 행사한다고 주장 한다. 낮은 자기통제력이 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후속연구에서 검증되었다(Piquero, MacDonald, Dobrin, Daigle & Cullen, 2005; 민수홍, 2014).

네 번째로 고려한 요인은 무기허용도이다.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와 법률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허용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무기소지와 사용에 보다 허용적인 태도가 실제 폭력사용가능성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려하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네 가지 폭력범죄 유발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1>과 같다. 각 문항들은 4점 척도(1=전혀 없다 ~ 4=많이 있었다 또는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응답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내·외국인 폭력범죄 유발요인 평균 비교

폭력범죄 유발요인으로 일상생활 차별, 직장생활 차별, 일반긴장, 자기통제력, 그리고 무기허용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폭력유발 요인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표 5-2>는 상징적 폭력 요인 중에서 일상생활 차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한 내·외국인의 평균점수가 1점(전혀 없었다)에서 2점(거의 없었다)에 머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차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내·외국인의 상징적 폭력요인(일상생활 차별) 평균 비교

설 문 문 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집 주변 동네	내국인	500	1.93	-0.154
	외국인	1,209	1.94	
②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내국인	500	2.05	2.497*
	외국인	1,209	1.93	
③ 상점·음식점 등	내국인	500	1.95	-0.943
	외국인	1,209	2.00	
④ 공공기관(주민센터·경찰서·은행 등)	내국인	500	1.71	-3.208**
	외국인	1,209	1.84	
⑤ 직장·일터	내국인	500	1.80	-10.143***
	외국인	1,209	2.30	
일상생활 차별	내국인	500	1.89	-2.964**
	외국인	1,209	2.00	

* : p<0.05, ** : p<0.01, *** : p<0.001

외국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을 느꼈다고 한 곳은 주민센터·경찰서·은행과 같은 공공기관과 직장·일터였다. 두 곳에서의 차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특히 차별을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는 곳은 직장·일터였다(평균차이=0.50, t=-10.143, p<0.001). 특이한 점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외국인이 인식하는 차별이 내국인 보다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평균차이=0.12, t=2.497, p<0.05). 또한 집 주변이나 동네근처 그리고 상점, 음식점 등에서는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하여 특별히 더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5개 문항 전체에 대한 내·외국인 평균을 비교하면 외국인이 0.11정도 더 차별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964, p<0.01). 정리하자면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 내국인에 비하여 서비스가 좋지 않고 또한 직장에서 가장 심하게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내·외국인의 상징적 폭력요인(직장생활 차별) 평균 비교

설 문 문 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내국인	471	1.95	-2.278*
	외국인	989	2.07	
②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월급은 적었다	내국인	471	2.34	-4.689***
	외국인	989	2.60	
③ 사장(상사), 직장동료가 나를 무시하거나 욕을 했다	내국인	471	2.12	-3.131**
	외국인	989	2.28	
④ 사장(상사), 직장동료가 나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내국인	471	1.41	-5.286***
	외국인	989	1.62	
직장생활 차별	내국인	471	1.95	-4.908***
	외국인	989	2.14	

* : $p<0.05$, ** : $p<0.01$, *** : $p<0.001$

〈표 5-3〉은 상징적 폭력 요인 중에서 직장생활 차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한 내·외국인의 평균점수가 1점(전혀 없었다)에서 2점(거의 없었다)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차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에 제시된 직장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내국인들에 비하여 차별에 대한 인식이 더 큰 것으로 조사 되었다.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은 ‘②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 하고 월급은 적게 받는 다’는 인식이다(평균차이=0.26, $t=-4.689$, $p<0.001$). 그 다음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직장 상사나 동료가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것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평균차이=0.21, $t=-5.286$, $p<0.001$). 그리고 ‘①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③직장동료로부터 욕설이나 무시를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더 크게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개 문항 전체의 평균을 내·외국인간 비교한 것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평균차이=0.19, $t=-4.908$, $p<0.001$), 직장생활 전반에 있어서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들에 대한 상징적 폭력(일상생활·직장생활 차별)은 그들이 한국사회에 정착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외국인들이 내국인

공동체와 교류하고 유대를 형성하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들은 외국인 공동체와의 유대만을 중요시하고 주류사회로부터는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신동준, 2012). 외국인들이 인식하는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편견과 차별이 한국사회에 대한 유대는 제한적이게 하고 상대적으로 외국인들끼리 뭉치게 하여 본국사람들끼리의 유대는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국 사람들 간 또는 외국인들 간의 유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민사회에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미국에서 흑백간의 지역적 분리는 오랫동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Peterson & Krivo, 1993). 따라서 내국인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역사회와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5-4〉는 일반적인 긴장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한 내·외국인의 평균점수가 역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2점(별로 그렇지 않다)에 머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일반긴장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내·외국인의 일반긴장요인 평균 비교

설 문 문 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	내국인	500	2.32	4.886***
	외국인	1,209	2.12	
②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내국인	500	2.16	5.351***
	외국인	1,209	1.93	
③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내국인	500	2.39	6.842***
	외국인	1,209	2.06	
④ 직장(집안)일 때문에 짜증이 난다	내국인	500	2.35	5.204***
	외국인	1,209	2.11	
일반 긴장	내국인	500	2.21	4.836***
	외국인	1,209	2.05	

* : p<0.05, ** : p<0.01, *** : p<0.001

내국인과 외국인의 일반긴장 요인의 평균비교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 있어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더 많은 긴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네 문항의 평균을

비교한 분석에서도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하여 일반긴장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이=0.16, $t=4.836$, $p<0.001$).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긴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생활여건이나 경제적 사정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외국인들이 인식하는 일반적인 긴장은 한국 사람들 보다 약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들의 일반긴장 수준이 내국인 보다 낮은 것은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이주하여 사는 것이 본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즉,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성공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민 1세대는 대부분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부푼 꿈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같은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국인에게는 힘들고 짜증나고 하기 싫은 것일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고 계속하고 싶은 일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한국사회에서 생활하지만 외국인들은 내국인들에 비하여 긴장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ampson(2006)과 Wadsworth(2010)의 연구에 의하면 이민 2세나 3세대의 경우 범죄율이 높았으나 이민 1세대는 오히려 내국인 보다 범죄율이 낮았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기회의 땅에 정착한 1세대 외국인들은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상대적으로 범죄를 유발하는 긴장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5-5〉는 자기통제력에 있어서 내·외국인 간에 평균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표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점수가 높으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것으로서 측정 되었다. 전반적으로 여섯 개 개별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이 내·외국인 모두 1점에서 2점이어서 자기통제력이 대부분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여섯 개의 자기통제력 측정 문항 중에서 4번과 5번 항목을 제외하고 내국인의 자기통제력이 외국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근소한 차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전체 여섯 문항의 평균을 비교한 것도 내국인의 자기통제력이 외국인의 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이=0.14, $t=5.521$, $p<0.001$). ‘④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문항에 대하여는 유일하게 외국인의 자기통제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이=0.10, $t=-2.806$, $p<0.01$).

〈표 5-5〉 내·외국인의 자기통제력 평균 비교

설 문 문 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나는 지금 당장 이익이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한다	내국인	500	2.06	7.811***
	외국인	1,209	1.77	
②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내국인	500	2.07	3.642***
	외국인	1,209	1.91	
③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긴다	내국인	500	1.85	4.583***
	외국인	1,209	1.65	
④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내국인	500	1.37	-2.806**
	외국인	1,209	1.47	
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 있다	내국인	500	1.38	0.958
	외국인	1,209	1.34	
⑥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내국인	500	1.84	5.761***
	외국인	1,209	1.58	
자기통제력	내국인	500	1.76	5.521***
	외국인	1,209	1.62	

* 높은 점수가 낮은 자기 통제력을 나타낸다.

* : p<0.05, ** : p<0.01, *** : p<0.001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을 제시한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외국의 많은 연구에서 이론이 검증되었고(Piquero et al., 2005), 내국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민수홍(2014)은 낮은 자기통제력이 폭력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내국인과 비교하여 외국인들의 자기통제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내국인에 비하여 외국인들이 범죄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일반이론에 따르면 여타 상황적 요인이 충족되어야 범죄로 이어진다고 하나, 범죄의 중요한 필요조건인 자기통제력에 있어서 외국인이 더 높은 통제력을 보인 것은 의미가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식통계에서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제 3장 분석 참조)를 간접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6〉은 무기허용에 대한 내·외국인의 태도를 비교한 것이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각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가 1점대(전혀 그렇지 않다)에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으로 무기허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내·외국인이 무기허용도에 대하여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내·외국인 무기허용도 평균 비교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칼이나 망치 등(무기)을 갖고 다닌다	내국인	500	1.32	3.790***
	외국인	1,209	1.20	
②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칼이나 망치 등(무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내국인	500	1.79	10.701***
	외국인	1,209	1.34	
③ 작은 칼이나 망치 등(무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싸움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내국인	500	1.69	10.079***
	외국인	1,209	1.30	
④ 칼이나 망치 등(무기)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것은 싸움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내국인	500	1.68	9.100***
	외국인	1,209	1.33	
⑤ 내가 누군가와 싸울 때, 칼이나 망치 등이 있으면 더 안전할 것이다	내국인	500	1.92	10.994***
	외국인	1,209	1.44	
무기허용도	내국인	500	1.68	11.100***
	외국인	1,209	1.32	

* : $p < 0.05$, ** : $p < 0.01$, *** : $p < 0.001$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들의 무기허용에 대한 태도가 내국인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5개 문항 전부에 걸쳐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무기허용도가 낮았다. 5개 문항전체를 이용한 무기허용도에 대한 평균비교에서도 역시 외국인의 평균이 내국인 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왔다(평균차이=0.36, $t=11.10$, $p < 0.001$).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는 외국인들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에서도 뒷받침된다. 중국인들이 무기를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의견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본국에서는 무기를 소지하고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총도 없고 매우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폭력가해자들에 대한 질문에서 실제 무기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낮게 나타난 것(〈표 4-13〉 참조)은 무기허용도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하여 외국인들이 무기허용도와 실제 무기사용 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폭력유발요인이 폭력가해에 미친 영향(내·외국인 평균 비교)

앞서 살펴본 폭력유발요인들이 폭력가해에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내·외국인 중에서 폭력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사이의 폭력유발요인에 대한 평균 비교를 하였다. 〈표 5-7〉은 폭력가해여부에 따른 폭력유발

요인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이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차별에 대한 인식의 경우 내국인은 폭력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평균차이=0.61, $t=-3.016$, $p<0.01$). 외국인의 경우에도 폭력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가해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평균 0.33점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t=-2.163$, $p<0.05$). 직장생활 차별에 대한 인식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있어서 폭력가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있어서 직장생활에서 인식하는 차별이 폭력가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유발 요인으로서 일반긴장의 경우 외국인은 폭력가해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내국인의 경우 폭력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평균차이=0.61, $t=-3.560$, $p<0.001$).

<표 5-7> 폭력가해여부에 따른 폭력유발요인 평균 비교

폭력 유발요인	집단	폭력가해여부	사례수	평균	t
일상생활 차별	내국인	없다	488	1.87	-3.016**
		있다	12	2.48	
	외국인	없다	1,188	2.00	-2.163*
		있다	21	2.33	
직장생활 차별	내국인	없다	459	1.94	-2.823**
		있다	12	2.46	
	외국인	없다	973	2.14	-2.188*
		있다	16	2.58	
일반 긴장	내국인	없다	488	2.19	-3.560***
		있다	12	2.80	
	외국인	없다	1,188	2.05	-.334
		있다	21	2.10	
자기통제력	내국인	없다	488	1.75	-3.414***
		있다	12	2.18	
	외국인	없다	1,188	1.62	-1.664
		있다	21	1.83	
무기허용도	내국인	없다	488	1.67	-1.653
		있다	12	1.98	
	외국인	없다	1,188	1.31	-2.815**
		있다	21	1.62	

* : $p<0.05$, ** : $p<0.01$, *** : $p<0.001$

일상생활 차별, 직장생활 차별, 그리고 일반긴장에 있어서 폭력가해자들의 평균점수가 폭력가해를 하지 않은 사람들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모두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차별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부정적 자극으로 인식되어져 긴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자극이 낮은 자기통제력이나 범죄 친구 등 범죄발생의 다른 요인과 결합할 때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외국인 모두의 경우에서 일상생활 차별과 직장생활 차별이 폭력가해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으나, 일반긴장 변수에 있어서는 내국인은 폭력가해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지만, 외국인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해석은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이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4>에 대한 해석에서 설명했듯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한국 사회가 내국인들에게는 긴장을 많이 발생시켰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성공의 기회를 찾아온 곳으로서 본국에서는 제한되어 있던 목표달성의 수단을 한국에서 찾은 경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긴장요인에 영향을 덜 받았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긴장에 대한 인식이 외국인의 경우 폭력가해 여부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수 있다.

자기통제력의 경우 내국인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폭력가해 경험이 있는 내국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평균점수가 0.43점 높았다($t=-3.414$ $p<0.001$). 외국인의 경우 자기통제력이 폭력가해유무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일반이론에 대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Piquero et al., 2005).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본 연구에서만 나타나는 측정의 오류로 인한 것인지는 후속연구와 외국인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기허용도에 대한 평균비교에서는 외국인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폭력가해경험이 있는 외국인이 그렇지 않은 외국인보다 평균점수가 0.3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815$ $p<0.01$). 즉 외국인의 경우 무기허용도와 폭력가해 여부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억제요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폭력을 억제하는 요인들로 사회유대와 가족애착을 측정하기로 하고 설문조사에 포함하였다. 사회유대(Social Cohesion)가 강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Sampson, Raudenbush와 Earl(1997)은 사회유대가 강한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공동의 선을 위하여 서로 관여하면서 범죄나 폭력을 줄인다는 집합적 효능성(Collective efficacy)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지역수준과 더불어 개인수준에서 사회유대가 강한 사람이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 직장에 대한 유대,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는 본국사람들에 대한 사회유대도 포함하였다.

가족에 대한 애착 또한 범죄 억제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개념이다. 가족에 대한 애착은 주로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성인의 범죄와 관련해서도 많이 이용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성인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애착, 자녀에 대한 애착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Sampson & Laub, 1995). 본 연구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본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폭력 사용을 더 억제할 것이라는 가설을 적용하여 연구에 포함하였다.

〈표 5-8〉은 설문에 사용된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요인분석에서 각 개념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모두 하나의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묶였고, 문항들은 각 개념을 측정하는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들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 응답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내·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각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점(별로 그렇지 않다)에서 3점(대체로 그렇다)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8〉 내·외국인 폭력범죄 억제요인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폭력억제요인	설문항목	로딩	평균값	신뢰도
사회유대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802	2.68	.775
	나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	.729	2.67	
	나는 직장사람들과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낸다	.763	3.04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직장 동료가 있다	.806	2.86	
본국사람 유대 (외국인)	나는 본국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서로 이야기하며 친하게 지낸다	.878	3.20	.696
	급할 때 약간의 돈을 빌릴 수 있는 본국 사람이 있다	.878	3.05	
가족애착	나는 늘 가족을 생각하며 행동한다	.892	3.40	.871
	나는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891	3.49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892	3.51	

1. 내·외국인 폭력범죄 억제요인 평균 비교

폭력범죄 억제요인으로 사회유대, 본국사람유대 그리고 가족애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폭력 억제요인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표 5-9〉는 사회유대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하여 내·외국인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한 내·외국인의 평균점수가 2점(별로 그렇지 않다)에서 3점(대체로 그렇다) 사이에 형성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두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유대를 측정한 것으로 두 문항 모두에서 내국인의 평균점수가 외국인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반면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문항은 직장에서의 유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두 문항 모두에서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에 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유대는 약하지만, 직장에서는 오히려 내국인 보다 높은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오기 때문에 직장에는 본국에서 같이 온 동료도 있고,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외국인간에 평균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문항은 2번 문항으로서 외국인들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내국인에 비하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이=0.66, $t=16.03$, $p<0.001$). 네 문항 전체의 평균

을 이용하여 계산한 사회유대의 경우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평균점수가 0.16점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t=5.18, p<0.001$).

〈표 5-9〉 내·외국인의 사회유대 평균 비교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내국인	500	2.87	6.57***
	외국인	1,209	2.61	
② 나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	내국인	500	3.14	16.03***
	외국인	1,209	2.48	
③ 나는 직장 사람들과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낸다	내국인	500	2.95	-3.38***
	외국인	1,209	3.07	
④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직장 동료가 있다	내국인	500	2.76	-3.35***
	외국인	1,209	2.90	
사회유대	내국인	500	2.93	5.18***
	외국인	1,209	2.77	

* : $p<0.05$, ** : $p<0.01$, *** : $p<0.001$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낮은 사회유대 평균을 나타낸 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보다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이 길지 않은데 한국사회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 비하여 어려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5-10〉은 외국인들에게 본국 사람들에 대한 유대를 알아본 것이다. 본국 사람 유대는 외국인들에 대하여만 측정되었으므로 내·외국인간의 평균비교 검증은 하지 않았다. 문항 1과 2 모두 평균점수가 3점(대체로 그렇다)을 넘는 것으로 보아서 외국인들의 경우 본국 사람들에 대한 유대가 대체로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9〉에서 외국인의 사회유대 평균점수가 2.77인데 비하여 본국 사람에 대한 유대 평균 점수가 3.13인 것을 보면 외국인들의 한국생활에서 본국 사람들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10〉 내·외국인의 본국사람유대 평균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① 나는 본국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서로 이야기하며 친하게 지낸다	외국인	1,209	3.20
② 급할 때 약간의 돈을 빌릴 수 있는 본국 사람이 있다	외국인	1,209	3.05
본국사람 유대	외국인	1,209	3.13

가족애착에 대한 내·외국인간의 평균비교는 〈표 5-11〉에 제시되었다. 가족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세 문항 모두에서 외국인의 애착 평균점수가 내국인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왔다. 세 문항의 평균을 이용해 계산한 가족애착 점수에 있어서도 역시 외국인의 평균점수가 내국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평균차이=0.34, $t=-10.79$, $p<0.001$).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가족에 대한 애착이 조금 더 강하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1〉 내·외국인의 가족애착 평균 비교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나는 늘 가족을 생각하며 행동한다	내국인	500	3.12	-10.87***
	외국인	1,209	3.51	
② 나는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내국인	500	3.31	-6.80***
	외국인	1,209	3.56	
③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내국인	500	3.24	-11.01***
	외국인	1,209	3.63	
가족애착	내국인	500	3.23	-10.79***
	외국인	1,209	3.57	

* : $p<0.05$, ** : $p<0.01$, *** : $p<0.001$

2. 폭력억제요인이 폭력가해에 미친 영향(내·외국인 평균 비교)

앞서 살펴본 폭력억제요인들이 폭력가해 여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내·외국인 중에서 폭력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사이의 폭력억제요인에 대한 평균 비교를 하였다. 〈표 5-12〉는 폭력가해여부에 따른 폭력억제요인 평균비교를 한 결과이다.

〈표 5-12〉 폭력가해여부에 따른 폭력억제요인 평균 비교

폭력 억제 요인	집단	폭력가해여부	사례수	평균	t
사회유대	내국인	없다	488	2.93	0.771
		있다	12	2.81	
	외국인	없다	1,188	2.76	-0.509
		있다	21	2.85	
가족애착	내국인	없다	488	3.24	2.776**
		있다	12	2.78	
	외국인	없다	1,188	3.57	0.200
		있다	21	3.54	
본국사람 유대 (외국인만)	외국인	없다	1,188	3.13	1.390
		있다	21	2.88	

* : p<0.05, ** : p<0.01, *** : p<0.001

먼저 사회유대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있어서 폭력가해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 평균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사회유대는 내·외국인 모두에 있어서 폭력가해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유대가 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족애착의 경우 내국인의 경우에서만 폭력가해자 보다 비가해자의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고(평균차이=0.46, t=2.776, p<0.01), 외국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외국인들에게만 측정된 본국인 유대의 경우 폭력가해경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타나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폭력억제요인으로 고려된 요인들은 내·외국인 모두에 있어서 폭력가해를 억제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내·외국인 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지금까지 폭력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일상생활 차별, 직장생활 차별, 자기통제력, 일반긴장, 그리고 무기허용도에 대하여 내·외국인간 평균비교와 폭력가해경험자와 비가해경험자간의 평균비교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폭력범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사회유대, 가족애착, 그리고 본국인 유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비교를 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여러 가지 폭력유발요인과 억제요인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동시에 분석모형에 포함시켜서 폭력발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분석에 사용될 종속변수는 폭력가해행위 여부이다. 본 설문조사는 내국인 500명과 외국인 1,209명이 포함되어있는데, 내국인 중에서 폭력가해행위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명, 외국인 중에는 21명이었다. 따라서 전체 1,709명의 설문참여자 중에서 33명만이 폭력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폭력가해행위에 가담한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될 독립변수 선정을 할 때, 무응답으로 인한 사례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SPSS에서는 독립변수에 무응답이 있을 경우 해당 사례 모두를 삭제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 경우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고 응답한 사례마저 삭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직장생활 차별 변수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내·외국인의 경우 설문에서 응답하지 않았기 많은 수의 무응답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직장생활 차별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 중에 폭력가해 경험이 있는 사례수가 많아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 차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분석결과의 왜곡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경우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로 성별, 연령, 학력이 폭력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서 포함하였고(박형민 외, 2010), 가족이 생기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폭력을 자제하게 된다는 이론적 설명이 있다(Sampson & Laub, 1995). 따라서 배우자 유무를 폭력가해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체류신분이 미등록인지 여부를 포함하였다.

먼저 내·외국인 전체를 포함시켜서 폭력범죄 발생여부에 대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13〉 참조).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은 폭력유발 요인들로 일상생활 차별, 일반긴장, 자기통제력, 무기허용도가 폭력억제 요인들로 사회유대, 가족애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가 포함되었다. 전체 1,709건에서 여러 독립변수를 포함하면서 무응답 사례가 많아져서 136건이 분석에서 제외 되어 최종 회귀모형에는 1573건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분석한 로지스틱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하였고($X^2=29.37$, $df=10$, $P<0.001$),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변량의 약 10%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gelkerke $R^2=0.100$).

〈표 5-13〉 내·외국인 폭력가해행위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N=1,573)

	B	SE	Wald	Odd Ratio
일상생활 차별	0.609	0.243	6.280	1.839*
일반긴장	0.301	0.294	1.047	1.351
낮은 자기통제	0.294	0.260	1.278	1.342
무기허용도	0.408	0.269	2.304	1.504
사회유대	0.294	0.296	0.985	1.342
가족애착	-0.484	0.271	3.190	0.616
성별	0.916	0.436	4.421	2.499*
연령	-0.001	0.018	0.004	0.999
학력	-0.221	0.224	0.978	0.802
배우자유무	0.311	0.418	0.553	1.364
상수항	-6.247	1.825	11.715	0.002
모형 적합도	$\chi^2=29.37, df=10, P<0.001$			
	Nagelkerke $R^2=0.100$			

† : P<0.10, * : P<0.05

폭력유발요인 가운데 일상생활 차별이 폭력가해와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0.609, Odd Ratio=1.839, p<0.05). 폭력억제요인들 중에서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변수는 없었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에서 성별만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서 남자가 여자보다 약 2.5배 더 폭력가해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B=0.916, Odd Ratio=2.499, p<0.05).

다음으로 내국인만 별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표 5-14〉 참조). 내국인의 경우 무응답으로 인한 사례 손실이 없어서 설문에 응한 500명 전체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한 로지스틱 모형의 적합도는 문제가 없었고($\chi^2=23.78, df=10, P<0.01$),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 변량의 2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gelkerke $R^2=0.229$).

〈표 5-14〉 내국인 폭력가해행위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N=500)

	B	SE	Wald	Odd Ratio
일상생활 차별	0.899	0.510	3.108	2.457
일반긴장	1.456	0.648	5.042	4.289*
낮은 자기통제	0.526	0.797	0.436	1.692
무기허용도	-0.179	0.506	0.125	0.836
사회유대	0.543	0.649	0.700	1.721
가족애착	-1.223	0.604	4.097	0.294*
성별	-0.147	0.673	0.048	0.863
연령	0.036	0.037	0.962	1.037
학력	0.532	0.534	0.992	1.702
배우자유무	-0.556	0.792	0.493	0.574
상수항	-10.948	4.125	7.043	0.001**
모형 적합도	$\chi^2=23.78, df=10, P<0.01$			
	Nagelkerke $R^2=0.229$			

† : P<0.10, * : P<0.05

종속변수인 폭력가해여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변수는 폭력유발 요인들 중에서 일반긴장이(B=1.456, Odd Ratio=4.289, p<0.05) 그리고 폭력억제 요인들 중에서 가족애착이었다(B=-1.223, Odd Ratio=0.294, p<0.05). 목표달성의 실패, 부정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거나, 기존의 긍정적인 상황이 없어질 때 발생하는 긴장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반면에 폭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국인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존의 내·외국인 전체 분석에서와는 다르게 본국인 유대라는 변수를 포함시켰다(〈표 5-15〉 참조).

〈표 5-15〉 외국인 폭력가해행위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N=1,073)

	B	SE	Wald	Odd Ratio
일상생활 차별	0.562	0.297	3.579	1.754†
일반긴장	-0.185	0.374	0.244	0.831
낮은 자기통제	0.309	0.286	1.167	1.362
무기허용도	0.825	0.351	5.532	2.281*
사회유대	0.600	0.391	2.360	1.822
본국인유대	-0.572	0.320	3.207	0.564†
가족애착	-0.069	0.403	0.029	0.933
성별	1.722	0.753	5.232	5.598*
연령	-0.008	0.025	0.103	0.992
학력	-0.406	0.278	2.131	0.666
배우자유무	0.901	0.568	2.521	2.462
상수항	-6.640	2.588	6.581	0.001
모형 적합도	$X^2=26.37, df=11, P<0.01$			
	Nagelkerke $R^2=0.139$			

† : P<0.10, * : P<0.05

본국인유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본국 출신 사람들과 형성하는 유대를 측정하는 변수로, 외국인의 폭력억제 요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전체 1,207명의 외국인 응답자 중에서 136명이 변수 중 적어도 하나에서 무응답이 있어서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최종 1,073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모형의 모델 적합도는 적절하였고 ($X^2=26.37, df=11, P<0.01$), 종속변수 변량의 13.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gelkerke $R^2=0.139$).

분석결과 폭력유발요인 중에서 일상생활 차별이 폭력가해에 신뢰도 9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0.562, Odd Ratio=1.754, p<0.10). 제1종 오류(α)의 수준을 0.1로 놓았을 경우에 유의미하여 관계가 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받는 상징적 차별이 외국인의 폭력가해 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14〉의 내국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폭력유발요인 중에서 일반긴장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내국인의 경우 한국사회 내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긴장 상황이 폭력가해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어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생의 목표달성(금전적 성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반면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상징적 차별은 외국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폭력가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폭력유발요인 중에서 무기허용도 또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B=0.825$, $\text{Odd Ratio}=2.281$, $p<0.05$). 내국인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기허용도에 대한 내·외국인의 평균비교에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유의미하게 허용도가 높게(〈표 5-6〉 참조) 나타나서 전반적인 무기허용도에서는 내국인이 더 높다. 이는 내국인의 경우 폭력가해경험자와 비가해 경험자간에 무기허용도에 차이가 별로 없지만, 외국인의 경우 폭력가해 경험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무기허용도를 보여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표 5-7〉의 분석결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무기허용도는 낮으나, 소수이지만 폭력가해자들의 경우 무기허용도가 폭력가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억제요인으로 모형에 포함된 사회유대, 본국인유대, 그리고 가족애착 가운데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 것은 본국인유대 뿐이었다. 사회유대이론에 의하면 강한 사회유대는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여 폭력과 범죄를 억제 하지만(Sampson et al., 1997), 본 조사의 경우 단순히 한국사회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폭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본국사람들과의 유대는 폭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B=-0.572$, $\text{Odd Ratio}=0.564$, $p<0.10$). 따라서 외국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하여 본국인들 간의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유대 보다 본국인에 대한 유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고용허가제 또는 방문취업제도로 입국하여 3년 또는 연장해서 5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지역사회와 유대를 형성하기 힘들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내국인에 대한 로지스틱분석에서는 가족애착이 폭력억제요인으로 작용했으나(〈표 5-14〉 참조) 외국인은 그렇지 않았다. 많은 외국인들이 가족을 본국에 두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본국인들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는 성별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서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

가해를 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B=1.722$, $\text{Odd Ratio}=5.598$, $p<0.05$). 내국인의 경우 성별이 유의미하지 않아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폭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폭력에 더 많이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행연구와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Featherstone, Hearn, & Toft, 1996).

제4절 소결

1. 외국인 폭력범죄 유발 요인에 대한 시사점

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상징적 폭력이 외국인 폭력가해에 영향을 주었음

외국인들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모두 내국인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더 차별 대우를 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외국인들이 상징적 폭력의 피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외국인들이 내국인 공동체와 교류하고 유대를 형성하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하여 외국인들은 외국인 공동체하고만 교류하고, 지역사회인 한국 사회로 부터는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신동준, 2012). 본국 사회에 대한 유대가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한국사회에 대한 유대를 형성할 필요성도 있다. 상징적 폭력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 근거 없는 차별이다. 비록 외국인이 느끼는 정도가 아직 심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의 한국사회 동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긴장이론을 적용하면 상징적 폭력은 긴장 발생요인인 부정적 자극의 생성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폭력의 원인이 된다(Agnew, 1992).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 차별과 직장생활 차별이 외국인 폭력 가해 여부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더 나아가 폭력 가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상징적 폭력이 폭력 가해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본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도 일상생활 차별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서 일반긴장이론이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노동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과 편견 긴장을 발생시켜 범죄로 연결되고, 외국인의 범죄는 비록 그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내국인들에게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범죄자라는 낙인을 지우고 이러한 낙인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한다(신동준, 2012: 189-196).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긴장을 발생시켜 범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외국인에 대한 범죄자 낙인을 찍고 이러한 낙인은 차별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강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신동준, 2012: 208).

나. 무기허용도와 외국인 폭력 가해

무기허용도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 비교에서 외국인의 무기허용도가 내국인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외국인은 무기를 소지하고 다닐 것이라는 편견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폭력가해자들에 대한 분석과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폭력 가해자 집단과 가해를 하지 않은 외국인 집단 간의 무기허용도에 대한 평균 비교에서 폭력 가해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보여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도 무기허용도가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외국인의 폭력 가해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경우 무기허용도가 낮고 실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폭력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무기 허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외국인의 무기허용도가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내국인 보다 무기허용도 평균점수가 낮은 것을 보면(〈표 5-7〉 참조) 외국인 폭력 가해자들의 무기허용도가 내국인에 비하여는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다.

2. 외국인 폭력 억제 요인에 대한 시사점

사회유대의 경우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일반적인 한국사회에 대한 유대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2점대 후반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다”사이에서 대체로 그런 경우에 치우치는 응답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만 조사한 본국사람 유대의 경우 평균점수가 3.13으로 나와서 사회유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대한 일반적 유대보다 본국 사람에 대한 유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외국인의 경우 사회유대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본국사람 유대는 폭력가해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본국사람에 대한 유대가 강한 사람이 폭력가해를 덜 저질렀다고 나타났다.

본국인에 대한 유대가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신동준, 2012: 188). Sampson et al.(2005)의 미국 연구에서도 히스페닉 공동체의 안정적인 유지가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듯이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의 본국사람들에 대한 유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를 보았을 때 한국 사회에 대한 유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한 유대는 약화되고, 본국 사람에 대한 유대만 강화되면 자칫 외국인 커뮤니티가 분리 고립되게 되고 이는 외국인이 사는 거주 지역이 지역적 낙인과 같은 부정적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신동준, 2012). 이는 다시 외국인에 대한 상징적 폭력과 같은 편견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신동준, 2012; 김정규, 2015).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대부분이 단기간 취업을 목적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주류 사회에 유대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영구이민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동화하려는 동기 또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들 간에 본국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더불어 한국 지역사회와 서로 교류하는 방안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유대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과 더불어 영주권 부여와 같은 인구 유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외국인의 폭력 및 법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최영신

외국인의 폭력 및 법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제1절 폭력에 대한 태도의 집단별 차이

1.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 분석

폭력에 대한 태도는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폭력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김준호·김선애, 1992)]에서 사용했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폭력의 필요성, 훈육적 폭력, 폭력에 대한 긍·부정적 태도, 폭력의 효율성 등에 해당하는 15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서,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폭력의 필요성(요인1)', '훈육적 폭력(요인2)', '폭력에 대한 거부(요인3)', '폭력의 효율성(요인4)'의 4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15개 문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조사자료의 분석과정에서 15개 문항 중에서 '폭력에 대한 거부'에 해당하는 한 개 문항('사람 간에 말이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란 별로 없다')이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에서 공통변량(communality)이 0.22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지 분석에서는 해당 문항을 제외시켰다³⁹⁾. 결국 이 연구에서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에

39) 커뮤날리티는 특정 변인의 모든 요인적재치를 제공하여 합한 것으로, 모든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특정 변인의 변량의 비율을 알려주는 값이다. 커뮤날리티의 값이 작으면 요인에서 차지하는 변인의 중요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시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40 이하이면 탈락시킨다.

활용된 하위영역별 문항은 다음의 <표 6-1>에 제시된 14개 문항이다.

<표 6-1> 폭력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

요 인	문 항
폭력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발전을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옳지 않은 법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 폭력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기도 한다 -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훈육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식을 때려 키우지 않아 아이들의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다 -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 필요하다면 교사의 심한 체벌도 허용되어야 한다
폭력에 대한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간에 말이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란 별로 없다(분석 제외 문항) - 폭력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 폭력은 추방되어야 한다 - 폭력은 결국 대화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폭력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소한 일은 법적 해결보다 폭력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 말이나 법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 많은 경우에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출처: 김준호·김선애(199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43-45면 참조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김준호·김선애, 1992)는 한국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폭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탐색적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하면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면 될수록 보편적인 폭력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폭력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대하여 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있다(김준호·김선애, 1992:177).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폭력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대하여 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1992년에 수행된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김준호·김선애, 1992)에서는

폭력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15개 문항에서 4개의 요인을 추출하고 각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요인명을 ‘폭력의 필요성’, ‘훈육적 폭력’, ‘폭력에 대한 거부’, ‘폭력의 효율성’이라고 부여하였다. ‘폭력의 필요성’은 폭력에 대한 사용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 문항으로서 역사발전을 위해서는 폭력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나 옳지 않은 법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것과 같이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훈육적 폭력’은 훈육적인 폭력에 대한 태도로서 부모의 사랑의 매와 교사의 체벌 허용에 해당하며, ‘폭력에 대한 거부’는 ‘폭력의 필요성’과는 반대되는 태도로서 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해당하는 문항이며, ‘폭력의 효율성’은 폭력의 현실적 효율성으로서 현실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면 일이 쉽게 처리되거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1992년에 실시한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가 15개 문항에서 추출된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2016년에 실시한 본 연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 6-2>는 1992년에 사용된 폭력에 대한 태도의 15개 문항을 조사한 후 결과 분석에서 공통변량이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14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요인분석한 것이다. 2016년에 조사된 자료에서는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가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된다.

<표 6-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N=500)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 많은 경우에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822	.000	.123
- 사소한 일은 법적 해결보다 폭력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783	-.035	.155
- 말이나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779	-.041	.077
- 폭력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기도 한다	.741	-.211	.205
- 옳지 않은 법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738	-.095	.212
- 사회발전을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676	-.135	.317
-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615	-.130	.284
- 폭력은 추방되어야 한다	-.148	.861	-.091
- 폭력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144	.851	-.052
-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101	.807	-.005
- 폭력은 결국 대화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010	.652	.012
-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183	-.018	.894
- 자식을 때려 키우지 않아 아이들의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다	.269	-.039	.849
- 필요하다면 교사의 심한 체벌도 허용되어야 한다	.323	-.034	.727
고유치(Eigen value)	4.09	2.64	2.37

〈표 6-2〉에 제시된 3개의 요인을 살펴보면, 요인1은 ‘폭력의 효율성’(①많은 경우에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②사소한 일은 법적 해결보다 폭력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③말이나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과 ‘폭력의 필요성’(①폭력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기도 한다, ②옳지 않은 법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③사회발전을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④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에 해당하는 문항 7개로 구성되었다. 요인1에서는 ‘폭력의 효율성’과 ‘폭력의 필요성’이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성격으로 묶여서 나타나는데, 이는 1992년 연구에서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에서 ‘폭력의 효율성’과 ‘폭력의 필요성’이 서로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었던 것과 다른 점이다.

요인2에는 ‘폭력의 거부’에 해당하는 네 개 문항(①폭력은 추방되어야 한다, ②폭력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③폭력은 결국 대화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이 모두 포함된다.

다음으로 요인3은 ‘훈육적 폭력’에 해당하는 3개 문항(①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②자식을 때려 키우지 않아 아이들의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다, ③필요하다면 교사의 심한 체벌도 허용되어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2년 조사에서는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이 4개로 분류되었으나 2016년 실시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가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1992년 조사에서는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이 서로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구분되지 않는다. 문항의 요인 부하량에서도 ‘폭력의 효율성’에 해당하는 문항의 부하량이 .822, .783, .779로서 차례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이어서 ‘폭력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각각 .741, .738, .676, .615를 차지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은 ‘폭력의 효율성’과 ‘폭력의 필요성’을 구분하여 의식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2016년 자료에서는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1992년과 비교하여 폭력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폭력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폭력에 대한 거부’와 ‘훈육적 폭력’ 요인은 1992년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2016년 조사에서

는 ‘폭력에 대한 거부’가 두 번째 요인으로 분류되어 ‘훈육적 폭력’요인보다 고유치(eigen value)가 더 컸는데, 1992년 조사에서는 ‘훈육적 폭력’이 두 번째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나.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다음의 <표 6-3>은 외국인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태도, 14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외국인 대상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는 한국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첫 번째 요인에서는 ‘폭력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4개 문항과 ‘폭력의 효율성’에 해당하는 3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서 추출되었다. 외국인의 첫 번째 요인에 해당하는 7개 문항은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첫 번째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과 일치한다.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두 번째 요인은 ‘훈육적 폭력’에 해당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세 번째 요인은 ‘폭력에 대한 거부’에 해당하는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6-3>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N=1,209)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 사회발전을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798	.213	-.025
- 많은 경우에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785	.201	.000
- 말이나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717	.061	.083
- 폭력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기도 한다	.715	.266	-.072
- 옳지 않은 법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691	.259	.059
-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593	.355	-.032
- 사소한 일은 법적 해결보다 폭력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549	-.006	.157
-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198	.845	-.003
- 필요하다면 교사의 심한 체벌도 허용되어야 한다	.199	.826	.071
- 자식을 때려 키우지 않아 아이들의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다	.309	.768	.015
- 폭력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062	.072	.763
- 폭력은 추방되어야 한다	-.017	.047	.744
-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091	.009	.722
- 폭력은 결국 대화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117	-.058	.670
고유치(Eigen value)	3.61	2.35	2.15

〈표 6-2〉와 〈표 6-3〉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모두 3개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요인의 내용 구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내국인과 외국인 집단에서 모두 ‘폭력의 효율성’과 ‘폭력의 필요성’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두 개 요인에는 ‘폭력에 대한 거부’와 ‘훈육적 폭력’이 속한다. 다만 각 집단에서 추출된 두 번째 요인과 세 번째 요인의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폭력에 대한 거부’가 두 번째 요인이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훈육적 폭력’이 두 번째 요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폭력의 효율성’과 ‘폭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경계가 강하지 않아 폭력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폭력에 대한 거부’와 ‘훈육적 폭력’에 대한 인식구조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내국인과 외국인 집단의 두 번째 요인과 세 번째 요인의 순서가 서로 다르므로 각 집단에서 각 요인의 설명력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중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중국인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태도의 14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4〉와 같다. 〈표 6-4〉를 보면, 중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인이나 외국인 전체의 요인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중국인의 경우에는 폭력에 대한 태도, 14개 문항이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중국인의 경우에는 ‘폭력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3개 문항과 ‘폭력의 효율성’에 속하는 ‘많은 경우에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는 문항이 요인1로 분류되었으며, 다음으로 ‘폭력에 대한 거부’의 4개 문항이 요인2로, 세 번째로 요인3은 ‘훈육적 폭력’에 해당하는 3개 문항과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폭력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그리고 네 번째 요인에는 ‘폭력의 효율성’에 해당하는 2개 문항이 분류되었다.

중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를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의 분석결과와 비교해보면,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을 구분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92년 실시한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1992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 요인이 더욱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2016년 조사에서 중국인의 경우에는 폭력의 효율성에 해당하는 문항 한 개가 폭력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문항과 함께 요인1로 분류되어 폭력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일부 혼합되어 있는 모양새를 보인다. 그렇지만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국인은 한국인에 비하여 폭력의 효율성을 폭력의 필요성과 구분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4〉 중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N=370)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 사회발전을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806	-.051	.136	.242
- 옳지 않은 법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769	-.028	.172	.160
- 많은 경우에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736	-.026	.125	.356
- 폭력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기도 한다	.718	-.089	.366	-.192
-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073	.809	-.122	.185
- 폭력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104	.802	.080	-.157
- 폭력은 추방되어야 한다	-.022	.751	-.038	-.228
- 폭력은 결국 대화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011	.567	-.038	.097
-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024	-.139	.769	.236
- 필요하다면 교사의 심한 체벌도 허용되어야 한다	.159	.042	.712	.140
- 자식을 때려 키우지 않아 아이들의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다	.207	.061	.624	.114
-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374	-.165	.606	-.037
- 사소한 일은 법적 해결보다 폭력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146	.015	.301	.740
- 말이나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473	-.072	.163	.707
고유치(Eigen value)	2.77	2.25	2.19	1.50

라. 몽골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제3장의 공식 범죄통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적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전체범죄와 폭력범죄 모두에서 인구 대비 검거인원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지 몽골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체범죄유형의 인구 대비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보다 낮지만, 폭력범죄에서는 내국인보다 높다(〈표 3-14〉 참조). 〈표 6-5〉는 몽골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6-5〉 몽골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N=110)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 폭력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기도 한다	.722	-.051	.035	.055
- 사회발전을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697	-.023	.201	.301
-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687	.042	.121	-.125
- 많은 경우에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671	-.101	.122	.460
- 옳지 않은 법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533	.531	.353	-.170
- 폭력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083	.855	.126	.096
- 폭력은 추방되어야 한다	-.011	.840	.032	.237
-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044	.708	-.202	-.082
-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017	-.248	.858	.131
- 자식을 때려 키우지 않아 아이들의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다	.164	.180	.839	.116
- 필요하다면 교사의 심한 체벌도 허용되어야 한다	.275	.054	.718	-.296
- 사소한 일은 법적 해결보다 폭력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233	-.102	.027	.734
- 폭력은 결국 대화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114	.277	-.036	.571
- 말이나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508	.167	.013	.541
고유치(Eigen value)	2.65	2.45	2.21	1.70

〈표 6-5〉에서 몽골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폭력에 대한 태도가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며, 각 요인은 대체로 ‘폭력의 필요성’, ‘폭력에 대한 거부’, ‘훈육적 폭력’, ‘폭력의 효율성’에 해당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 요인별 문항에는 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각 요인은 주요 해당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요인1은 ‘폭력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문항이 주를 이루지만 ‘많은 경우에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는 폭력의 효율성에 해당하는 문항이 1개 포함되어 있고, 요인4는 ‘폭력의 효율성’에 해당하는 2개 문항 이외에 ‘폭력은 결국 대화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폭력에 대한 거부’에 해당하는 문항이 1개 포함되어 있다. 즉 몽골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에 대하여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폭력은 결국 대화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문항에 대하여 ‘폭력

에 대한 거부'로 해석하기 보다는 폭력의 효율성과 대화부족의 상관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몽골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2개 문항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폭력의 필요성', '폭력에 대한 거부', '훈육적 폭력', '폭력의 효율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1992년 조사된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폭력 전반에 대한 일반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한국인과 외국인 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 자료분석 결과를 기초로 종합해보면, 한국인과 외국인 전체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모두 3개 요인으로 분류되고 각 요인의 세부 문항 구성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1992년 자료에 나타난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이다. 1992년 자료에서는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이 각각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어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나 2016년에 이루어진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이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서 추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거 1990년대와 비교하여 최근에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력에 대한 태도에서 폭력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폭력의 효율성과 폭력의 필요성이 하나로 묶여진 요인에서 폭력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나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사람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효율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하위 집단 중에서 인구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과, 폭력범죄 비율이 내국인보다 높은 몽골인의 경우에 폭력에 대한 태도의 구조적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요인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인과 몽골인의 경우에는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에서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이 서로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어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체 외국인의 요인분석결과와 차이가 있지만, 1992년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와는 보다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인과 몽골인의 경우에 4개 요인이 '폭력의 필요성', '폭력에 대한 거부', '훈육적 폭력', '폭력의 효율성'의 순서로 동일하게 추출되어 두 집단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요컨대, 한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인과 외국인 집단 간에는 폭력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구조적 요인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을 구분하기 보다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폭력에 대한 거부, 그리고 훈육적 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과 몽골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국인에 비하여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1992년도에 실시된 연구(김준호·김선애, 1992: 43-45)에서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1992년도 조사자료에서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이 구분되어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2016년도에 조사된 중국인과 몽골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20년 전에 조사된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준다.

2. 폭력에 대한 태도의 집단별 차이

가. 외국인의 국적별 폭력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 비교

이 연구에서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태도를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6-3>에서와 같이 폭력에 대한 태도가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1992년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가 4개 요인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1992년 연구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을 4개로 가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균값을 비교하기로 한다. 4개 요인은 ‘폭력의 필요성’(4개 문항), ‘훈육적 폭력’(3개 문항), ‘폭력에 대한 거부’(4개 문항), ‘폭력의 효율성’(3개 문항)이다.

<표 6-6>에서 각 요인의 평균값은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각각 1점에서 4점까지 긍정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각 요인별로 합산한 문항의 점수를

문항수로 나누어준 값이다. 각 요인의 평균값은 각 요인에 대한 해당 집단의 응답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표 6-6〉 국적별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값

국 적 \ 요 인	폭력의 필요성	훈육적 폭력 허용	폭력의 효율성	폭력에 대한 거부
한 국(N=500)	1.94	2.08	2.01	3.17
중 국(N=370)	1.57	1.72	1.68	3.31
베트남(N=105)	2.05	2.43	1.95	3.37
인도네시아(N=108)	1.86	1.94	1.72	2.95
필리핀(N=99)	1.72	2.20	2.18	2.97
타 이(N=113)	2.02	2.11	1.80	3.35
미 국(N=110)	1.59	1.35	1.72	3.37
스리랑카(N=94)	1.77	3.58	1.61	3.63
우즈베키스탄(N=100)	1.58	1.55	1.88	3.26
몽 골(N=110)	1.94	2.07	1.95	3.44
전 체(N=1,709)	1.80	2.03	1.86	3.26

〈표 6-6〉은 조사대상자의 국적별로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값을 조사대상자 전체에서 살펴보면, ‘폭력의 필요성’의 평균값은 1.80점, 폭력의 효율성은 1.86점, ‘훈육적 폭력 허용’은 2.03점, ‘폭력에 대한 거부’는 3.26점의 순서로 나타난다. ‘폭력의 필요성’의 평균값이 1.8점이라는 것은 응답자의 평균적인 점수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과 ‘별로 그렇지 않다’의 2점 사이에서 2점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폭력의 효율성’은 ‘폭력의 필요성’보다 약간 높지만 폭력의 필요성과 비슷한 응답분포를 나타낸다. ‘훈육적 폭력 허용’은 2.03점으로서 응답자의 평균값이 ‘별로 그렇지 않다’의 2점과 ‘대체로 그렇다’의 3점 사이에서 ‘별로 그렇지 않다’쪽에 치우쳐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폭력에 대한 거부’는 평균값이 3.26점으로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값은 대개의 응답자가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조사대상자들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폭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며, 훈육적 폭력의 허용에 대해서 긍정하는 태도가

일부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폭력의 효율성, 폭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적별로 '폭력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타이와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평균값이 한국인보다 높으며, 나머지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모두 낮다. 특히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탄의 평균값은 각각 1.57, 1.59, 1.58로서 매우 낮은 편이다.

'훈육적 폭력' 요인의 평균값을 보면,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평균값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유독 '훈육적 폭력'의 평균값이 3.5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해당 국적의 응답자들은 대부분 '훈육적 폭력'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에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베트남, 필리핀, 타이, 몽골의 '훈육적 폭력'의 평균값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 우즈베키스탄, 중국의 평균값은 낮은 편이다.

'폭력의 효율성'은 국적별로 평균값의 변동폭이 가장 적은 요인이다. 폭력의 효율성의 평균값이 한국인보다 높은 국적은 필리핀이 2.18점으로 유일하며, 한국인의 2.01점보다 0.17점 정도 높다.

'폭력에 대한 거부' 요인은 모든 국적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보다 '폭력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점수가 낮은 외국인은, 즉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국적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두 개 국적에 불과하다. 다른 국적 외국인들은 모두 '폭력에 대한 거부'에서 한국인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여 대부분의 외국인은 폭력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 있다.

나. 집단별 폭력에 대한 태도의 평균 차이 검증

폭력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4개 요인의 평균값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값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집단은 외국인 전체 집단, 중국인, 몽골인, 미국인을 구분하여 내국인과 비교하기로 한다. 먼저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 집단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내국인과 중국인, 내국인과 몽골인의 평균값을 비교하기로 한다. 중국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60%정도를 차지하는 집단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하며, 몽골인의 경우에는 다른 외국인 집단보다 공식

범죄통계에서 드러난 폭력범죄의 검거인원지수가 높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인은 이주노동자가 아닌 집단으로서 선진국 외국인을 대표하여 폭력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1)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평균 비교

다음의 <표 6-7>은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값의 차이 검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6-7>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요인별 평균 비교

내 용 구 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폭력의 필요성	내국인	500	1.94	4.392***
	외국인	1,209	1.75	
폭력의 효율성	내국인	500	2.01	5.122***
	외국인	1,209	1.80	
훈육적 폭력 허용	내국인	500	2.08	1.522
	외국인	1,209	2.01	
폭력에 대한 거부	내국인	500	3.17	-4.378***
	외국인	1,209	3.30	

*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6-7>을 보면, 폭력에 대한 태도의 4개 요인 중에서 '훈육적 폭력 허용'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요인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평균값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에서는 내국인이 각각 1.94점, 2.01점을 나타내어 외국인의 1.75점, 1.80점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폭력에 대한 거부'에서는 내국인이 3.17점으로 외국인의 3.30보다 낮은 평균값을 보여 준다. 즉 내국인은 외국인에 비하여 폭력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폭력에 대한 거부에서는 외국인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내국인은 외국인보다 폭력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폭력에 대한 거부에서는 외국인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훈육적 폭력 허용' 요인에서는 내국인의 평균값이 외국인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아니다. 즉 내국인과 외국인은 '훈육적 폭력 허용'과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2) 한국인과 중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평균 비교

〈표 6-8〉은 한국인과 중국인 집단 간에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인과 중국인 간에는 폭력에 대한 태도의 4개 요인에서 모두 평균값의 차이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인은 '폭력의 필요성', '폭력의 효율성', '훈육적 폭력의 허용', 3개의 요인에서 중국인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고, '폭력에 대한 거부'에서는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평균값이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즉, 한국인은 중국인과 비교하여 '폭력의 필요성', '폭력의 효율성', '훈육적 폭력의 허용'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폭력에 대한 거부'에서는 중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은 폭력에 대한 태도 관련 4개의 요인 모두에서 중국인보다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은 중국인과 비교하여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이고, 훈육적 폭력에 대해서도 더 많이 허용적이며, 폭력에 대한 거부감은 좀 낮은 편이다.

〈표 6-8〉 한국인과 중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 비교

내용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폭력의 필요성	한국인	500	1.94	7.813***
	중국인	370	1.57	
폭력의 효율성	한국인	500	2.01	6.689***
	중국인	370	1.68	
훈육적 폭력 허용	한국인	500	2.08	7.480***
	중국인	370	1.72	
폭력에 대한 거부	한국인	500	3.17	-3.649***
	중국인	370	3.31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6-9〉 조선족과 한족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 비교

내용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폭력의 필요성	조선족	216	1.59	0.743
	한족	154	1.55	
폭력의 효율성	조선족	216	1.80	3.964***
	한족	154	1.52	
훈육적 폭력 허용	조선족	216	1.73	0.633
	한족	154	1.69	
폭력에 대한 거부	조선족	216	3.28	-1.100
	한족	154	3.35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중국인의 하위 집단인 조선족과 한족 간에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6-9〉와 같이 나타난다. 조선족과 한족 간에는 폭력에 대한 태도의 3개의 요인에서는 집단 간에 평균값에 차이가 없으며, 단지 '폭력의 효율성'에서는 조선족이 한족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다. 즉, 조선족은 한족보다 폭력의 효율성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다른 3개의 요인에서는 조선족과 한족 간에 폭력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없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조선족과 한족은 같은 국적의 중국인으로서 폭력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대체로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인과 중국인은 폭력에 대한 태도의 4개 요인에서 모두 집단간의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인과 몽골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평균 비교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에 나타난 몽골인의 인구 대비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는 외국인 국적 중에서 가장 높고, 내국인보다 높다. 내국인보다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높은 외국인 국적은 몽골로서 유일하다. 과연 몽골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내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다른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 6-10〉은 한국인과 몽골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값 차이 검증 결과이다.

〈표 6-10〉 한국인과 몽골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 비교

내 용 구 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폭력의 필요성	한국인	500	1.94	0.035
	몽골인	110	1.94	
폭력의 효율성	한국인	500	2.01	0.699
	몽골인	110	1.95	
훈육적 폭력 허용	한국인	500	2.08	0.033
	몽골인	110	2.07	
폭력에 대한 거부	한국인	500	3.17	-4.972***
	몽골인	110	3.44	

*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6-10〉에서 한국인과 몽골인 사이에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요인은 ‘폭력에 대한 거부’ 한 가지이고, 나머지 ‘폭력의 필요성’, ‘폭력의 효율성’, ‘훈육적 폭력 허용’의 3개 요인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평균값의 차이가 없다. ‘폭력의 필요성’에서 한국인과 몽골인의 평균값은 거의 동일하며, ‘폭력의 효율성’과 ‘훈육적 폭력 허용’에서는 한국인의 평균값이 몽골인보다 높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단지 ‘폭력에 대한 거부’ 요인에서만 몽골인의 평균값이 한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국인과 몽골인은 폭력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폭력의 필요성’, ‘폭력의 효율성’, ‘훈육적 폭력 허용’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폭력에 대한 거부’에서는 몽골인이 한국인보다 폭력을 더 많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앞의 분석결과에서 외국인 전체나 중국과 비교하여 몽골인은 폭력에 대한 태도에서 한국인과 가장 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인은 폭력에 대한 태도, 4개 요인 중에서 ‘폭력에 대한 거부’ 요인에서만 한국인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머지 3개 요인에서는 한국인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4) 한국인과 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평균 비교

한국인과 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11〉과 같다.

〈표 6-11〉 한국인과 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 비교

내용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폭력의 필요성	한국인	500	1.94	5.904***
	미국인	110	1.59	
폭력의 효율성	한국인	500	2.01	3.898***
	미국인	110	1.72	
훈육적 폭력 허용	한국인	500	2.08	12.339***
	미국인	110	1.35	
폭력에 대한 거부	한국인	500	3.17	-3.798***
	미국인	110	3.37	

* : $p < 0.05$, ** : $p < 0.01$, *** : $p < 0.001$

미국인은 폭력에 대한 태도, 4개 요인의 평균값에서 모두 한국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인은 ‘폭력의 필요성’, ‘폭력의 효율성’, ‘훈육적 폭력 허용’에서 한국인보다 낮은 평균값을 보이며, ‘폭력에 대한 거부’에서는 한국인보다 평균값이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미국인은 한국인보다 ‘폭력의 필요성’, ‘폭력의 효율성’, ‘훈육적 폭력 허용’에 대해서 한국인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폭력에 대한 거부’에서는 한국인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훈육적 폭력 허용’ 요인에서는 한국인과 미국인 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가장 컸다. 미국인은 한국인과 비교하여 훈육을 이유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훨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제2절 내·외국인의 법의식 비교

1. 법의식의 하위영역

법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유지시켜가는 역할을 하는데, 법이 이러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충실히 따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법복종자가 법규범을 준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법의 규범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이영희, 2003: 164-166). 사회구성원들이 법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는 법규범 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의식은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의 자세나 정신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법에 대한 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법의식은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법질서 형성과 유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곽한영, 2007:61).

'법의식'은 학문적으로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법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인지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법의식 발달단계의 구분과 적용에 주로 관심을 집중하는 연구들(강윤정, 1991; 문용린, 1992)이며, 다른 하나는 법의식을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태도'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법과 관련된 의식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연구들(박성혁, 1992; 곽한영, 2007; 김해성 외, 2007; 이영수, 2008)이다(최영신·김윤나·김용성, 2009:66-67).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연구 흐름에 근거하여, 법의식을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태도'라는 관점에서 법과 관련된 의식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법의식의 영역별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김해성 외, 2007)에서는 고든 올포트(Gordon Allport, 1954)의 태도 개념과 아젠과 피시벤(Ajzen & Fishbein, 1980)의 태도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의식 개념을 제안하였다. 올포트는 태도를 '어떤 사람(혹은 어떤 물건)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학습된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정의의 핵심은 태도에 관한 앞선 정의들이 제시한 인지, 정서라는 요소에 '행동'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올포트의 이 정의는 '태도의 삼자모형'(the triadic model of attitude)으로 불리며 태도에 관한 고전적인 정의이자 모델로 자리잡았다. 즉 어떤 대상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갖게 되어, 특정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일련의 잠재적 처리과정 전체를 '태도'로 칭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태도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므로 올포트의 정의 중 행동의 차원을 태도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태도'의 요소에 포함된 '행동'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으로 한정되어 설명되어야 하며 이러한 마음자세를 갖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나 복합적 요소의 작용으로 실제로 행동에 이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도에

서 행동에 이르는 과정은 별도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가 아젠과 피시번(Ajzen & Fishbein, 1980)이다. 이들은 태도의 3요소에서 행동 대신 ‘행동의도’를 포함시켜 다양한 태도의 요소들은 행동의도의 형성으로 종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해성 외, 2007: 17-19; 최영신 외, 2009: 68-69).

김해성 외(2007)은 이와 같은 ‘태도’ 개념을 법의식의 개념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의식을 구성하는 요소 역시 태도의 구성요소와 마찬가지로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al) 영역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는 법적 지식, 법에 대한 인식, 법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법적 추론 단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서적 영역에는 법적 동일시감, 친근감, 신뢰감, 중화기제, 법위반에 우호적 태도 등의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법적 효능감, 법 사용의사, 법적 관용성 등은 법의식의 행동적 요소들로 볼 수 있다(김해성 외, 2007: 23.)

선행연구에서 법의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은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관심에 따라 조금씩 달리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므로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법의식의 세부 영역을 제외시켰다.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는 ‘법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법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시켰다. 또한 국내 체류기간이 제한적인 외국인의 특성상 ‘법사용의사’나 ‘법적 효능감’과 같은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을 내국인과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을 조사내용에서 제외시켰다⁴⁰⁾.

결국 이 연구에서는 법의식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법이해도’와 정서적 영역의 세 개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주로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법의식의 세부 영역별 문항은 다음의 <표 6-12>와 같다. 법의식의 하위영역별로 각각 5개 문항이 포함된다.

40)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은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의 종합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법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에 해당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즉 법과 관련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이 행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곽한영, 2007: 103)

〈표 6-12〉 법의식의 세부 영역과 문항 구성

법의식의 영역		문 항
인지적 영역	법이해도 (법인식의 근대화정도)	① 법은 사람들 사이에 만든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늘이 정해준 원칙이다
		② 법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계약과 같은 것이다
		③ 법은 죄지는 사람을 벌하고 다스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④ 법 중에는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도 있다
		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법을 어긴다는 것은 나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정서적 영역	법에 대한 친밀감	⑥ 법은 복잡하고 까다롭다
		⑦ 법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다른 경우가 많다
		⑧ 법은 나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
		⑨ 나는 법이 매우 두렵다
		⑩ 경찰서 앞을 지나갈 때면 괜히 몸이 움츠려든다
	법에 대한 신뢰감	⑪ 법은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⑫ 법으로 재판을 해도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⑬ 현실세계에서는 법보다 주먹이나 돈이 더 힘이 세다
		⑭ 한국의 법은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⑮ 법은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⑯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⑰ 부자가 될 수 있다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을 어길 수도 있다	
	⑱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⑲ 도둑질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죄가 아니다	
	⑳ 부자들의 돈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법이해도’는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편의상의 개념으로서 박성혁(1992)이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법에 대한 인식방법으로서 법인식의 유형은 크게 전근대적 법인식과 근대적 법인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전근대적 법인식은 신적, 초월적 법률관, 징벌적·형벌적 기능에 대한 강조로 특징지어지고, 근대적 법인식은 도구주의적, 계약적 법률관을 강조한다(박성혁, 1992:26).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는 법을 초월적, 처벌적 기능으로 보는가 혹은 계약적인 관례로 보는가를 주로 측정한다.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라는 척도는 법인식의 인지적 영역을 지식을 넘어서 법에 대한 인식방법으로까지 확장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곽한영, 2007:71).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에는 5개 문항이 포함되는데, 선행연구(임희섭, 1974; 박성혁, 1992)에서 사용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은 법에 대해 어떠한 감정 혹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에 해당

하는 영역이다. ‘법에 대한 친근감’은 법을 얼마나 가깝고 익숙한 존재로 느끼는가를 말한다. 전근대적 사회에서 법은 강제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처벌적인 성격이 강조되었다. 이런 생각은 법을 지배의 도구로 인식하도록 만들며 반대로 자신을 그러한 지배의 대상이자 법의 외부에 있는 존재로 여기는 ‘법적 소외’(legal alienation)를 가져오게 된다. 법적 소외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자신의 삶에 대한 자발적 규칙으로 받아들이거나 법생활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법치주의의 실현이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법적 강제가 느슨해지거나 그러한 강제에 익숙해질 경우 비행과 범죄를 반복하게 되므로 법적 처벌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법에 대한 친근감의 형성은 법을 통한 자치의 원칙을 형성하는데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정서적 요소이다(곽한영, 2007: 101).

‘법에 대한 신뢰감’은 법과 법을 통한 판결이 얼마나 공정하고 또 법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가를 말한다. 법에 대한 인지적 요소가 갖추어지고 친근감을 느낀다 해도 법이 공정하며 자신의 삶을 보호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거나 사용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신뢰감과 관련된 보호요소로 ‘법적 권위체에 대한 지지’를 들 수 있다(곽한영, 2007: 102). 경찰, 법원, 정부, 또는 교사, 부모 등 법과 규칙을 행사하는 권위체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은 감소한다(김준호, 1996:85).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로 연구되어 온 요소를 변형한 것이다. ‘법에 대한 친밀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회의적인 태도’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곽한영, 2007)에서 사용했던 문항 중에서 영역별로 5개 문항씩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2. 법의식의 집단별 비교

가. 외국인의 국적별 법의식의 평균값 비교

이 연구에서 법의식은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하위영역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표 6-13>은 외국인의 국적별로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값은 각 법의식의 하위 영역에 포함되는 문항들의 합을 문항수로 나눈 값이다. 각 문항별로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1점에서 4점까지 해당 법의식의 영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 6-12>에 제시된 문항 중에서 6개 문항은 긍정적인 답변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2, 4, 11, 14, 15, 16), 나머지 14개 문항은 부정적인 답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를 합산하였다.

<표 6-13> 국적별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값

국 적(사례수)	법의식의 영역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한 국(N=500)		2.77	2.58	2.15	3.04
중 국(N=370)		2.49	2.82	2.90	3.43
베트남(N=105)		2.55	2.76	2.86	3.18
인도네시아(N=108)		2.53	2.68	2.92	3.20
필리핀 (N=99)		2.40	2.57	2.76	2.97
타 이 (N=113)		2.65	2.92	2.79	3.30
미 국 (N=110)		2.56	2.72	2.73	3.57
스리랑카 (N=94)		2.51	2.45	2.83	3.75
우즈베키스탄(N=100)		2.56	3.17	3.14	3.49
몽 골 (N=110)		2.53	2.28	2.78	3.49
전 체 (N=1,709)		2.60	2.69	2.66	3.29

<표 6-13>에서 한국인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3.04점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해당 영역에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가 2.77점, 법에 대한 친근감이 2.58점, 법에 대한 신뢰감이 2.15점을 나타낸다. 4점 척도의 중위점이 2.50점임을 고려할 때 한국인의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법에 대한 친근감’은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에 대한 신뢰감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에서는 한국인보다 평균값이

높은 국적은 하나도 없고 모든 국적에서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는 외국인 국적 간에 큰 차이 없이 2.40~2.65점에 분포되어 있다.

‘법에 대한 친근감’은 대체로 외국인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인보다 ‘법에 대한 친근감’이 낮은 외국인은 몽골인, 스리랑카인이며, 필리핀인은 비슷하고 나머지 국적의 경우에는 모두 높게 나타난다.

‘법에 대한 신뢰감’은 모든 외국인 국적에서 한국인의 평균값, 2.15점보다 높았다. 대체로 다른 법의식의 영역에 비하여 평균값의 차이가 높은 편이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법에 대한 신뢰감’의 평균값이 3.14점으로 한국인과 1.0점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외국인 국적에서 한국인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단지 필리핀의 경우에만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의 평균값이 2.97점으로 유일하게 한국인의 3.04점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의 평균값이 3.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의 경우에도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가 각각 3.49점으로 높게 나타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를 제외한 다른 법의식의 영역, ‘법에 대한 친근감’과 ‘법에 대한 신뢰감’의 평균값이 각각 3.17점과 3.14점으로 법의식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⁴¹⁾

나. 집단별 법의식의 평균 차이 검증

법의식의 4개 하위 영역의 평균값이 내국인과 외국인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의 차이 검증을 하였다. 외국인 집단은 외국인 전체, 중국인, 몽골인, 미국인으로 구분하여 내국인과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1) 제3장 공식 범죄통계에 대한 분석결과(〈표 3-12〉, 〈표 3-14〉 참조)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의 전체범죄 검거인원지수와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는 여러 외국인 국적 중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법의식 수준과 간극이 있어 보인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인의 체류외국인수는 2010년을 전후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한국사회에의 적응기에 있으므로 이들의 검거인원지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1)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의 평균 비교

〈표 6-14〉는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 집단 간에 법의식의 하위 영역별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평균값의 차이 검증결과, 법의식의 4개 하위 영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의식의 근대화 정도’에서는 내국인 2.77점이고, 외국인이 2.53점으로 내국인의 법의식의 근대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에서는 모두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다. 즉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법에 대해 친근하게 생각하고, 법에 대한 신뢰도 높으며, 준법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다만, 법의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전근대적 법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외국인은 법이 계약적인 관계로 변화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법을 신적인,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드리고 징벌적 수단으로 받아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표 6-14〉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법의식의 하위 영역	집단	사례수	평균	t
법의식의 근대화 정도	내국인	500	2.77	13.871***
	외국인	1,209	2.53	
법에 대한 친근감	내국인	500	2.58	-5.824***
	외국인	1,209	2.73	
법에 대한 신뢰감	내국인	500	2.15	-27.016***
	외국인	1,209	2.86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내국인	500	3.04	-12.143***
	외국인	1,209	3.39	

* : p<0.05, ** : p<0.01, *** : p<0.001

2) 한국인과 중국인의 법의식의 평균 비교

법의식의 4개 하위영역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6-15〉에서와 같이 법의식의 4개 하위 영역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은 모두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다. 앞에서 내국인과 전체 외국인 간의 비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인과 중국인 집단의 법의식의 하위 영역별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법의식의 근대화 정도’에서는 한국인의 평균값이 높으며, ‘법에 대한 친밀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에서는 모두 중국인의

평균값이 높다. 다시 말하여,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법에 대해 친밀하게 느끼고, 법을 신뢰하며,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가 더 높지만, 법인식에 있어서는 한국인에 비하여 전근대적 법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표 6-15〉 한국인과 중국인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법의식의 하위 영역	집단	사례수	평균	t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한국인	500	2.77	11.907***
	중국인	370	2.49	
법에 대한 친근감	한국인	500	2.58	-6.618***
	중국인	370	2.82	
법에 대한 신뢰감	한국인	500	2.15	-20.627***
	중국인	370	2.90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한국인	500	3.04	-10.740***
	중국인	370	3.43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이 연구에서 중국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조선족과 한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과연 조선족과 한족은 모두 같은 국적의 중국인이지만 법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 6-16〉은 조선족과 한족의 법의식의 하위영역 평균값의 차이검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6-16〉 조선족과 한족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내용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조선족	216	2.49	-0.118
	한족	154	2.50	
법에 대한 친근감	조선족	216	2.76	-2.564*
	한족	154	2.91	
법에 대한 신뢰감	조선족	216	2.88	-0.885
	한족	154	2.93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조선족	216	3.39	-2.055
	한족	154	3.50	

*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6-16〉을 보면, 법의식의 4개 하위 영역 중에서 조선족과 한족 간에 평균값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법에 대한 친근감’ 뿐이고, 나머지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법에 대한 친근감’에서는 조선족의 평균값이 2.76점이고, 한족은 2.91점으로 한족이 더 높다. 즉 중국인의 하위 집단인 조선족과 한족 간에는 법의식에서 ‘법에 대한 친근감’에서만 한족의 평균값이 조선족보다 높은 편이고, 나머지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에서는 집단 간에 별 차이가 없다.

3) 한국인과 몽골인의 법의식의 평균 비교

한국인과 몽골인의 법의식의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표 6-17〉과 같이 4개의 하위 영역에서 두 집단은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에서는 한국인의 평균값이 2.77점이고, 몽골인은 2.53점으로 한국인의 법인식이 몽골인보다는 근대적 법인식에 가깝다. ‘법에 대한 친근감’에서는 한국인의 평균값이 몽골인보다 높지만, ‘법에 대한 신뢰감’과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에서는 한국인보다 몽골인의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몽골인들은 법인식에서는 한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전근대적 법인식을 갖고 있고 법에 대해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법에 대한 신뢰감과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에서는 한국인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6-17〉 한국인과 몽골인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법의식의 하위 영역	집단	사례수	평균	t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한국인	500	2.77	7.107***
	몽골인	110	2.53	
법에 대한 친근감	한국인	500	2.58	5.445**
	몽골인	110	2.28	
법에 대한 신뢰감	한국인	500	2.15	-11.592***
	몽골인	110	2.78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한국인	500	3.04	-9.214***
	몽골인	110	3.49	

* : p<0.05, ** : p<0.01, *** : p<0.001

4) 한국인과 미국인의 법의식의 평균 비교

다음의 <표 6-18>은 한국인과 미국인의 법의식의 하위 영역별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인은 법의식의 4개 하위영역에서 모두 미국인과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인의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는 한국인보다 평균값이 낮아 상대적으로 전근대적 법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3개 영역,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에서는 모두 미국인의 평균값이 높았다. 즉, 미국인은 한국인보다 전근대적 법인식을 갖고 있지만 한국인보다 법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법을 신뢰하며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표 6-18> 한국인과 미국인의 법의식의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법의식의 하위 영역	집단	사례수	평균	t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한국인	500	2.77	6.059***
	미국인	110	2.56	
법에 대한 친근감	한국인	500	2.58	-3.046**
	미국인	110	2.72	
법에 대한 신뢰감	한국인	500	2.15	-12.973***
	미국인	110	2.73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한국인	500	3.04	-11.962***
	미국인	110	3.57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제3절 외국인의 경찰 및 폭력 관련 법에 대한 인식

1. 경찰에 대한 신뢰도 및 경찰 관련 인식

가. 경찰에 대한 신뢰도

1)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비교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표 6-19>에 제시된 4개 문항(①경찰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②경찰은 친절하다, ③경찰은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④내가 억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분하여 1점에서 4점까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값은 4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이다.

〈표 6-19〉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 비교

내 용 구 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경찰에 대한 신뢰도	내국인	500	2.61	-16.146***
	외국인	1,209	3.10	
① 경찰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내국인	500	2.36	-18.353***
	외국인	1,209	3.06	
② 경찰은 친절하다	내국인	500	2.51	-16.213***
	외국인	1,209	3.11	
③ 경찰은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내국인	500	2.61	-8.917***
	외국인	1,209	3.01	
④ 내가 억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내국인	500	2.96	-7.057***
	외국인	1,209	3.22	

* : p<0.05, ** : p<0.01, *** : p<0.001

〈표 6-19〉를 보면, 한국 경찰의 신뢰와 관련된 4개 문항 모두에서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다. 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대체로 경찰에 대하여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은 한국 경찰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친절하며,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억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내국인의 경우보다 높았다. 네 개 문항을 합산한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역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높았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한국 경찰에 대해 더 많이 신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인과 중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비교

다음의 〈표 6-20〉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외국인 전체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중국인의 전반적인 한국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게 나타난다. 외국인 전체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값’이 3.10점이

었던 것에 비하여 중국인의 경우에는 3.14점으로 0.04점 높다. 4개 문항 모두에서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어 한국 경찰에 대한 신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개 문항 중에서 중국인은 ‘한국경찰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문항에서 한국인과의 평균값의 차이가 컸으며, ‘내가 억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라는 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균값의 차이가 적었다.

〈표 6-20〉 한국인과 중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 비교

내용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경찰에 대한 신뢰도	한국인	500	2.61	-13.265***
	중국인	370	3.14	
① 경찰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한국인	500	2.36	-14.391***
	중국인	370	3.06	
② 경찰은 친절하다	한국인	500	2.51	-12.838***
	중국인	370	3.13	
③ 경찰은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한국인	500	2.61	-8.689***
	중국인	370	3.05	
④ 내가 억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한국인	500	2.96	-7.424***
	중국인	370	3.30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중국인의 하위 집단인 조선족과 한족 사이에 한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6-21〉과 같다. 4개 문항을 합산한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서 조선족의 평균값은 한족보다 높지만, 그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족과 한족, 두 집단 간에는 한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위 문항별로 살펴보면, ‘④내가 억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는 문항에서만 조선족의 평균값이 한족보다 높다. 즉 조선족은 한족보다 한국에서 억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조선족과 한족은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조선족은 위급한 상황에서 한족보다 한국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6-21〉 조선족과 한족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 비교

내 용 구 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경찰에 대한 신뢰도	조선족	216	3.19	1.861
	한족	154	3.07	
① 경찰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조선족	216	3.08	0.579
	한족	154	3.04	
② 경찰은 친절하다	조선족	216	3.18	1.475
	한족	154	3.06	
③ 경찰은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조선족	216	3.12	1.884
	한족	154	2.96	
④ 내가 억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조선족	216	3.37	2.207*
	한족	154	3.21	

* : p<0.05, ** : p<0.01, *** : p<0.001

3) 한국인과 몽골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비교

한국인과 몽골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6-22〉와 같다. 몽골인은 한국인과 비교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지만,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2개 문항에서만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다. 몽골인은 한국인보다 ‘경찰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친절하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경찰은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와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는 문항에서는 한국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④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는 문항에서 몽골인의 평균값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앞의 중국인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주목할 만하다.

〈표 6-22〉 한국인과 몽골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 비교

내 용 구 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경찰에 대한 신뢰도	한국인	500	2.61	-3.327**
	몽골인	110	2.87	
① 경찰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한국인	500	2.36	-10.327***
	몽골인	110	3.07	
② 경찰은 친절하다	한국인	500	2.51	-5.861***
	몽골인	110	2.94	
③ 경찰은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한국인	500	2.61	-0.291
	몽골인	110	2.65	
④ 내가 억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한국인	500	2.96	1.196
	몽골인	110	2.84	

* : $p < 0.05$, ** : $p < 0.01$, *** : $p < 0.001$

4) 한국인과 미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비교

〈표 6-23〉를 보면, 미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인보다 높으며, 네 개의 하위 문항 모두에서 한국인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한국 경찰에 대해 더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6-23〉 한국인과 미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평균 비교

내 용 구 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경찰에 대한 신뢰도	한국인	500	2.61	-7.883***
	미국인	110	2.97	
① 경찰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한국인	500	2.36	-7.429***
	미국인	110	2.77	
② 경찰은 친절하다	한국인	500	2.51	-8.178***
	미국인	110	2.95	
③ 경찰은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한국인	500	2.61	-3.084**
	미국인	110	2.84	
④ 내가 억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한국인	500	2.96	-5.635***
	미국인	110	3.31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외국인의 한국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집단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인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외국인 전체의 평균값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

는 한국인보다 높으며, 특히 중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미국인도 네 개의 하위 항목에서 모두 한국인보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하위 문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몽골인의 경우에는 ‘③경찰은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와 ‘④내가 억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는 문항에서 한국인과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나. 경찰 관련 기타 인식

1) 폭력범죄 발생 관련 인식

위에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여기에는 경찰과 관련된 인식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폭력범죄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세 가지 문항(①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다, ②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보복하는 것이 낫다, ③나의 안전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을 조사하였다. <표 6-24>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발생과 관련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표 6-24>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발생 관련 인식의 평균 비교

내용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다	내국인	500	1.78	0.727
	외국인	1,209	1.75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보복하는 것이 낫다	내국인	500	1.72	0.437
	외국인	1,209	1.70	
나의 안전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	내국인	500	3.12	4.002***
	외국인	1,209	2.96	

* : p<0.05, ** : p<0.01, *** : p<0.001

<표 6-24>에 제시된 3개의 문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문항은 “나의 안전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이다. 위의 표를 보면, 폭력범죄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경찰과 관련된 인식으로서 세 개의 문항에서 외국인의

평균값은 모두 내국인보다 낮은 상태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세 번째 문항에서는 내국인의 평균값이 외국인보다 높게 나타난다. 내국인은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외국인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5〉 한국인과 중국인의 폭력 발생 관련 인식의 평균 비교

내용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다	한국인	500	1.78	3.976***
	중국인	370	1.57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보복하는 것이 낫다	한국인	500	1.72	5.324***
	중국인	370	1.44	
나의 안전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한국인	500	3.12	5.810***
	중국인	370	2.77	

*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6-25〉에서 폭력범죄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찰 관련 인식에 있어서 중국인과 한국인 집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 검증은 살펴보면, 세 개 문항 모두에서 중국인의 평균값은 한국인의 평균값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두 집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세 개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중국인은 한국인과 비교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다’는 생각에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보복하는 것이 낫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한국인보다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나의 안전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한국인보다 평균값이 낮아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 체류 중국인은 내국인보다 문제사태에서 ‘직접 주먹으로 해결한다거나 사람들과 힘을 합쳐 보복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낮으며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도 내국인에 비하여 낮은 상태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폭력범죄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경찰 관련 인식에서 몽골인들의 반응은 중국인과 대조를 보인다. 세 개 문항에서 몽골인의 평균값은 한국인보다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이며, 그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몽골인들은 상대적으로 내국인에 비하여 문제사태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보복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또한 '나의 안전은 난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도 내국인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6-26〉 한국인과 몽골인의 경찰 관련 인식의 평균 비교

내 용 구 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다	한국인	500	1.78	-3.005**
	몽골인	110	2.02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보복하는 것이 낫다	한국인	500	1.72	-3.820***
	몽골인	110	2.04	
나의 안전은 난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한국인	500	3.12	-2.262*
	몽골인	110	3.33	

* : p<0.05, ** : p<0.01, *** : p<0.001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세 개 문항에서 모두 낮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과 달리 몽골인은 세 개 문항에서 모두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몽골인의 높은 폭력범죄 발생률을 일정부분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인은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도 '내가 억울하거나 위협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는 문항에서 내국인보다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고, '직접 주먹으로 해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힘을 합쳐 보복하는 것이 낫다'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인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인의 태도와 대조를 이룬다. 미국인의 경우에는 〈표 6-27〉를 보면,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다'는 문항에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나의 안전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낮은 평균값을 보인다.

〈표 6-27〉 한국인과 미국인의 경찰 관련 인식의 평균 비교

내용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다	한국인	500	1.78	7.367***
	미국인	110	1.30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보복하는 것이 낫다	한국인	500	1.72	-1.657
	미국인	110	1.85	
나의 안전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한국인	500	3.12	4.748***
	미국인	110	2.75	

* : p<0.05, ** : p<0.01, *** : p<0.001

2) 경찰의 주취폭력 대응 관련 인식

한국 경찰의 주취폭력 대응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내국인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표 6-28〉과 같이 집단별 평균값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전체와 내국인의 경찰의 주취폭력대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경찰은 술을 마신 후 일어난 싸움에 대하여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 같다’는 문항에 대하여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⁴²⁾ 내국인의 평균값은 2.76점이고, 외국인의 평균값은 2.62점으로 내국인의 평균값이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즉,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한국 경찰은 술을 마신 후 일어난 싸움에 대하여 관대하게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표 6-28〉 외국인의 집단별 경찰의 주취폭력 대응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내용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한국인	500	2.76	3.062**
	외국인	1,209	2.62	
	한국인	500	2.76	6.284***
	중국인	370	2.38	
경찰은 술을 마신 후 일어난 싸움에 대하여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 같다	한국인	500	2.76	3.411**
	몽골인	110	2.42	
	한국인	500	2.76	-1.551
	미국인	110	2.86	
	한국인	500	2.76	-8.487***
	스리랑카	94	3.48	

* : p<0.05, ** : p<0.01, *** : p<0.001

42) 해당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각각 1점에서 4점까지 긍정적인 태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인이나 몽골인의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난다. 이 문항에서 중국인의 평균값은 2.38점이고, 몽골인은 2.42점으로 외국인 전체의 평균값보다 낮다. 반면, 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문항의 평균값이 2.8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한국인의 평균값, 2.76보다 높게 나타난다.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한국 경찰의 주취폭력에 대한 대응이 매우 관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스리랑카인의 평균값은 3.48점으로서 대부분의 스리랑카인은 한국 경찰이 주취폭력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국인의 국적별로 이전에 본국에서의 경찰의 주취폭력 대응에 대한 경험에 따라서 동일한 문항에 대한 평가가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기 전에 본국에서 주취폭력 관련 경찰의 대응이 관대했던 경우에는 한국 경찰의 대응이 관대하지 않다고 반응하고, 본국에서의 경험에서 경찰의 주취폭력 관련 대응이 엄격했던 경우에는 한국 경찰의 대응이 매우 관대하다고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경찰에 대한 태도와 비슷하게 평가하고, 중국인과 몽골인은 한국인에 비하여 주취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관대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스리랑카인은 주취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현저하게 관대하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외국인 관련 정책에서 이런 각 국적 외국인의 인식 차이를 고려한다면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인의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

가. 외국인의 국적별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 평균값 비교

〈표 6-29〉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값은 폭력과 관련된 법지식에 해당하는 6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후 문항수로 나눈 값이다.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 6개 문항에서는 각각 ‘전혀 모르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로 구분하여 1점에서 4점까지 긍정적인 응답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 6-29〉에서 한국인의 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값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5개 문항의 평균값이 3.0 이상이므로 대부분의 한국인이 각 문항에 대해 평균적으로 ‘조금

알고 있다' 이상임을 알 수 있다. '①평소에 무기를 갖고 다니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값은 2.88점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낸다. 한국인은 6개 문항 중에서 '③누군가와 싸울 때 위험한 물건(칼, 망치 등)을 사용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문항의 평균값이 3.3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④나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때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문항이 3.23점, '②여러 명이 함께 때를 지어 싸우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가 3.15점으로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하여 '⑥심한 욕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값은 낮은 편이다. 언어적 폭력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6-29〉 국적별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 문항별 평균값

문항 국적 (사례수)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	①평소에 무기를 갖고 다니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②여러 명이 함께 때를 지어 싸우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③누군가와 싸울 때 위험한 물건 (칼, 망치 등) 을 사용하면 더 무거운 처 벌을 받는다	④나에게 경 제적, 정신 적 손해를 끼 친 사람이라 도 그 사람을 때리면 처벌 을 받는다	⑤내가 먼저 맞았더라도 때린 사람에 게 주먹질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⑥심한 욕 설도 처벌 을 받을 수 있다
한국 (N=500)	3.12	2.88	3.15	3.36	3.23	3.09	3.00
중국 (N=370)	3.14	3.08	3.26	3.31	3.15	3.08	2.95
조선족 (N=216)	3.35	3.34	3.44	3.49	3.32	3.28	3.25
한족 (N=154)	2.84	2.71	3.01	3.06	2.92	2.79	2.53
베트남 (N=105)	3.06	2.95	3.11	3.15	3.05	3.01	3.10
인도네시아 (N=108)	3.23	3.29	3.26	3.36	3.26	3.12	3.07
필리핀 (N=99)	2.39	3.29	2.43	2.19	2.23	2.27	2.27
타이 (N=113)	2.80	2.91	2.76	3.02	2.96	2.87	2.52
미국 (N=110)	3.06	2.67	3.03	3.10	2.95	3.08	3.15
스리랑카 (N=94)	3.28	3.06	3.35	3.51	3.31	3.21	2.91
우즈베키스탄 (N=100)	3.14	3.36	3.28	3.29	3.27	2.99	2.72
몽골 (N=110)	2.83	3.27	2.93	3.13	2.95	2.86	2.40
전체 (N=1,709)	3.05	2.75	3.11	3.22	3.10	3.01	2.88

〈표 6-29〉에서 국적별로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평균값(3.12점)보다 높게 나타난 국적은 스리랑카(3.28점), 인도네시아(3.23점), 중국(3.14점), 우즈베키스탄(3.14점)이고, 베트남과 미국은 각각 3.06점으로 한국인과 비슷한 값을 보이고, 몽골(2.83점), 타이(2.80점), 필리핀(2.39점)은 한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보인다. 몽골, 타이, 필리핀 국적 외국인은 한국의 폭력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의 문항별 평균값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국적에 따라 각 문항별 평균값에 차이가 크다. ‘①평소에 무기를 갖고 다니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타이, 몽골의 평균값이 특히 낮으며, 필리핀과 타이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문항에서 법지식의 평균값이 현저하게 낮으며, 언어적 폭력과 관련된 ‘⑥심한 욕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미국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높고, 필리핀, 타이,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경우에는 특히 낮은 상태이다.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에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인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특기할 만하다. 이들의 폭력에 대한 법지식은 각 국가의 도덕적 가치기준과 사회문화적 특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집단별 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 차이 검증

〈표 6-30〉에서 외국인 전체와 내국인의 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내국인의 평균값은 외국인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즉, 내국인은 외국인보다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폭력 관련 법지식을 구성하는 6개 문항 중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문항은 모두 5개이며, 단지 1개 문항(②여러 명이 함께 때를 지어 싸우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평균값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폭력 관련 법지식에서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내국인이 폭력범죄 관련 국내법에 대해 외국인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6-30〉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내 용 구 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폭력 관련 법지식	내국인	500	3.12	2.786**
	외국인	1,209	3.02	
① 평소에 무기를 갖고 다니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	500	2.88	-3.407**
	외국인	1,209	3.04	
② 여러 명이 함께 때를 지어 싸우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	500	3.15	1.417
	외국인	1,209	3.09	
③ 누군가와 싸울 때 위험한 물건(칼, 망치 등)을 사용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내국인	500	3.36	4.574***
	외국인	1,209	3.16	
④ 나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때리면 처벌을 받는다	내국인	500	3.23	4.416***
	외국인	1,209	3.05	
⑤ 내가 먼저 맞았더라도 때린 사람에게 주먹질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	500	3.09	2.736**
	외국인	1,209	2.97	
⑥ 심한 욕설도 처벌받을 수 있다	내국인	500	3.00	3.914***
	외국인	1,209	2.83	

*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6-30〉에 드러난 분석결과를 통해서, 앞의 〈표 6-29〉에서 외국인 전체보다 각 문항의 평균치가 낮은 집단의 경우(필리핀, 타이, 몽골)에는 당연히 한국인과 비교하여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에 차이가 더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중국인의 경우에는 중국인 전체의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값이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선족과 한족의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은 서로 대조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대체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조선족의 경우에는 〈표 6-31〉에서와 같이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값이 한국인보다 높은 편이고, 한국어 습득력이 낮은 한족의 경우에는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이 한국인에 비하여 낮은 상태이다. 조선족과 한족 집단에서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조선족과 한족은 모두 같은 국적의 중국인이지만,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에 있어서는 서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두 민족 집단이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표 6-31〉 조선족과 한족의 폭력 관련 법지식의 평균 비교

내 용 구 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폭력 관련 법지식	조선족	216	3.35	7.211***
	한족	154	2.84	
① 평소에 무기를 갖고 다니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선족	216	3.34	7.006***
	한족	154	2.71	
② 여러 명이 함께 때를 지어 싸우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선족	216	3.44	5.304***
	한족	154	3.01	
③ 누군가와 싸울 때 위험한 물건(칼, 망치 등)을 사용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조선족	216	3.49	5.263***
	한족	154	3.06	
④ 나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때리면 처벌을 받는다	조선족	216	3.32	4.633***
	한족	154	2.92	
⑤ 내가 먼저 맞았더라도 때린 사람에게 주먹질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선족	216	3.28	5.539***
	한족	154	2.79	
⑥ 심한 욕설도 처벌받을 수 있다	조선족	216	3.25	7.599***
	한족	154	2.53	

* : p<0.05, ** : p<0.01, *** : p<0.001

제4절 외국인 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1. 내국인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인식

내국인이 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6-32〉에서와 같이 세 개의 문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자료의 분석결과, 내국인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보다 위험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범죄율이 높으며, 외국인범죄는 대부분 불법체류자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32〉 내국인의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내 용 구 분	합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더 위험하다	500 (100.0)	15 (3.0)	195 (39.0)	240 (48.0)	50 (10.0)	2.65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다	500 (100.0)	8 (1.6)	117 (23.4)	289 (57.8)	86 (17.2)	2.91
외국인 범죄는 대부분 불법체류자에 의해서 발생할 것이다	500 (100.0)	8 (1.6)	111 (22.2)	290 (58.0)	91 (18.2)	2.93

〈표 6-32〉에서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더 위험하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내국인은 전체응답자의 58.0%(290명)이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다’고 응답한 내국인은 75%(375명)이고, ‘외국인 범죄는 대부분 불법체류자에 의해서 발생할 것이다’고 응답한 내국인은 76.2%(381명)에 이른다.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각각 10.0%, 17.2%, 18.2%를 차지하고 있어 내국인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3장의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표 3-11〉 참조), 2014년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전체범죄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1,175로서 내국인의 3,281에 비하여 3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폭력범죄의 검거인원지수에서도(〈표 3-14〉 참조) 외국인은 357로서 내국인의 681에 비하여 52%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같이 외국인의 범죄발생비율은 내국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증가는 바로 범죄율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식에서도 내국인의 인식은 현실과 간극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 관련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범위반자이지만, 이들은 소위 통상의 ‘범죄자’(형사법범)와 구분해야 한다. 출입국 관련법의 위반은 통고처분 대상자로서 일반적인 형사법 위반자와 구분하여 기소하지 않고 처리된다.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거의 범죄자와 동일시한다는 점이 문제이다⁴³⁾.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수준은 위의 〈표

6-32)에서와 같이 그대로 드러난다.

2. 내·외국인의 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

다음의 <표 6-33>은 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을 내국인과 외국인 집단 간에 비교한 것이다. <표 6-33>에 제시된 7가지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한 문항별로 각각 '전혀 필요하지 않다', '거의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로 구분하여 1점에서 4점까지 각 정책의 필요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 6-33>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의 평균 비교

내용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한국법규에 대한 법교육·폭력 예방 교육	내국인	500	3.54	1.684
	외국인	1,209	3.48	
②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제거	내국인	500	3.38	-4.492***
	외국인	1,209	3.55	
③ 외국인의 고충 상담 기능 강화	내국인	500	3.27	-9.119***
	외국인	1,209	3.59	
④ 외국인 대상 통역 서비스의 확대	내국인	500	3.26	-10.124***
	외국인	1,209	3.61	
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취약환경 개선	내국인	500	3.29	-6.151***
	외국인	1,209	3.51	
⑥ 경찰에 대한 신뢰 강화(귀화경찰관의 채용 확대 등)	내국인	500	3.23	-5.041***
	외국인	1,209	3.43	
⑦ 외국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내국인	500	2.81	-15.338***
	외국인	1,209	3.44	

* : p<0.05, ** : p<0.01, *** : p<0.001

<표 6-33>을 보면, 7가지 외국인 관련 정책 중에서 6가지 정책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집단 간에는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가지 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국인과 외국인 집단의

43)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불법체류자의 범죄발생율은 합법 체류자에 비하여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최영신·강석진, 2012: 87).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6가지 외국인 관련 정책은 ‘②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제거’, ‘③외국인의 고충 상담 기능 강화’, ‘④외국인 대상 통역 서비스의 확대’, ‘⑤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취약환경 개선’, ‘⑥경찰에 대한 신뢰 강화(귀화경찰관의 채용 확대 등)’, ‘⑦외국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이다. 외국인은 6가지 모든 관련 정책들에 대하여 내국인보다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①한국 법규에 대한 법교육·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인 관련 정책과는 다르게 내국인의 평균값이 외국인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상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내국인과 외국인의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한 시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의 폭력 예방을 위해서 7가지 외국인 관련 정책 중에서 내국인은 ‘①한국법규에 대한 법교육·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가장 높은 점수(3.54점)를 부여하였으며, 외국인들은 ‘④외국인 대상 통역 서비스의 확대’, ‘③외국인의 고충 상담 기능 강화’, ‘②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제거’의 순서로 각각 3.61점, 3.59점, 3.55점을 부여하여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국인은 법교육 및 폭력 예방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통역서비스 확대, 고충상담, 차별과 불평등의 제거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5절 소결

1.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번 연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이 ‘폭력의 효율성·필요성’, ‘폭력에 대한 거부’, ‘훈육적 폭력’의 3개 요인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과 외국인은 모두 ‘폭력의 효율성’과 ‘폭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경계가 강하지 않아 폭력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폭력에 대한 거부’와 ‘훈육적 폭력’에 대한 인식구조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내국인과 외국인 집단의 두 번째 요인과 세 번째 요인의 순서가 서로 다르므로 각 집단에서 각 요인의 설명력에는 차이가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두 집단에서 폭력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의 특성이 동일하다는 것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값을 비교해보면(〈표 6-7〉 참조), 외국인 전체 집단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폭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고 폭력을 거부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난다. 폭력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네 개의 요인 중에서 외국인은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에 대하여는 내국인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폭력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폭력의 필요성과 폭력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허용적이지 않고, 폭력에 대한 거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다. 다만 외국인은 훈육적 폭력에 대해서 내국인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외국인의 집단별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값의 차이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인과 외국인 전체, 중국인, 몽골인, 미국인과의 집단간 비교에서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폭력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전체와의 평균값의 차이 검증에서는 훈육적 폭력에서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요인에서는 모두 한국인이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이나 미국인과의 검증결과에서도 모든 요인에서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폭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한국인은 폭력에 대한 태도에서 몽골인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인은 폭력의 필요성, 폭력의 효율성, 훈육적 폭력 허용 요인에서 몽골인과 차이가 없었으며, ‘폭력에 대한 거부’에서는 몽골인이 폭력을 더 많이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몽골인보다 폭력에 대하여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관련 시사점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별 평균값의 차이검증결과는 제한적이지만 일정 정도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정도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훈육적 폭력’ 요인과 같이 사회문화적 배경 등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가 바로 외국인의 폭력범죄의 발생률을 설명해주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문화권 내에서는 일정부분 폭력범죄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3장의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결과에서 몽골만 폭력범죄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나는데(〈표 3-14〉 참조), 폭력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 차이 검증에서 몽골은 한국인과 폭력에 대한 태도가 가장 비슷한 집단으로 드러났다. 반면, 미국, 중국, 외국인 전체는 모두 한국인보다 폭력 관련 태도에 소극적이고 폭력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폭력범죄의 검거인원지수가 한국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폭력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대하여 보다 허용적인 태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김준호·김선애, 1992)의 가설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해당 가설에 부합하는 것이다.

요컨대,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며,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내국인에 비하여 폭력에 대해 수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구체적인 폭력 범죄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허용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3.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 관련 시사점

이 연구에서 법의식은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는 법의식의 인지적 측면에 해당되고,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는 법의식의 정서적 측면에 해당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 집단 간에는 법의식의 4개 하위영역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는 낮지만,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는 높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법에 대해 친근하게 생각하고, 법에 대하여 신뢰하고, 준법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다만 법인식에서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전근대적 법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법이 계약적인 관계로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법을 신적인,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

드리고 징벌적 수단으로 받아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과 미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 전체와 한국인의 집단간 평균 비교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법의식을 보여준다. 중국인과 미국인은 모두 한국인보다 법에 대해 친밀하게 느끼고, 법을 신뢰하며,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법인식에 있어서는 한국인에 비하여 전근대적 법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표 6-15〉, 〈표 6-18〉 참조). 다만, 한국인보다 폭력범죄의 발생율이 높은 몽골인의 경우에는 중국인이나 미국인 등 다른 외국인 집단과 다르게 법에 대한 친근감이 현저하게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법의식의 하위영역의 하나인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는 법을 초월적, 처벌적 기능으로 보는가 혹은 계약적 관계로 보는가를 주로 측정하는데, 전근대적 법인식은 법을 지배의 도구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자신을 그러한 지배의 대상이 되거나 법의 외부에 있는 존재로 여기도록 하여 ‘법적 소외’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 ‘전근대적 법인식’은 ‘법에 대한 친밀감’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곽한영, 2007:101). 그런데 이 연구에서 외국인 집단은 전반적으로 한국인보다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는 낮으면서 법적 친밀감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인과 미국인의 경우에도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는 한국인보다 낮으면서 법에 대한 친밀감은 한국인보다 높았다. 스리랑카와 몽골인의 경우에만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가 낮으면서 법적 친밀감이 낮았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국인보다 법인식에서는 전근대적 법인식을 갖고 있고, 법에 대해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법을 공정한 것으로 신뢰하고, 준법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연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에서 ‘전근대적 법인식’은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와 같이,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의 하위 영역에 속하는 ‘법에 대한 친밀감’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전근대적 법인식과 법에 대한 친밀감 사이의 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국인의 법인식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법의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인은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법인식의 근대화 정도’에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에 속하는 ‘법에 대한 친밀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에서 모두 내국인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내 체류외국인의 법의식수준은 공식 범죄통계의 분석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이 내국인보다 낮은 이유를 일부 설명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7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외국인 폭력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제언

최영신 · 장현석

외국인 폭력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제언

제1절 공식 범죄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의 시사점

1. 외국인범죄의 증가와 심각성에 대한 오해와 이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범죄의 증가율은 2011년까지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을 앞질렀으나 2012년 이후로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율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2010년 전후에 수행된 외국인범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외국인범죄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김정규·신동준, 2010; 최영신·강석진, 2012), 인구 대비 외국인범죄의 검거인원지수는 2011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이후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은 그 수치가 가장 높았던 2011년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구구성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인구구성이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 구성과 비슷하도록 보정한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체류외국인은 내국인의 인구 구성과 비교하여,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5% 정도 높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인구는 낮으면서 20세 이상 59세까지의 인구 비율은 20% 정도 높다(〈표 3-7〉, 〈표 3-8〉 참조).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범죄발생률이 높은 남성 인구의 비율은 높고, 범죄발생률이 낮은 청소년층과 노인층의 연령 비율은 낮다.

이와 같은 외국인의 인구 구성상의 특성을 일부 보정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 추정치를 계산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표 3-11〉 참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전체범죄에서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

는 매년 외국인보다 현저히 높은 상태이다. 지난 4년 동안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11년인데, 내국인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은 3,524명이고, 외국인은 1,420명으로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외국인보다 2.5배 정도 높았다. 2012년에는 내국인의 10만명당 검거인원이 3,338명이고, 외국인은 1,152명으로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의 차이가 더 커져서 내국인은 외국인보다 2.9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2013년과 2014년에도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외국인보다 각각 2.9배, 2.8배 정도 높았다. 2013년과 2014년의 외국인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각각 1,169과 1,175로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 내국인과 외국인범죄의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표 3-11) 참조, 대부분의 범죄유형에서 내국인의 범죄발생률은 외국인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 특히 지능범죄와 교통범죄의 발생률은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3-4배 이상 높다. 다만 살인범죄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인구 구성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이 내국인을 앞지르고 있으며, 강도범죄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비슷한 정도의 범죄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최근으로 올수록 외국인의 살인 및 강도의 검거인원지수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외국인의 살인범죄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보다 현저히 높은 상태이다. 외국인범죄에서 다른 범죄유형과 다르게 살인범죄와 강도범죄의 발생률이 높은 현상에 대한 분석이 후속연구를 통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외국인 폭력범죄의 특성과 치안부재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

이주노동자가 많은 대부분의 국적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현저히 낮지만, 일단 발생한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의 발생분포에서는 '폭력행위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내국인의 1/10 수준 이하인 필리핀인, 태국인, 인도네시아인의 경우에도 전체 폭력범죄에서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50%~75%에 이르며, 설문조사자료의 분석결과에서도 폭력가해 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들은 갈등상황에서 내국인에 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낮지만, 일단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자료에서도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1.7%(21명/1,209명)인데 비하여, 내국인은 2.4%(12명/500명)로 가해 경험율이 높았으며(〈표 4-8〉 참조), 폭력 가해 가담자수에 대한 비교에서도 내국인은 폭력 가해시에 자신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폭력에 가담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인 데 비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폭력에 가담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 정도를 차지한다(〈표 4-13〉 참조).

이와 같이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폭력발생률은 낮지만, 일단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력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폭력범죄의 특성은 외국인으로서의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으로서 언어적 제약이나 불법체류의 문제, 한국의 관련 법지식의 제한 등은 외국인이 문제상황에서 한국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하는 취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외국인의 취약성은 외국인들 간의 치안부재 상황을 가져오게 하고, 외국인은 폭력피해의 지구책으로서 스스로 힘을 모아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가져오게 한다.

선행 연구(최영신·강석진, 2012)에서도 외국인이 여러 명 힘을 합쳐 폭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자기방어적 보복성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외국인범죄의 발생원인별 유형의 하나로서 ‘외국인의 치안부재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분류하고 그 하위 범주의 하나로 ‘자기방어적 보복성 범죄’를 위치시켰다. 여기에는 ‘개인적 수준의 보복성 범죄’와 ‘출신지역별 집단화와 집단폭력’이 포함된다. 외국인범죄의 특성으로 드러난 ‘자기방어적 보복성 범죄’는 “이전에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을 억울해하며 자신이 직접 세력을 형성하여 보복을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개인적 수준에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먼저 피해를 가한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거나, 때로는 같은 민족이나 국적 단위로 세력을 형성하여 집단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최영신·강석진, 2012: 159-170).

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에서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내국인에 비하여 높은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으로서의 취약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언어적 제약, 정보의 부족, 법지식의 제한 등과 같은 외국인으로서의 취약성은 외국인이 치안부재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치안부재 상황을 최소화함으로써 외국인 폭력범죄의 집단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외국인 폭력의 양상과 폭력 유발과 억제 관련 시사점

1. 외국인 폭력가해의 원인으로서는 상징적 폭력(편견, 차별, 그리고 무시)과 정책적 대응

가. 외국인에 대한 상징적 폭력은 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침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은 대부분 당사자 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발생한다. 물론 묻지마 범죄처럼 아무 관련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문 현상이다. 외국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이 폭력을 가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대부분이 기분이 나쁘거나 욕을 듣고서 또는 평상시 차별과 무시를 당해서 화끈에 폭력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였다.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나고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드물게 폭력을 행사하지만, 대부분 차별과 무시를 당했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유 없이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가해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상징적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표 5-2>에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내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은행 등)과 직장 또는 일터에서 외국인들이 유의미하게 더 많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직장 생활에서의 상징적 폭력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표 5-3>에 나타나듯이 내국인에 비하여 외국인들이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하고 월급을 적게 받고, 사장이나 직장동료가 무시하거나 욕을 한다고 느끼고, 사장이나 동료가 실제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다. 비록 외국인들이 인식하는 차별의 절대적인 평균점수의 크기가 1점(전혀 없었다)에서 2점(거의 없었다)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서 전반적인 크기는 그리 심하게 보이지 않지만, 내국인과의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을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 차별과 직장생활 차별이 외국인 폭력 가해 여부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더 나아가 폭력 가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징적 폭력이 폭력 가해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본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도 일상생활 차별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상징적 차별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신동준(2012: 191) 그리고 김정규(2015: 308)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그리고 상징적 폭력은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에서 말하는 부정적 자극발생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김정규(2015)의 연구는 차별경험이 범죄가해 여부와 가해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상징적 차별이 폭력가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외국인에 대한 상징적 폭력에 대응한 정책적 제언

외국인에게 가해지는 상징적 차별 문제를 해결할 정책들에 대하여 우리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않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 직장 내에서 가해지는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은 기존의 법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제제가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인 외국인들은 고용에서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상징적 차별이 주로 발생하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지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이 막연히 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이라는 편견은 “낙인”을 가져오고 이러한 낙인은 외국인들을 우리사회에서 분리시켜 외국인들끼리 밀집하여 살도록 하고 이는 편견을 더욱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신동준, 2012). 신동준(2012: 192-203)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회적 맥락에서 낙인의 과정과 결합하여 악순환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형사정책과 사회정책의 대주제로 “사회통합”을 제안하였다. 사회통합이란 외국인인 ‘그들’을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의 한국사회로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때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문제도 완화되고 자연스럽게 외국인으로 인한 범죄나 폭력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인의 한국사회로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범사회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지양하는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상징적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노동현장에서는 스스로 더 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는 편견을 형성하기 쉽다. 따라서 편견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미디어나 여러 경로의 문화 매체를 이용하여 외국인이나 외국인 공동체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문화행사에도 외국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서 내·외국인 간에 유대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인 폭력 억제요인으로서 본국사람 유대와 정책적 시사점

조사대상 외국인들의 본국사람에 대한 유대는 평균점수가 3.12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본국사람에 대한 유대는 폭력을 유의미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나타났다. 본국인에 대한 강한 유대가 있는 외국인들은 본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강한 유대는 비공식적 사회통제 인식과 더불어 집합적 효율성의 중요한 요소이며 집합적 효율성이 높은 곳에서 폭력범죄 발생률이 낮다고 보고하였다(Sampson et al., 1997). 따라서 외국인들의 본국공동체에 대한 강한 유대가 폭력을 비롯한 범죄억제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은 강한 이론적, 경험적 지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본국사람 공동체에 대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적응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지원센터나 지역 주민센터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를 보았을 때 한국 사회에 대한 유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한 유대는 약화되고, 본국 사람에 대한 유대만 강화되면

자칫 외국인 커뮤니티가 분리 고립되게 되고 이는 외국인이 사는 거주 지역이 지역적 낙인과 같은 부정적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신동준, 2012). 따라서 외국인들이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고 주류 한국 공동체와 교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 내에서 내국인들 사이에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공동체와 내국인 공동체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민소영, 2013). 마을 만들기 사업이 대부분 내국인 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내국인 공동체가 붕괴된 곳에 외국인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할 때 외국인 공동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안산시 원곡동의 경우 외국인 공동체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내국인 공동체의 강화와 외국인 공동체의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서로 교류를 추진한다면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및 피해에서 음주 및 무기사용 관련 시사점

음주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폭력범죄 가해와 피해 양상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폭력가해의 경우 가해자인 외국인이 술을 마신 경우(65%)는 내국인(50%)보다 많았으나(표 4-14 참조), 외국인이 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폭력가해의 경우 주로 직장 이외의 장소인 음식점·술집, 집·거주지 주변, 길거리·공원 등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욕을 듣거나 무시, 차별을 당했을 때 주로 폭력이 행사되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기통제력과 상황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누군가 화나게 하면 폭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폭력가해의 피해자가 대부분 외국인인 것은 직장 이외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은 주말에 유동 외국인 인구가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이 모여 든다고 한다. 주된 이유는 본국 사람들을 만나서 음식을 같이 먹기 위함이지만 이 과정에서 술도 함께 마시게 된다. 외국인 폭력사태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술을 들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찰은 유흥가 주변의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하여 술과 폭력과의 관계를 홍보하여 외국인 스스로 음주문화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폭력피해자의 경우 술을 마셨다고 한 비율이 20.7% 밖에 되지 않았다. 가해자 또한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외국인에 대한 폭력이 주로 직장에서 직장상사나 동료에 의하여 이루어고 있어서 음주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이 평상시 무기를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편견이 있는데, 본 조사결과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내국인보다 무기 소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이 무기를 소지 하지 않는 것은 한국사회가 상당히 안전하여 굳이 무기를 소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불법 무기소지가 오히려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어 이로 인하여 추방될 위험이 있으므로 무기를 거의 소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 분석에서 살인과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외국인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비율이 더 높거나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력범죄에서는 무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범자인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는 무기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3절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법의식 관련 제언

1. 경찰에 대한 신뢰도 및 경찰 관련 인식의 시사점

가. 외국인으로서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의 한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내국인에 비하여 높다. 외국인들은 한국 체류 이전 자국에서 경험했던 경찰에 대한 이미지와 비교하여 한국 경찰을 더 신뢰한다. 이러한 사실은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⁴⁾.

44) “한국 경찰은 매우 강력하고 힘이 세요. 그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엄격해요. 한국의 경찰과 법은 좋은 것 같아요. 경찰들은 우리가 외국인임에도 우리를 존중해줘요.”(심층면담자료 2-10, 2-14: 앞의 2는 <표1-1>에 표시된 면담번호를 의미하며, 뒤의 10, 14는 각 심층면담별 심층면담노트의 위치를 나타냄). “외국인들이 본국 치안과 달리 한국은 도로에 경찰이 많고 신고하면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놀랐다고 얘기하기도 했어요.”(심층면담자료 4-16).

외국인은 한국 경찰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친절하고,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외국인의 한국 경찰에 대한 신뢰는 외국인 전체, 중국인, 미국인 집단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몽골인의 경우에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한 2개 문항(경찰은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내가 억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에서 한국인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몽골인은 한국인보다 대체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지만 다른 국적 외국인에 비하여 내국인과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외국인의 한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내국인보다 높은 편이지만, 실제사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은 한국 경찰의 도움을 원활하게 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제4장에서 외국인의 폭행 피해 관련 양상을 살펴보면, 폭행 피해 경험이 있는 외국인의 경찰 신고율은 25.3%(22명)로서 내국인의 42.9%(18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다(〈표 4-24〉 참조). 또한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언어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서’(8명, 응답자의 17.0%), ‘불법체류 사실이 노출될까봐’(6명, 응답자의 12.8%),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3명, 응답자의 6.4%)와 같이 외국인으로서의 취약성으로 인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24〉 참조). 외국인의 폭행 피해 경험자 중에서 경찰에 신고했던 외국인과 신고하지 않았던 외국인 사이에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폭행피해상황에서 외국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는 외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제약이나 불법체류, 범죄피해 등 관련 법지식의 부재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이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도움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제도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외국인 통역 지원의 확대, 범죄피해자인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 예외 조치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확대 등은 외국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하나이다.

나. 폭력범죄 발생과 관련된 인식의 개선 필요성

폭력범죄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세 가지 문항(①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다, ②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보복하는 것이 낫다, ③나의 안전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 집단 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문항은 세 번째 문항 뿐이다. 내국인은 외국인보다 '나의 안전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6-24〉 참조).

중국인의 경우에는 위의 세 개 문항 모두에서 내국인보다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미국인의 경우에도 두 개 문항에서 내국인보다 평균값이 낮았다(〈표 6-25〉, 〈표 6-27〉 참조). 즉, 국내 체류 중국인은 내국인보다 문제사태에서 '직접 주먹으로 해결한다거나 사람들과 힘을 합쳐 보복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낮으며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도 내국인에 비하여 낮은 상태이다. 미국인 역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다'는 문항에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나의 안전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내국인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다.

몽골인의 반응은 이와 대조를 보인다. 몽골인은 상대적으로 내국인에 비하여 문제사태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보복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또한 '나의 안전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도 내국인보다 강하다.

이러한 경향성은 몽골인의 높은 폭력범죄 발생률을 일부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인은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도 '내가 억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는 문항에서 내국인보다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고, '직접 주먹으로 해결한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힘을 합쳐 보복하는 것이 낫다'는 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으로서 갖게 되는 언어적인 제약이나 법지식의 제한, 불법체류의 문제는 외국인의 취약성으로 작용하여⁴⁵⁾ 문제사태에서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국민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

국인의 폭력범죄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외국인은 폭력범죄 발생률은 내국인보다 낮은 상태지만, 폭력범죄의 하위 범주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비율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러한 외국인으로서의 취약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은 필리핀,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도 그런 인식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인식은 ‘폭력행위 등 위반’의 발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 주취폭력에 대한 경찰의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의 필요성

한국 경찰의 주취폭력 대응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은 외국인의 이전 본국에서의 경험에 따라 그 평가가 매우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체류하기 전 본국에서 경찰의 주취폭력 관련 대응이 관대했던 경우에는 한국 경찰의 주취폭력 대응이 관대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본국 경찰의 주취폭력 관련 대응이 엄격했던 경우에는 한국 경찰의 대응이 매우 관대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경찰에 대한 평가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중국인과 몽골인은 한국인과 비교하여 주취폭력에 대한 한국 경찰의 대응이 관대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스리랑카인은 주취폭력에 대한 한국 경찰의 대응이 매우 관대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한국 경찰의 주취폭력 대응에 대한 평가가 매우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중국인의 주취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접할 수 있다(최영신·강석진, 2012: 176).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폭력가해의 경우에 음주상태에서 폭력이 발생한 비율은 외국인이 65%로서 내국인의 5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표 4-14〉 참조), 외국인의 주취폭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취폭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45)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국인이 시비를 걸면서 무시한 적이 있어요. 기분이 나뻐서만 말을 하면 싸움이 붙어버릴까봐 참았어요. 싸움이 붙으면 경찰서에 가게 되면 불리한 것은 외국인들이잖아요. 저는 합법체류 이었음에도 불법체류 친구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어요.”(심층면담자료 3-1). “한국인 사장이 근로지 변경을 이유로 돈을 달라고 했어요.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거꾸로 신고를 당해서 혹시 방글라데시에 돌아가게 되면 다시 못 들어올 까봐, 나한테 뒤집어 씌어서 돌아가게 될까봐 신고하지 못했어요.”(심층면담자료 3-2).

하는 분위기이다⁴⁶⁾.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음주상태에서의 폭력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경찰이 주취폭력에 대하여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이 주취상태의 폭력에 대하여 엄정한 기준을 갖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주취폭력 관련 법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될 것이다.

2. 외국인의 폭력범죄 관련 법지식 개선을 위한 노력

‘폭력 관련 법지식’의 6개 문항 중에서, 외국인 전체는 5개 문항에서 법지식의 평균 값이 내국인보다 낮았으며, 한 개 문항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법지식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한국의 폭력범죄 관련 법지식이 부족한 것이다. 내국인이 폭력범죄와 관련된 국내법의 내용을 외국인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외국인의 국질별로 보면, ‘폭력 관련 법지식’에서 특히 필리핀, 타이, 몽골, 한족(중국)의 법지식 수준이 매우 낮았다. 조선족(중국)의 경우에는 폭력 관련 법지식 수준이 한국인보다 높아 한족과 대조를 보인다.

법교육은 법의식의 고양을 통해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법지식은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을 차지하므로 폭력 관련 법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법교육이 제공된다면 폭력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인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해소 필요성

설문조사자료의 분석결과를 보면, 내국인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보다 위험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범죄율이 높으며, 외국인범죄는 대부분 불법체류자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더 위험하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내국인은 전체응답자의 58%이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다’는 문항에는 75%가, ‘외국인

46) 제주의소리(2014) “주취폭력 대응 단호, 경찰 협박 40대 구속”. 연합뉴스(2011) “강원경찰,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주폭’ 강력대응”. 김영식·김용민(2011) “상습 주취 소란자 처우에 관한 연구”. 경북일보(2016) “주취자 소란, 관용의 대상 아니다”

범죄는 대부분 불법체류자에 의해서 발생할 것이다'는 문항에는 7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내국인은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에 근거한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 연구의 제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외국인의 범죄발생비율은 내국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위협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가 바로 범죄율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식에서도 내국인의 인식은 현실과 간극이 크다.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이들을 거의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불법체류자의 범죄발생율은 합법체류자에 비하여 오히려 낮다(최영신·강석진, 2012: 87).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잘못된 편견과 오해는 외국인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양산하고, 외국인의 한국사회적응을 방해한다.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은 외국인 범죄의 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외국인 범죄의 사례분석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을 '노동현장에서의 불평등과 무시로 인한 범죄'와 '외국인으로서 받는 일상적인 무시가 분노로 표출되는 범죄'로 구분하였다(최영신·강석진, 2012: 170-174).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조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의 불공평한 보도 태도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⁴⁷⁾ 우리사회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편견의 해소는 외국인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이다.

4. 외국인 지원 정책의 적극적 활용

외국인의 폭력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외국인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식을 살펴보면, 두 집단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내국인은 '한국법규에 대한 법교육·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강조하며,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통역 서비스의 확대', '외국인의 고충 상담 기능 강화', '외국인에

47) "언론, 한국 경찰 쪽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국인은 괜찮고 외국인은 사건 한 건만 발생해도 온 국민 사람들이 반감을 사게 만들고,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심층면담자료 1-7).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제거'를 강조한다.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법의식, 경찰에 대한 신뢰도 등은 내국인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체로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폭력에 대해 부정적이고, 법의식 수준도 고무적이며, 경찰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편이다.

한편 외국인의 폭력 및 법 관련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이지만, 외국인으로서 언어적 제약과 법지식의 부족, 불법체류의 문제 등 고유한 취약성으로 인해 폭행 피해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욕구는 더 증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인 대상 통역 서비스의 확대', '외국인의 고충 상담 기능 강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제거' 등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은 바로 외국인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윤정(1991). 법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경찰청(2012~2015). 2011~2014 범죄통계.
- 곽한영(2007).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자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교육학박사학위논문.
- 김기두(1975). 폭력범죄의 현황과 그 대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6(1), 5-30.
- 김대근·전영실·이정민·주현경·김정규(2014).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병학·고길곤·김대중(2013).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위협요인의 실재 여부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국인 범죄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343-372.
- 김정규(2015).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 상징적 폭력과 차별. 형사정책연구, 26(2), 305-332.
- 김정규·신동준(2010). 이민사회와 범죄: 쟁점과 전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95-418.
- 김종열·김창호·하정훈(2013).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안전학회지 9(1), 183-217.
- 김종오(2009). 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4), 97-127.
- 김준호(1996).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선애(199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영식·김용민(2011) 상습 주취 소란자 처우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5(1), 31-58.
- 김해성 외(2007). 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 법무부.

- 문용린(1992).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민소영(2013). 문화예술을 활용한 마을만들기의 경험: 광주시 시화문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0, 32-73.
- 민수홍(2014). 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범죄자의 배우자학대 가해경험. 한국범죄학 8(1), 195-223.
- 박성혁(1992). 초·중·고생의 법태도 발달과 법교육 개선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우(2011). 한국의 재한조선족 연구 현황. 재외한인연구, 25, 207-228.
- 박형민·황정인·탁종연(2010).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2015). 2011~2014 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
- 신동일(2010). 외국인, 외국인 범죄, 그리고 합리적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 (84), 275-3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동준(2010). 외국인 체류자 범죄 문제와 사회통합 방안.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움 발표문, 109-131. 9월
- 신동준(2012).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4), 183-2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수경(2005). 한국체류 조선족의 갈등과 적응. 인문연구, 48, 243-277.
- 이영수(2008) 법교육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2003). 법사회학. 서울: 법문사.
- 이훈동(2011). 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의 연구. 교정연구, 52, 7-24.
- 임광순(2015). 국내 조선족 범죄의 실제와 방향성. 역사비평, 111, 358-384.
- 임준태(2010). 외국인 범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2101(08), 1-37.
- 임희섭(1974).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5(1),

33-81.

전영실(2004). 가해자/피해자의 음주상태에 따른 폭력범죄 특성. 한국피해자학회, 12(2): 307-338.

조병인(1996).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피해 및 보호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박철현(1998). 불법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차훈진·조영철(2012). 외국인 범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8(2), 187-211.

최봉영(2014). 국내 외국인 근로자 폭력범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영신(2010).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외국인범죄의 주범이 아니다. 미드리, 2, 50-57.

최영신·강석진(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김윤나·김용성(2009).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1):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 연구총서, 09-24-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최영신(1994).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박형민·이순래·노성호·조은경·박순진·박정선·박철현(2003).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한 연구: 진단과 처방. 2003-3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세영·이현(2011). 외국인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2), 25-51.

Agnew, R.(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8.

Agnew, R., & White, H. R.(1992).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 475.

Ajzen, I., &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u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Alba, R., & Nee, V.(1997). Rethinking Assimilation Theory for a new era of

-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826-876.
- Allport, G.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MA: Addison-Wesley.
- Bean, F. D., & Fix, M.(1992). *The significance of resent immigration policy reforms in the United States*. Pp. 41-55 in *Nation of Immigrants*, edited by G. Freeman and J. Jup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ll, B., & Machin, S.(2010). Crime and immigration: Evidence from large immigrant waves in the UK. *CReAM Discussion Paper series*.
- Blalock, H. M., Jr.(1967). *Toward a theory of minority-group relations*. Capricorn Books.
- Blumer, H.(1958). Race prejudice as a sense of group position.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 3-7.
- Bobo, L., & Hutchings, V. L.(1996). Perceptions of racial group competition: Extending Blumer's theory of group position to a multiracial social contex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951-972.
- Bourdieu, P. (1989). Social space and symbolic power. *Sociological Theory*, 7, 14-25.
- Bratton, W., & Knobler, P.(2009). *The Turnaround: How America's top cop reversed the crime epidemic*. Random House.
- Butcher, K.F., & Piehl, A. M.(1998). Cross-city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and crime.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7, 457-493.
- Cloward, R., & Ohlin, L.(1960). *Delinquency and opportunity: A theory of delinquent gangs*. New York: Free Press.
- Cohen, A.(1955). *Delinquent boys*. New York: Free Press.
- Cullen, F. T., & Agnew, R.(2003).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 Essential readings*. Los Angeles, CA: Roxbury.
- Eitle, D., D'Alessio, S. J., & Stolzenberg, L.(2002). Racial threat and social control: A test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threat of black crime hypotheses. *Social Forces*, 81(2), 557-576.

- Featherstone, B., Hearn, J., & Toft, C.(1996). *Violence and gender relations: theories and interventions*. B. Fawcett (Ed.). London: Sage.
- Feldmeyer, B.(2009). Immigration and violence: The offsetting effects of immigrant concentration on Latino violence. *Social Science Research* 38(3), 717-731.
- Feldmeyer, B., & Steffensmeier, D.(2009). Immigration effects on homicide offending for total and race/ethnicity-disaggregated populations (White, Black, and Latino). *Homicide Studies*, 13(3), 211-226.
- Fox, J. A.(2000). Demographics and U.S. Homicide. In Alfred Blumstein and Joel Wallman, (ed.). *The crime drop in Americ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M. R.,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ogger, J.(2000). An economic model of recent trends in violence. In Alfred Blumstein and Joel Wallman, (ed.). *The crime drop 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gan, J., & Palloni, A.(1999). Sociological criminology and the mythology of Hispanic immigration and crime. *Social Problems*, 46, 617-632.
- Hagan, J., Levi, R., & Dinovitzer, R.(2008). The symbolic violence of the crime-immigration nexus: Migrant mythologies in the Americas. *Criminology & Public Policy*, 7, 95-115.
- Hickman, L. J., & Suttrop, M. J.(2008). Are deportable aliens a unique threat to public safety? Comparing the recidivism of deported and non-deportable aliens. *Criminology & Public Policy*, 7, 59-82.
- Jacobs, D., & Wood, K.(1999). Interracial conflict and interracial homicide: Do political and economic rivalries explain white killings of blacks or black killings of whi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157-190.
- Kluegel, J. R., & Smith, E. R.(1986). *Beliefs about inequality: Americans' views of what is and what ought to b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Kornhauser, R. R.(1978).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 A. R., & Sibrel, P. A.(1989).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Alcohol Consumption and Interpersonal Aggression The Potential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lcohol-Related Criminal Violenc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6(3), 299-324.
- Lee, M.T., & Martinez, R. jr.(2002). Social disorganization revisited: Mapping the recent immigration and Black homicide relationship in Northern Miami. *Sociological Focus*, 35, 365-382.
- Lee, M., Martinez, R. Jr, & Rosenfeld, R.(2001). Does immigration increase homicide? Negative evidence from three border citi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42, 559-580.
- Levitt, S., & Donohue, J. J.(2001). The impact of legalized abortion on crim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2), 379-420.
- Liska, A. E., & Chamlin, M. B.(1984). Social structure and crime control among macrosocial uni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119-138.
- Martin, S. E.(2001). The links between alcohol, crim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xplanations, evidence and interventions. *The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10(2), 136-158.
- Martinez, R. Jr.(1997). Homicide among the 1980 Mariel refugees in Miami: Victims and offender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9, 107-122.
- Martinez, R. Jr.(2000). Immigration and urban violence: The link between immigrant Latinos and types of homicide. *Social Science Quarterly*, 81, 363-374.
- Martinez, R. Jr.(2002). *Latino Homicide: Immigration, violence and community*. New York: Routledge Press.
- Mears, D. P.(2001). The immigration-crime nexus: Toward an analytic framework for assessing and guiding theory, research, and policy.

- Sociological Perspectives*, 44(1), 2-19.
- Merton, R. K.(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672-682.
- Paternoster, R., & Mazerolle, P.(1994). General strain theory and delinquency: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1(3), 235-263.
- Pernanen, K.(1981). Theoretic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use and crime. *Drinking and Crime*, 1-69.
- Peterson, R. D., & Krivo, L. J.(1993). Racial segregation and black urban homicide. *Social Forces*, 71(4), 1001-1026.
- Piquero, A. R., MacDonald, J., Dobrin, A., Daigle, L. E., & Cullen, F. T.(2005). Self-control, violent offending, and homicide victimization: Assess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1(1), 55-71.
- Portes, A., & Zhou, M.(1993). The new second generation: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variant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530, 74-96.
- Rattner, A.(1997). Crime and Russian immigration: Socialization or importation? The Israeli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38, 235-248.
- Reid, L. W., Weis, H. E., Adelman, R. M., & Jaret, C.(2005). The immigration-crime relationship: Evidence across U.S. Metropolitan areas. *Social Science Research*, 34(4), 757-780.
- Sampson, R. J.(2006). Open doors don't invite criminals: Is increased immigration behind the drop in crime? New York Times March 11.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2006/03/11/opinion/11sampson.html?_r=0&pagewanted=print
- Sampson, R. J., & Laub, J. H.(1995).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Harvard University Press.

- Sampson, R. J., & Lauritsen, J. L.(1997).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Pp. 311-74 in *Ethnicity, Crime and Immigration: Comparative and cross-national perspectives*.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21, edited by M. Ton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mpson, R. J., Raudenbush, S. W., & Earls, F.(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918-924.
- Sampson, R. J., Morenoff, J. D., & Raudenbush, S. W.(2005). Social anatomy of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5, 224-232.
- Shaw, C. R., & McKay, H. D.(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olivetti, L. M.(2010). *Immigration, social integration and crime: A cross-national approach*. New York: Routledge.
- Spellman, W.(2000). The limited importance of prison expansion. In Alfred Blumstein and Joel Wallman (ed.). *The crime drop 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well, J. I., Messner, S. F., McGeever, K. F., & Raffalovich, E.(2009). Immigration and the recent violence crime drop in the United States: A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analysis of Metropolitan areas. *Criminology*, 47(3), 889-928.
- Sullivan, M. L.(1989). *Getting paid: Youth crime and work in the inner cit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Sykes, G. M., & Matza, D.(1957).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6), 664-670.
- Teitelbaum, M.S., & Weiner, M.(1995). *Threatened peoples, threatened borders: Migration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Norton.
- Tonry, M.(1997). Ethnicity, crime and immigration. Pp. 1-29. in *Ethnicity*,

- crime, and immigration: Comparative and cross-national perspectives.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21. edited by M. Ton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dsworth, T.(2010). Is immigration responsible for the crime drop? An assessment of the influence of immigration on changes in violent crime between 1990 and 2000. *Social Science Quarterly*, 91(2), 531-553.
- Warner, B. D., & Fowler, S. K.(2003). Strain and violence: Testing a general strain theory model of community viole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1(6), 511-521.
- Waters, T.(1999). Crime and immigrant youth. Thousand Oaks, CA: Sage.
- Yeager, M. G.(1997). Immigrants and criminality: A cross-national review. *Criminal Justice Abstracts* 29, 143-171.
- Zimring, F. E.(2007). *The great American crime decl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기사 자료〉

- 경북일보(2016.10.24). 주취자 소란, 관용의 대상 아니다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74208>
- 연합뉴스(2011.6.23). 강원경찰,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주폭 강력대응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6/23/0706000000AKR20110623122700062.HTML>
- 연합뉴스 (2015.7.9). ‘마이웨이’ 트럼프 멕시코정부가 범죄자들 계속 미국에 보낸다. 2015/07/0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9/0200000000AKR20150709000600071.HTML?35f16fe0>
- 제주의소리(2014.11.17). 주취폭력 대응 단호, 경찰 협박 40대 구속 <http://www.jeju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54774>
- 한겨레(2016. 3. 14). ‘제노포비아’ 심각...32% 이민자와 이웃되기 싫어. 2016/03/1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4900.html?_fr=st1

〈인터넷 자료〉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http://www.police.go.kr> 경찰청(경찰통계연보)

Abstract

The study on violent crimes by foreigners

Choi, Young-shin¹⁾ · Jang, Hyun-seok²⁾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violent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nd to figure out whether fear towards violence of foreigners and the seriousness of foreign crime are actually based on appropriate evidence.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violent crime is based on crime classification from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hereby violent crimes are differentiated (e.g., physical assault or battery) from serious 'violent' crimes (e.g., homicide, sexual violence, armed robbery etc.).

The research method can be divided into four sections. The literature review, official crime statistics from the police, interviews and surveys with Korean and non-Korean. Due to systematic change in police crime classification on 2011, the current study used crime statistics from 2011 to 2014. Subsequently, 8 migrant worker and 2 Korean migrant support workers were interviewed in order to obtain qualitative data. Finally, for the survey data collection, a total of 1,792(500 of Korean and 1,292 of non-Korean) were initially invited to fill out the questionnaire. After excluding the incomplete answers, total 1,709 surveys were included for the data analysis.

This study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 Professor of Kyonggi University.

1. Trends and features of foreigners' violent crime based on police crime data

① Trends and prevalence of foreigners' crimes

From 2011 to 2014, physical assaults(31.6%) were the most prevalently committed crime by foreigners according to the official police data. During the same time period, armed robbery decreased by 0.5%, while sexual crimes and traffic related crimes had increased by 1.6% and 21.9% respectively.

② Comparison of crime prevalence between Korean and non-Korean.

From 2011 to 2014, the Korean citizens' crime rate (per 100,000) was much higher than non-Koreans' crime rate consistently. In 2011, foreigners were recorded the highest crime rate (1,420 crimes per 100,000 population), while Korean citizens committed 3,524 crimes per 100,000 population. Therefore, the crime rate of Korean citizens was 2.5 times higher than that of foreigners. Furthermore, the crime rate of Korean citizens was approximately 2.9 times higher in 2012 and 2013 respectively, and 2.8 times higher in 2014 than that of foreigners.

③ Prevalence and features of foreigners' violent crimes

It is clear that the magnitude of violent crime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Korean citizens than that of non-Koreans. From 2011 to 2014, violent crime rate of foreigners were ranged between 53% and 55% of Korean citizens.

In addition, most foreign migrant workers were frequently charged with 'the Act of Punishment of Violence³⁾', because two or more persons assaulted victim(s) in many incidents. This characteristic might come from the relative vulnerability of foreigners.

3) The Act of Punishment of Violence is the special law of the Criminal Law in order to harshly punish for certain types of violent criminal behaviors.

2. Offender and victim characteristics in violent crimes by foreigners

① Offender characteristics of violent crimes by foreigner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violent crimes between Koreans and non-Koreans. Victims of foreigners' physical assaults were usually acquaintances from the same country with the offenders. Violent crimes by foreigners were more likely to be committed by two or more offenders together. Weapons are rarely used during these attacks. Foreigners who had the experience of committing violent crime, revealed that discrimination and abuse against them were the main reasons for the attacks.

② Characteristic of violent crime victimization among foreigners

Most violent crime victims among foreigners were attacked by coworkers and were likely report that the attacks were due to symbolic violence (discrimination, prejudices etc). Moreover, the victims rarely reported the incidents to the police after the victimization.

3. Factors of violent crimes by foreigners

① Risk factors of violent crimes by foreigners.

Discrimination and symbolic violence towards foreigners can affect foreign physical assaults. Foreigners tend to think that they endure more discrimination compared to Korean people in both workplaces and everyday circumstances. Therefore, symbolic violence was a significant factor bring violent crimes by foreigners.

② Preventive factors of violent crimes by foreigners.

Foreigners had a stronger level of cohesion with people, who came from the same country with them in comparison to the cohesion with Korean people. Therefore, by supporting foreigners own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encouraging networking with Korean local communities at the same time, our society might be able to integrate and aid foreigners to settle down in Korea.

4. Foreigners' perception on violence and law

① Attitudes toward violence between Korean and Foreigners

Foreigners have a tendency to show more passive and negative attitude towards violence, compared to Koreans. They have less acceptability towards 'necessity of violence' and 'effectiveness of violence', and have shown more negative views on violence.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disciplinary violence between Korean and non-Korean. In general, foreigners tended to accept violence unfavorably compared to Koreans. It can imply that foreigners will be less inclined to accept violent crime than Koreans.

② Perception on the law between Korean and foreigners

Foreigners also showed the higher level of favorable attitudes toward the law than Koreans. This result can demonstrate the reason why the frequency of foreign crimes is lower than Koreans in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5. Discussion to prevent and reduce violent crime by foreigner.

The following policies were suggested to prevent and reduce the violent crimes by foreigners; 1) Improving public security system for foreigners considering the vulnerability of foreigners living in foreign country, 2) A policy that is aimed to reduce symbolic violence -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abusiveness - towards foreigners, 3) Supporting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courage them to have stable connection with people from their own country, 4) Educating and promoting to reduce joint attacks by foreigners, 5) Strict and consistent attitude of police towards alcohol-related violence, 6) Improving the awareness of the law related to the violent crimes among foreigners and 7) Reducing the prejudice and misunderstanding of Koreans towards foreigners.

[부록 1] 심층면담자료 분류체계

100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양상 및 특성

110 폭력범죄의 특성

- 111 집단폭행
- 112 보복형태의 집단폭행
- 113 주취폭력
- 114 무기사용
- 115 국적별 특성 (중국 동포, 러시아 동포, 동남아시아 국가 등)

120 무기소지

- 121 무기소지 비율이 낮음
- 122 현지 내 무기소지
- 123 한국에서의 무기소지
- 124 현지에서는 소지했으나 한국에서는 소지하지 않음

130 폭행 피해 경험

- 131 직장상사에 의한 폭행
- 132 직장동료에 의한 폭행
- 133 한국인에 의한 폭행
- 134 외국인에 의한 폭행
- 135 사업장 변경 목적 폭행 유도
- 136 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

140 폭행 가해 경험

- 141 폭행 가해 이유
- 142 직장상사에 대한 폭행
- 143 직장동료에 대한 폭행
- 144 한국인에 대한 폭행
- 145 외국인에 대한 폭행

200 외국인의 차별경험과 범죄 발생

210 한국사회에서의 차별경험

- 211 외국인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외국인이 폭력적일 것이라는 인식)
- 212 직장 내에서의 차별경험 (임금체불, 언어적 폭력)
- 213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
- 214 체류상태로 인한 피해
- 215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 (서양국가, 동남아시아, 중국·러시아 동포와 재일·재미 교포)

220 차별로 인한 폭력 발생

300 외국인의 법의식 및 폭력에 대한 태도

310 법의식 차이

- 311 법의식의 차이
- 312 한국 법규에 대한 이해 ('폭력행위등'에 해당되는 가중 처벌)
- 313 한국 내 정착 후 인식의 변화

320 폭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

- 321 폭력의 의미 (폭력이 남성스러움의 상징으로 사용됨)
- 322 폭력의 필요성
- 323 한국 내 정착 후 인식의 변화
- 324 문제발생시 자체 해결 경향

330 본국의 치안상태와 법의식 및 폭력에 대한 태도 차이

- 331 본국 사람들의 폭력에 대한 태도
- 332 공권력의 부재 (공권력의 부재로 인한 보복문화, 부정부패)
- 333 자기방어 및 무기 소지 비율

340 외국인의 한국 경찰에 대한 인식

- 341 경찰에 대한 부정적 시각 (내·외국인 차별,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더 많이 함)
- 342 경찰에 대한 긍정적 시각 (비교적 공정하고 법에 따라 행동함)
- 343 외국인이 느끼는 한국의 치안 상태

[부록 2]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국적별 분포 (2011-2014)

〈부록 표 1〉 체류외국인(불법체류 포함) 국적별 분포(2014)

국적	체류상태 합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불법체류
		소계	등록	거소신고		
총계	2,006,396 (100.0)	1,377,945 (68.7)	1,091,531 (54.4)	286,414 (14.3)	419,673 (20.9)	208,778 (10.4)
중국 전체	968,965 (48.3)	752,793 (77.7)	546,746 (56.4)	206,047 (21.3)	145,861 (15.1)	70,311 (7.3)
한국계	609,982 (30.4)	581,619 (95.4)	375,572 (61.6)	206,047 (33.8)	9,237 (1.5)	19,126 (3.1)
중국	358,983 (17.9)	171,174 (47.7)	171,174 (47.7)	-	136,624 (38.1)	51,185 (14.3)
베트남	156,905 (7.8)	122,571 (78.1)	122,571 (78.1)	-	7,402 (4.7)	26,932 (17.2)
미국	139,667 (7.0)	70,783 (50.7)	24,890 (17.8)	45,893	65,880 (47.2)	3,004 (2.2)
타이	138,592 (6.9)	26,827 (19.4)	26,827 (19.4)	-	67,482 (48.7)	44,283 (32.0)
필리핀	66,336 (3.3)	43,155 (65.1)	43,155 (65.1)	-	10,367 (15.6)	12,814 (19.3)
인도네시아	54,066 (2.7)	38,718 (71.6)	38,718 (71.6)	-	8,111 (15.0)	7,237 (13.4)
일본	50,145 (2.5)	24,014 (47.9)	23,237 (46.3)	777 (1.5)	25,138 (50.1)	993 (2.0)
우즈베키스탄	48,479 (2.4)	39,281 (81.0)	34,710 (71.6)	4,571 (9.4)	4,571 (9.4)	4,627 (9.5)
타이완	32,036 (1.6)	21,014 (65.6)	21,014 (65.6)	-	10,125 (31.6)	897 (2.8)
몽골	31,970 (1.6)	17,334 (54.2)	17,334 (54.2)	-	7,227 (22.6)	7,409 (23.2)
스리랑카	30,289 (1.5)	24,582 (81.2)	24,582 (81.2)	-	1,475 (4.9)	4,232 (14.0)
캐나다	25,076 (1.2)	20,219 (80.6)	5,747 (22.9)	14,472 (57.7)	4,134 (16.5)	723 (2.9)
방글라데시	18,953 (0.9)	12,065 (63.7)	12,065 (63.7)	-	2,579 (13.6)	4,309 (22.7)
러시아(연방)	15,590 (0.8)	9,523 (61.1)	5,110 (32.8)	4,413 (28.3)	4,902 (31.4)	1,165 (7.5)
파키스탄	14,218 (0.7)	9,017 (63.4)	9,017 (63.4)	-	2,191 (15.4)	3,010 (21.2)
키르기스스탄	3,287 (0.2)	2,686 (81.7)	2,686 (81.7)	-	601 (18.3)	-
기타	211,822 (10.6)	143,363 (67.7)	133,122 (62.8)	10,241 (4.8)	51,627 (24.4)	16,832 (7.9)

출처: 2014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국적_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442면), 국적_지역 및 연령별 단기체류외국인 현황(686면), 외국적동포거소신고 현황(758면); 경찰청 통계연보, 불법체류자 현황(304면) 참조

<부록 표 2> 체류외국인(불법체류 포함) 국적별 분포(2013)

국적 \ 체류상태	합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불법체류
		소계	등록	거소신고		
총계	1,759,140 (100.0)	1,219,192 (69.3)	985,923 (56.0)	233,269 (13.3)	356,842 (20.3)	183,106 (10.4)
중국전체	847,356 (48.2)	648,376 (76.5)	490,933 (57.9)	157,443 (18.6)	129,737 (15.3)	69,243 (8.2)
한국계	517,103 (29.4)	487,278 (94.2)	329,835 (63.8)	157,443 (30.4)	10,711 (2.1)	19,114 (3.7)
중국	330,253 (18.8)	161,098 (48.8)	161,098 (48.8)	-	119,026 (36.0)	50,129 (15.2)
베트남	147,309 (8.4)	113,843 (77.3)	113,843 (77.3)	-	6,226 (4.2)	27,240 (18.5)
미국	137,853 (7.8)	68,691 (49.8)	23,990 (17.4)	44,701 (32.4)	66,020 (47.9)	3,142 (2.3)
타이	75,770 (4.3)	26,185 (34.6)	26,185 (34.6)	-	28,920 (38.2)	20,665 (27.3)
필리핀	60,528 (3.4)	38,768 (64)	38,768 (64.0)	-	8,731 (14.4)	13,029 (21.5)
일본	57,023 (3.2)	23,880 (41.9)	23,087 (40.5)	793 (1.4)	32,201 (56.5)	942 (1.7)
인도네시아	48,222 (2.7)	33,195 (68.8)	33,195 (68.8)	-	8,304 (17.2)	6,723 (13.9)
우즈베키스탄	43,485 (2.5)	34,448 (79.2)	30,699 (70.6)	3,749 (8.6)	4,067 (9.4)	4,970 (11.4)
몽골	31,922 (1.8)	18,382 (57.6)	18,382 (57.6)	-	5,793 (18.1)	7,747 (24.3)
타이완	28,583 (1.6)	21,187 (74.1)	21,187 (74.1)	-	6,458 (22.6)	938 (3.3)
스리랑카	27,719 (1.6)	21,883 (78.9)	21,883 (78.9)	-	1,500 (5.4)	4,336 (15.6)
캐나다	24,297 (1.4)	19,474 (80.1)	6,004 (24.7)	13,470 (55.4)	4,181 (17.2)	642 (2.6)
방글라데시	18,125 (1.0)	10,888 (60.1)	10,888 (60.1)	-	2,712 (15.0)	4,525 (25.0)
러시아(연방)	13,821 (0.8)	8,691 (62.9)	5,012 (36.3)	3,679 (26.6)	4,113 (29.8)	1,017 (7.4)
파키스탄	13,602 (0.8)	8,273 (60.8)	8,273 (60.8)	-	2,149 (15.8)	3,180 (23.4)
키르기스스탄	3,533 (0.2)	2,362 (66.9)	2,362 (66.9)	-	574 (16.2)	597 (16.9)
기타	179,992 (10.2)	120,666 (67.0)	111,232 (61.8)	9,434 (5.2)	45,156 (25.1)	14,170 (7.9)

출처: 2013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해당 자료 참조.

〈부록 표 3〉 체류외국인(불법체류 포함) 국적별 분포(2012)

국적 \ 체류상태	합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불법체류
		소계	등록	거소신고		
총 계	1,622,957 (100.0)	1,120,599 (69.0)	932,983 (57.5)	187,616 (11.6)	324,504 (20.0)	177,854 (11.0)
중국전체	768,236 (47.3)	590,537 (76.9)	474,806 (61.8)	115,731 (15.1)	107,907 (14.0)	69,792 (9.1)
한국계	466,786 (28.8)	438,592 (94.0)	322,861 (69.2)	115,731 (24.8)	9,285 (2.0)	18,909 (4.1)
중국	301,450 (18.6)	151,945 (50.4)	151,945 (50.4)	-	98,622 (32.7)	50,883 (16.9)
베트남	145,919 (9.0)	114,211 (78.3)	114,211 (78.3)	-	6,043 (4.1)	25,665 (17.6)
미국	133,899 (8.3)	67,575 (50.5)	23,440 (17.5)	44,135 (33)	62,987 (47.0)	3,337 (2.5)
타이	63,531 (3.9)	21,423 (33.7)	21,423 (33.7)	-	24,517 (38.6)	17,591 (27.7)
일본	58,231 (3.6)	23,396 (40.2)	22,648 (38.9)	748 (1.3)	33,778 (58.0)	1,057 (1.8)
필리핀	55,823 (3.4)	33,194 (59.5)	33,194 (59.5)	-	9,013 (16.1)	13,616 (24.4)
인도네시아	44,126 (2.7)	29,812 (67.6)	29,812 (67.6)	-	8,117 (18.4)	6,197 (14.0)
우즈베키스탄	39,317 (2.4)	30,879 (78.5)	28,022 (71.3)	2,857 (7.3)	3,809 (9.7)	4,629 (11.8)
몽골	35,141 (2.2)	19,779 (56.3)	19,779 (56.3)	-	6,682 (19.0)	8,680 (24.7)
타이완	31,284 (1.9)	21,176 (67.7)	21,176 (67.7)	-	9,194 (29.4)	914 (2.9)
스리랑카	25,893 (1.6)	21,002 (81.1)	21,002 (81.1)	-	1,352 (5.2)	3,539 (13.7)
캐나다	23,799 (1.5)	19,158 (80.5)	6,272 (26.4)	12,886 (54.1)	3,893 (16.4)	748 (3.1)
방글라데시	18,208 (1.1)	10,766 (59.1)	10,766 (59.1)	-	2,818 (15.5)	4,624 (25.4)
파키스탄	13,245 (0.8)	7,876 (59.5)	7,876 (59.5)	-	2,151 (16.2)	3,218 (24.3)
러시아(연방)	12,359 (0.8)	7,711 (62.4)	5,249 (42.5)	2,462 (19.9)	3,650 (29.5)	998 (8.1)
키르기스스탄	3,423 (0.2)	2,243 (65.5)	2,243 (65.5)	-	543 (15.9)	637 (18.6)
기 타	150,523 (9.3)	99,861 (66.3)	91,064 (60.5)	8,797 (5.8)	38,050 (25.3)	12,612 (8.4)

출처: 2012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해당자료 참조

〈부록 표 4〉 체류외국인(불법체류 포함) 국적별 분포(2011)

국적	체류상태 합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불법체류
		소계	등록	거소신고		
총계	1,562,857 (100.0)	1,117,481 (71.5)	982,461 (62.9)	135,020 (8.6)	277,596 (17.8)	167,780 (10.7)
중국전체	744,988 (47.7)	609,569 (81.8)	536,699 (72)	72,870 (9.8)	68,385 (9.2)	67,034 (9.0)
한국계	487,854 (31.2)	462,268 (94.8)	389,398 (79.8)	72,870 (14.9)	8,302 (1.7)	17,284 (3.5)
중국	257,134 (16.5)	147,301 (57.3)	147,301 (57.3)	-	60,083 (23.4)	49,750 (19.3)
미국	139,609 (8.9)	66,887 (47.9)	26,466 (19.0)	40,421 (29.0)	65,246 (46.7)	7,476 (5.4)
베트남	135,095 (8.6)	110,564 (81.8)	110,564 (81.8)	-	5,655 (4.2)	18,876 (14.0)
타이	59,725 (3.8)	25,977 (43.5)	25,977 (43.5)	-	19,653 (32.9)	14,095 (23.6)
일본	59,405 (3.8)	21,763 (36.6)	21,126 (35.6)	637 (1.1)	36,406 (61.3)	1,236 (2.1)
필리핀	59,393 (3.8)	38,366 (64.6)	38,366 (64.6)	-	9,164 (15.4)	11,863 (20.0)
인도네시아	42,617 (2.7)	29,573 (69.4)	29,573 (69.4)	-	7,326 (17.2)	5,718 (13.4)
몽골	38,302 (2.5)	21,278 (55.6)	21,278 (55.6)	-	7,356 (19.2)	9,668 (25.2)
우즈베키스탄	34,770 (2.2)	25,803 (74.2)	24,380 (70.1)	1,423 (4.1)	3,939 (11.3)	5,028 (14.5)
타이완	27,223 (1.7)	21,381 (78.5)	21,381 (78.5)	-	4,892 (18.0)	950 (3.5)
스리랑카	24,169 (1.5)	20,483 (84.7)	20,483 (84.7)	-	1,071 (4.4)	2,615 (10.8)
캐나다	22,526 (1.4)	17,845 (79.2)	6,572 (29.2)	11,273 (50.0)	3,967 (17.6)	714 (3.2)
방글라데시	18,444 (1.2)	10,561 (57.3)	10,561 (57.3)	-	2,904 (15.7)	4,979 (27.0)
파키스탄	13,714 (0.9)	8,215 (59.9)	8,215 (59.9)	-	2,126 (15.5)	3,373 (24.6)
러시아(연방)	11,625 (0.7)	6,976 (60.0)	5,998 (51.6)	978 (8.4)	3,571 (30.7)	1,078 (9.3)
키르기스스탄	3,386 (0.2)	1,985 (58.6)	1,985 (58.6)	-	659 (19.5)	742 (21.9)
기타	127,866 (8.2)	80,255 (62.8)	72,837 (57.0)	7,418 (5.8)	35,276 (27.6)	12,335 (9.6)

출처: 2011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해당자료 참조

[부록 3]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국적	2011		2012		2013		2014	
	공식 체류 외국인수 (불법체류자 포함)	체류외국인 연령 고려 거주외국인 추정치						
외국인	1,562,857	1,931,463	1,622,957	1,988,525	1,759,140	2,137,139	2,006,396	2,422,415
중국 전체	744,988	920,697	768,236	941,280	847,356	1,029,433	968,965	1,169,876
중국 한국계	487,854	602,916	466,786	571,929	517,103	628,217	609,982	736,460
중국 한족	257,134	317,780	301,450	369,351	330,253	401,217	358,983	433,417
미국	139,609	172,536	145,919	178,787	147,309	178,962	156,905	189,439
베트남	135,095	166,958	133,899	164,060	137,853	167,474	139,667	168,626
타이	59,725	73,811	63,531	77,841	75,770	92,051	138,592	167,329
일본	59,405	73,416	58,231	71,347	60,528	73,534	66,336	80,091
필리핀	59,393	73,401	55,823	68,397	57,023	69,276	54,066	65,276
인도네시아	42,617	52,668	44,126	54,065	48,222	58,584	50,145	60,542
몽골	38,302	47,336	39,317	48,173	43,485	52,829	48,479	58,531
우즈베키스탄	34,770	42,971	35,141	43,056	31,922	38,781	32,036	38,679
타이완	27,223	33,644	31,284	38,331	28,583	34,725	31,970	38,599
스리랑카	24,169	29,869	25,893	31,725	27,719	33,675	30,289	36,569
캐나다	22,526	27,839	23,799	29,160	24,297	29,518	25,076	30,275
방글라데시	18,444	22,794	18,208	22,309	18,125	22,020	18,953	22,883
파키스탄	13,714	16,949	13,245	16,228	13,821	16,791	15,590	18,823
러시아	11,625	14,367	12,359	15,143	13,602	16,525	14,218	17,166
키르기스스탄	3,386	4,185	3,423	4,194	3,533	4,292	3,287	3,969
기타	127,866	158,024	150,523	184,428	179,992	218,668	211,822	255,743

[부록 4]

내·외국인의 법의식 및 폭력 경험에 관한 설문지 (외국인용 한글설문지)

기관번호			고유번호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내·외국인 여러분의 일상생활, 법의식, 폭력 경험 등에 대해 알아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결과는 여러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지의 모든 내용은 통계처리를 위해서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모두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제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 8.

주관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IC)

〈조사표 기입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표하거나 해당되는 숫자 및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사회에서 경험했던 차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의
장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거의 없었다	③ 조금 있었다	④ 많이 있었다
1-1. 집 주변 · 동네	_____	_____	_____	_____
1-2.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_____	_____	_____	_____
1-3. 상점·음식점 등	_____	_____	_____	_____
1-4. 공공기관(주민센터·경찰서·은행 등)	_____	_____	_____	_____
1-5. 직장·일터	_____	_____	_____	_____

2. 당신은 직장생활(아르바이트 포함)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 (3. 문항으로)

2-1.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별을 어느 정도 경험하셨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거의 없었다	③ 조금 있었다	④ 많이 있었다
2-1.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_____	_____	_____	_____
2-2.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월급은 적었다	_____	_____	_____	_____
2-3. 한국인 사장(상사), 직장동료가 나를 무시하거나 욕 을 했다	_____	_____	_____	_____
2-4. 한국인 사장(상사), 직장동료가 나에게 신체적 폭력 을 가했다	_____	_____	_____	_____

3.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1. 나는 지금 당장 이익이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3-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3.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긴다	_____	_____	_____	_____
3-4.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_____	_____	_____	_____
3-5.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3-6.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_____	_____	_____	_____

4. 다음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장 동료 혹은 본국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4-1.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한국 사람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4-2. 나는 친하게 지내는 한국 사람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4-3. 나는 직장 사람들과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낸다	_____	_____	_____	_____
4-4.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직장 동료가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4-5. 나는 본국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서로 이야기 하며 친하게 지낸다	_____	_____	_____	_____
4-6. 급할 때 약간의 돈을 빌릴 수 있는 본국 사람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5. 평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주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5-1.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	_____	_____	_____	_____
5-2.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_____	_____	_____	_____
5-3.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_____	_____	_____	_____
5-4. 직장(일) 때문에 짜증난다	_____	_____	_____	_____
5-5.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서 힘들다	_____	_____	_____	_____
5-6. 급할 때 약간의 돈을 빌릴 수 있는 본국 사람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5. 가해자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 _____ 1) 한국
- _____ 2) 본국
- _____ 3) 제3국
- _____ 4) 잘 모르겠다.

6. 가해자가 어떻게 폭행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1) 붙잡거나 흔들었다.
- _____ 2) 손으로 때렸다.
- _____ 3) 이로 물어뜯었다.
- _____ 4) 발로 찼다.
- _____ 5) 머리로 들이받았다.
- _____ 6) 도구(무기)를 사용했다.
——> (6-1. 문항으로)
- _____ 7) 기타()

6-1. 도구(무기)의 종류는 무엇이였습니까?

- _____ 1) 칼
- _____ 2) 몽둥이
- _____ 3) 술병
- _____ 4) 기타()

7. 폭행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 _____ 1) 집·거주지 주변
- _____ 2) 직장
- _____ 3) 음식점·술집 등
- _____ 4) 길거리나 공원 등 실외
- _____ 5) 은행·관공서 등 공공건물
- _____ 6)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 _____ 7) 기타()

8. 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습니까?

- _____ 1) 나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 _____ 2) 나도 상대방을 때려서 상대방도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
- _____ 3) 기타()

9. 당신은 어느 정도 다쳤습니까?

- _____ 1) 다친 곳이 없다.
- _____ 2)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났다.
- _____ 3) 간단히 치료받을 정도로 상처가 났다.
- _____ 4) 병원에 갈 정도로 많이 다쳤다.

4. 그 사건에서 폭행에 동참한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 | | |
|------------------------|----------------|
| _____ 1) 없다 (나 혼자 했다.) | _____ 4) 3명 |
| _____ 2) 1명 | _____ 5) 4명 이상 |
| _____ 3) 2명 | |

5. 가해자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 | | |
|-------------|------------------|
| _____ 1) 한국 | _____ 3) 제3국 |
| _____ 2) 본국 | _____ 4) 잘 모르겠다. |

6. 상대방을 어떻게 폭행하였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 | |
|---------------------|--|
| _____ 1) 붙잡거나 흔들었다. | _____ 5) 머리로 들이받았다. |
| _____ 2) 손으로 때렸다. | _____ 6) 도구(무기)를 사용했다.
—> (6-1. 문항으로) |
| _____ 3) 이로 물어뜯었다. | |
| _____ 4) 발로 찼다. | _____ 7) 기타() |

6-1. 도구(무기)의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 | | |
|--------------|----------------|
| _____ 1) 칼 | _____ 3) 술병 |
| _____ 2) 몽둥이 | _____ 4) 기타() |

7. 폭행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 | | |
|-----------------------|------------------------|
| _____ 1) 집·거주지 주변 | _____ 5) 은행·관공서 등 공공건물 |
| _____ 2) 직장 | _____ 6)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
| _____ 3) 음식점·술집 등 | _____ 7) 기타() |
| _____ 4) 길거리나 공원 등 실외 | |

8. 이 사건에서 상대 피해자도 맞대응하여 여러분을 때렸습니까?

- | | |
|--------------------------------------|--|
| _____ 1) 나만 일방적으로 때렸다. | |
| _____ 2) 상대 피해자도 때려서 나도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 | |
| _____ 3) 기타() | |

폭력에 대한 생각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7. 말이나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_____	_____	_____	_____
8. 많은 경우에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_____	_____	_____	_____
9. 사회발전을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10. 옳지 않은 법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11. 폭력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기도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12.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13. 자식을 때려 키우지 않아 아이들의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다	_____	_____	_____	_____
14.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15. 필요하다면 교사의 심한 체벌도 허용되어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V. 다음은 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 되는 항목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대한 생각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법은 사람들 사이에 만든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늘이 정해준 원칙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2. 법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계약과 같은 것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3. 법은 죄지는 사람을 벌하고 다스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4. 법 중에는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도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5.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법을 어긴다는 것은 나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과 같다	_____	_____	_____	_____
6. 법은 복잡하고 까다롭다	_____	_____	_____	_____
7. 법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다른 경우가 많다	_____	_____	_____	_____
8. 법은 나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	_____	_____	_____	_____
9. 나는 법이 매우 두렵다	_____	_____	_____	_____
10. 경찰서 앞을 지나갈 때면 괜히 몸이 움츠려든다	_____	_____	_____	_____
11. 법은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법에 대한 생각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2. 법으로 재판을 해도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_____	_____	_____	_____
13. 현실세계에서는 법보다 주먹이나 돈이 더 힘이 세다	_____	_____	_____	_____
14. 한국의 법은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15. 법은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_____	_____	_____	_____
16.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17. 부자가 될 수 있다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을 어길 수도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18.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19. 도둑질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죄가 아니다	_____	_____	_____	_____
20. 부자들의 돈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VI. 다음은 한국 경찰에 대한 생각, 무기 소지, 폭력 관련 법자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한국 경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각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 표를 해주십시오.

한국 경찰에 대한 생각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1. 한국 경찰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1-2. 한국 경찰은 친절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1-3. 내가 억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한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1-4. 한국 경찰은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_____	_____	_____	_____
1-5. 한국경찰은 술을 마신 후 일어난 싸움에 대하여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 같다	_____	_____	_____	_____
1-6. 외국인은 한국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한국 경찰에 대한 생각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7.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본국)사람들과 힘을 합쳐 보복하는 것이 낫다	_____	_____	_____	_____
1-8. 나의 안전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2.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칼이나 망치(무기)**등을 소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주십시오.

무기의 소지와 사용	① 전혀 모르고 있다	② 거의 모르고 있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2-1. 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칼이나 망치 등(무기)을 갖고 다닌다	_____	_____	_____	_____
2-2.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칼이나 망치 등(무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_____	_____	_____	_____
2-3. 작은 칼이나 망치 등(무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싸움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2-4. 칼이나 망치 등(무기)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것은 싸움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2-5. 내가 누군가와 싸울 때, 칼이나 망치 등이 있으면 더 안전할 것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3. 다음은 **폭력과 관련된 한국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주십시오.

폭력 관련 법규(한국) 내용	① 전혀 모르고 있다	② 거의 모르고 있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3-1. 한국에서 무기를 갖고 다니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3-2. 여러 명이 함께 때를 지어 싸우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3-3. 누군가와 싸울 때 위험한 물건(칼, 망치 등)을 사용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_____	_____	_____	_____
3-4. 나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때리면 처벌을 받는다	_____	_____	_____	_____
3-5. 내가 먼저 맞았더라도 때린 사람에게 주먹질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3-6. 심한 욕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Ⅶ. 다음은 여러분 개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적인 사항

성 별	___ 1) 남성 ___ 2) 여성	나 이	만()세
학 력	___ 1)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___ 2)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___ 3)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___ 4)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___ 5) 대학원 이상	
현재 결혼 상태	___ 1) 미혼 ___ 2) 기혼	___ 3) 동거(사실혼) ___ 4) 기타(사별·이혼 등)	
자 녀	___ 1) 없다	___ 2) 있다 ()명	
종교 (1개만 선택)	___ 1) 종교 없음 ___ 2) 개신교 ___ 3) 천주교 ___ 4) 불교	___ 6) 이슬람교 ___ 7) 힌두교 ___ 8) 기타()	

2. 국적은?

- | | |
|-----------------|-------------------|
| ___ 1) 한국 | ___ 8) 미국 |
| ___ 2) 중국(조선족) | ___ 9) 스리랑카 |
| ___ 3) 중국(한족 등) | ___ 10) 우즈베키스탄 |
| ___ 4) 베트남 | ___ 11) 몽골 |
| ___ 5) 인도네시아 | ___ 12) 타이완 |
| ___ 6) 필리핀 | ___ 13) 기타() |
| ___ 7) 타이(태국) | |

3. 당신은 현재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까?

- | | |
|--------------------------------|------------------|
| ___ 1) 혼자서 | ___ 4) 이성 동거인 |
| ___ 2) 직장동료 | ___ 5) 친구나 선후배 |
| ___ 3) 가족 또는 친척
(배우자·자녀·부모) | ___ 6) 기타() |

4.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 | |
|----------|------------|
| ___ 1) 예 | ___ 2) 아니오 |
|----------|------------|

[부록 5]

내·외국인의 법의식 및 폭력 경험에 관한 설문지 (내국인용)

기관번호			고유번호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내·외국인 여러분의 일상생활, 법의식, 폭력 경험 등에 대해 알아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결과는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지의 모든 내용은 통계처리를 위해서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모두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제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 8.

주관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IC)

〈조사표 기입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표하거나 해당되는 숫자 및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외국인에 대하여 차별적인 생각이나 행동(말이나 눈빛 등 포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의 장소에서 어느 정도 차별적 생각이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거의 없었다	③ 조금 있었다	④ 많이 있었다
1-1. 집 주변 · 동네	_____	_____	_____	_____
1-2.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_____	_____	_____	_____
1-3. 상점·음식점 등	_____	_____	_____	_____
1-4. 공공기관(주민센터·경찰서·은행 등)	_____	_____	_____	_____
1-5. 직장·일터	_____	_____	_____	_____

- 2-1. 여러분은 직장생활(아르바이트 포함)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별을 어느 정도 경험하셨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거의 없었다	③ 조금 있었다	④ 많이 있었다
2-1.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_____	_____	_____	_____
2-2.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월급은 적었다	_____	_____	_____	_____
2-3. 사장(상사), 직장동료가 나를 무시하거나 욕을 했다	_____	_____	_____	_____
2-4. 사장(상사), 직장동료가 나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_____	_____	_____	_____

4. 다음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장 동료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4-1.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4-2. 나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4-3. 나는 직장 사람들과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낸다	_____	_____	_____	_____
4-4.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직장 동료가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 외국인만 응답해 주십시오 **)				
4-5. 나는 본국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서로 이야기하며 친하게 지낸다	_____	_____	_____	_____
4-6. 급할 때 약간의 돈을 빌릴 수 있는 본국 사람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2. 폭행 가해 사건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_____ 1) 주중 _____ 2) 주말 _____ 3) 잘 모르겠음

VI. 다음은 경찰에 대한 생각, 무기 소지, 폭력 관련 법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여러분은 경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주십시오.

한국 경찰에 대한 생각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1. 경찰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1-2. 경찰은 친절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1-3. 내가 억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1-4. 경찰은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_____	_____	_____	_____
1-5. 경찰은 술을 마신 후 일어난 싸움에 대하여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 같다	_____	_____	_____	_____
1-6.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직접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1-7.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보복하는 것이 낫다	_____	_____	_____	_____
1-8. 나의 안전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3. 다음은 폭력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주십시오.

폭력 관련 법규 내용	① 전혀 모르고 있다	② 거의 모르고 있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3-1. 평소에 무기를 갖고 다니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3-2. 여러 명이 함께 때를 지어 싸우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3-3. 누군가와 싸울 때 위험한 물건(칼, 망치 등)을 사용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_____	_____	_____	_____

폭력 관련 법규 내용	① 전혀 모르고 있다	② 거의 모르고 있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3-4. 나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때리면 처벌을 받는다	_____	_____	_____	_____
3-5. 내가 먼저 맞았더라도 때린 사람에게 주먹질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3-6. 심한 욕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Ⅶ. 다음은 여러분 개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외국인범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범죄에 대한 생각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6-1.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더 위험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6-2.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6-3. 외국인범죄는 대부분 불법체류자에 의해서 발생할 것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연구총서 16-AA-11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발행 | 2016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인 | 김진환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02)2272-0307
ISBN | 979-11-87160-18-2 9333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